

연구보고서 2013-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분석 연구**

김은하 · 박경하 · 김성훈 · 서소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머리말

복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국민의 복지이용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의 정보화'는 최근 가장 가시적인 복지흐름의 하나이다. 이는 정보기술의 장점을 복지 분야에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환경 구축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대표적인 '통합적 복지정보 시스템(integrative welfare IT system)'으로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범국가적 복지사업들의 정보를 수집·관리·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복지정보화를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정책연구 분야에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evidence based research)'의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확하고 쓸만한 자료(Data)'의 부족으로 취약계층 등 복지대상자와 중요 집단에 대한 실제적 특성과 동태적 분석, 주요 영향요인과 그러한 요인의 변화에 따른 결과 등을 검증하고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정확하고 쓸만한 자료(Data)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높은 복지관련 정책연구들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에 기반하여 2013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보 통합관리체계 방안 마련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변동 유형별 소득 추이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분석』, 『수급이력기반 국

가복지사업 실태분석』, 『영유아 보육 관련 정책선호 및 영향요인 분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급여 통계연보』 등 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각 연구를 통해 복지분야의 주요 이슈가 실제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구에서 ‘복지 제도 및 대상자’의 현황과 특성, ‘전달체계의 관리 및 운영체계’의 현황과 영향요인, ‘복지정보’의 분류와 분석을 통해 시의성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수행된 연구에는 우리원 정책지원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참여한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방향의 설정 및 자료의 해석, 정책적 함의도출 등에 유익한 의견을 주신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대내외 자문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최근 10여년은 우리나라 복지체계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며, 복지에 대한 호홉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기 연구들이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발전을 위한 초석과 향후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후속연구들의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주요 연구결과들이 우리원의 발전과 복지정책을 기획과 담당하는 정책실무자, 전문가, 연구자 등의 활동과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원 회 목

# 목 차

## 요 약

I. 서론 .....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	6
3. 연구 내용 .....	7
II. 이론적 검토: 가족주의(famili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 .....	13
1. 문제제기 .....	13
2. 복지공급의 가족책임 중심주의: 가족주의(familialism) .....	15
3. 표적화된 자원 할당: 선별주의(selectivism) .....	18
4. 소 결 .....	22
III. 부양의무자 규정의 분석과 평가 .....	27
1. 문제제기 .....	27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원리 : 가족주의 가치관의 명시 .....	29
3. 부양의무자 규정: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정책가정의 상충 .....	31
4. 부양의무자 기준: 선별주의 속에 내재된 가족주의 .....	37
5. 부양능력 판정기준: 복지 사각지대 발생 .....	40
6. 소 결 .....	45
IV.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	49
1. 문제제기 .....	49

2.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	50
3. 여성가구주 가구 여부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	59
4. 노인가구주 가구 여부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	65
5. 1인가구 여부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	71
6.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	77
7. 소 결 .....	83
V.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	87
1. 문제제기 .....	87
2.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	88
3. 부양의무자의 노인 여부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	93
4. 가구규모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	97
5. 소 결 .....	100
VI.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가구의 특성 .....	105
1. 문제제기 .....	105
2. 부양의무자 가구특성에 따른 피부양가구 특성 .....	107
3.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른 피부양자 가구 특성 .....	124
4. 소 결 .....	133
VII. 부양의무자 기준 도해에 따른 집단별 특성 .....	137
1. 문제제기 .....	137
2. 부양의무자 기준 도해 .....	138
3. 부양의무자 기준 도해 집단별 소득·재산특성 .....	142
4. 소 결 .....	153

VIII. 결 론 .....	157
1. 분석결과 요약 .....	157
2. 연구의 함의 .....	159
3. 연구의 한계 .....	162
참고문헌 .....	163

## 표 목 차

〈표 Ⅰ-2-1〉 분석에 활용된 행복e음 자료의 성격 .....	7
〈표 Ⅰ-3-1〉 연구의 내용 .....	10
〈표 Ⅱ-2-1〉 가족의 의무에 따른 국가 유형화 .....	17
〈표 Ⅱ-2-2〉 가족 책임 정도에 따른 국가 유형화 .....	17
〈표 Ⅲ-3-1〉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60세 이상 대상) .....	31
〈표 Ⅲ-3-2〉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	32
〈표 Ⅲ-3-3〉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대상) .....	32
〈표 Ⅲ-3-4〉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월평균 생활비 .....	33
〈표 Ⅲ-3-5〉 생활비 마련방법(65세이상) .....	34
〈표 Ⅲ-3-6〉 가구소득 분위별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 .....	36
〈표 Ⅳ-2-1〉 신청탈락가구 가구주의 연령대 .....	50
〈표 Ⅳ-2-2〉 신청탈락가구 가구주의 성 .....	50
〈표 Ⅳ-2-3〉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원 수 .....	51
〈표 Ⅳ-2-4〉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유형 .....	51
〈표 Ⅳ-2-5〉 신청탈락가구와 부양의무자의 관계 .....	52
〈표 Ⅳ-2-6〉 장애있는 가구원 유무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비중 .....	52
〈표 Ⅳ-2-7〉 근로능력있는 가구원 유무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비중 .....	53
〈표 Ⅳ-2-8〉 신청탈락가구의 주거 소유형태 .....	53
〈표 Ⅳ-2-9〉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 .....	55
〈표 Ⅳ-2-10〉 신청탈락가구의 분위별 소득 및 재산 .....	55
〈표 Ⅳ-2-11〉 신청탈락가구의 구간별 소득평가액 .....	56
〈표 Ⅳ-2-12〉 신청탈락가구의 구간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56
〈표 Ⅳ-2-13〉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원 수 별 소득인정액 특성 .....	57
〈표 Ⅳ-2-14〉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별 비교 .....	57

〈표 IV-2-15〉 신청탈락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 58

〈표 IV-3-1〉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주의 연령대 ..... 59

〈표 IV-3-2〉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원 수 ..... 59

〈표 IV-3-3〉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유형 ..... 60

〈표 IV-3-4〉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 내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유무 ..... 60

〈표 IV-3-5〉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 및 재산 평균 ..... 61

〈표 IV-3-6〉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분위 ..... 61

〈표 IV-3-7〉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인정액 구간별 비교 ..... 62

〈표 IV-3-8〉 가구주 성별에 따른 구간별 소득평가액 ..... 62

〈표 IV-3-9〉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재산의 구간별 소득환산액 ..... 63

〈표 IV-3-10〉 가구주 성별에 따른 구간별 공제총액 ..... 63

〈표 IV-3-11〉 가구주 성별에 따른 구간별 부채총액 ..... 64

〈표 IV-3-12〉 가구주 성별에 따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 64

〈표 IV-4-1〉 노인가구주 여부별 성 ..... 65

〈표 IV-4-2〉 노인가구주 여부별 가구규모 ..... 65

〈표 IV-4-3〉 노인가구주 여부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 66

〈표 IV-4-4〉 노인가구주 여부별 소득인정액 구간 ..... 66

〈표 IV-4-5〉 노인가구주 여부별 소득평가액 구간 ..... 67

〈표 IV-4-6〉 노인가구주 여부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간 ..... 67

〈표 IV-4-7〉 노인가구주 여부별 공제총액 구간 ..... 68

〈표 IV-4-8〉 노인가구주 여부별 부채총액 ..... 68

〈표 IV-4-9〉 노인가구주 여부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특성 I ..... 69

〈표 IV-4-10〉 노인가구주 여부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특성 II ..... 69

〈표 IV-4-11〉 노인가구주 여부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 70

〈표 IV-5-1〉 1인가구 여부별 가구주의 연령 ..... 71

〈표 IV-5-2〉 1인가구 여부별 성 ..... 71

〈표 IV-5-3〉 1인가구 여부별 가구유형 ..... 72

〈표 IV-5-4〉 1인가구 여부별 피부양가구주와 부양의무자 관계 .....	72
〈표 IV-5-5〉 1인가구 여부별 소득 및 재산 .....	73
〈표 IV-5-6〉 1인가구 여부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	73
〈표 IV-5-7〉 1인가구 여부별 소득인정액 .....	74
〈표 IV-5-8〉 1인가구 여부별 소득평가액 .....	74
〈표 IV-5-9〉 1인가구 여부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75
〈표 IV-5-10〉 1인가구 여부별 공제총액 .....	75
〈표 IV-5-11〉 1인가구 여부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특성 .....	76
〈표 IV-6-1〉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주의 연령 .....	77
〈표 IV-6-2〉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주의 성별 .....	77
〈표 IV-6-3〉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의 규모 .....	78
〈표 IV-6-4〉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피부양가구주와 부양의무자 관계 .....	78
〈표 IV-6-5〉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평균 .....	79
〈표 IV-6-6〉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분위별 특성 .....	79
〈표 IV-6-7〉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구간별 소득인정액 .....	80
〈표 IV-6-8〉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평가액 구간별 비교 .....	80
〈표 IV-6-9〉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	81
〈표 IV-6-10〉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공제총액 구간별 비교 .....	81
〈표 IV-6-11〉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부채총액 .....	82
〈표 IV-6-12〉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	82
〈표 V-2-1〉 부양의무자의 연령 .....	88
〈표 V-2-2〉 부양의무자의 성별 .....	88
〈표 V-2-3〉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 .....	89
〈표 V-2-4〉 부양의무자 가구 내 장애가 있는 가구원 유무 .....	89
〈표 V-2-5〉 부양의무자 가구의 주거소유 형태 .....	90
〈표 V-2-6〉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	91
〈표 V-2-7〉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 .....	91

〈표 V-2-8〉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평가액 구간별 비교 ..... 91

〈표 V-2-9〉 부양의무자 가구의 구간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92

〈표 V-3-1〉 부양의무자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가구원 수 ..... 93

〈표 V-3-2〉 부양의무자의 노인여부에 따른 성별 ..... 93

〈표 V-3-3〉 부양의무자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 내 장애있는 가구원 거주유무 ..... 94

〈표 V-3-4〉 부양의무자의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 ..... 94

〈표 V-3-5〉 부양의무자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분위별 특성 ..... 95

〈표 V-3-6〉 부양의무자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평가액 ..... 95

〈표 V-3-7〉 부양의무자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96

〈표 V-4-1〉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 부양의무자 연령 ..... 97

〈표 V-4-2〉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 소득 및 재산 평균 ..... 97

〈표 V-4-3〉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 소득 및 재산 분위 ..... 98

〈표 V-4-4〉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구간별 비교 ..... 98

〈표 V-4-5〉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99

〈표 VI-2-1〉 부양의무자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08

〈표 VI-2-2〉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총액 구간별 분포 .. 109

〈표 VI-2-3〉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총액 평균 ..... 109

〈표 VI-2-4〉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재산총액 구간별 분포 .. 110

〈표 VI-2-5〉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재산총액 평균 ..... 111

〈표 VI-2-6〉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별 분포 111

〈표 VI-2-7〉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 112

〈표 VI-2-8〉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평가액 구간별 분포 112

〈표 VI-2-9〉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평가액 평균 ..... 113

〈표 VI-2-10〉 부양의무자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간별 분포... 113

〈표 VI-2-11〉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114

〈표 VI-2-12〉 부양의무자 장애인 가구원수별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15

〈표 VI-2-13〉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소득총액 비중과 평균 ..... 116

〈표 VI-2-14〉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재산총액 비중과 평균 .....	117
〈표 VI-2-15〉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비중과 평균 .....	117
〈표 VI-2-16〉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소득평가액 비중과 평균 .....	118
〈표 VI-2-17〉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별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20
〈표 VI-2-18〉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득총액 비중과 평균 .....	121
〈표 VI-2-19〉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재산총액 비중과 평균 .....	122
〈표 VI-2-20〉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비중과 평균 .....	122
〈표 VI-2-21〉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득평가액 비중과 평균 .....	123
〈표 VI-3-1〉 부양의무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별 신청탈락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25
〈표 VI-3-2〉 부양의무가구의 최저생계비별 재산총액 비중과 평균 .....	127
〈표 VI-3-3〉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별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	127
〈표 VI-3-4〉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별 신청탈락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29
〈표 VI-3-5〉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별 피부양가구의 소득총액 비중 및 평균 .....	130
〈표 VI-3-6〉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별 피부양가구의 재산총액 비중 및 평균 .....	131
〈표 VI-3-7〉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	132
〈표 VII-2-1〉 피부양자 수급유무별 부양의무자 가구의 집단별 빈도 수 .....	141
〈표 VII-3-1〉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 가구 소득평가액 .....	142
〈표 VII-3-2〉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	143
〈표 VII-3-3〉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항목별 현황 .....	148
〈표 VII-3-4〉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가구 가구규모 .....	149
〈표 VII-3-5〉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 가구의 대표 가구원 연령 .....	150
〈표 VII-3-6〉 60대 이상 신청탈락-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관계 .....	151
〈표 VII-3-7〉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 가구 추정 부양비 .....	152

## 그림 목 차

[그림 I-1-1] 연구문제 .....	5
[그림 VII-2-1] 부양능력 기본 도해 .....	138
[그림 VII-2-2] 부양능력에 따른 집단별 구분 .....	139
[그림 VII-3-1]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산점도 ...	144
[그림 VII-3-2]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145
[그림 VII-3-3] 부양의무자 2인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145
[그림 VII-3-4] 부양의무자 3인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146
[그림 VII-3-5] 부양의무자 4인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146
[그림 VII-3-6] 부양의무자 5인 이상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147



# 요약

## 1. 서론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양의무자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임
  -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는데, 법제적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의 법적 쟁점을 논하거나 제도 내용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음
-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거의 전무하며,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근거 제시 및 구체적인 대안의 기대 효과와 소요 예산 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춤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부양가구의 특성 분석을 통해 부양의무자 조건의 현실성 및 정책 실효성을 타진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해나감
  - 부양의무자 규정의 가정과 정책 논리, 그리고 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신청탈락가구의 특성은 무엇인가?
  -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자 및 그 부양자가 속한 가구의 특성은 무엇인가?
  -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와 피부양가구의 특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 II. 이론적 검토

-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해 이론적 근거로, 가족주의(famili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를 중심으로 살펴봄
- 가족주의는 가족이 모든 사회의 근간이며, 가족의 이해가 사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familism과는 달리 개별 시민의 복지와 돌봄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족에 있다는 familialism을 뜻하며, 가족주의적 복지체제는 복지의무를 최대한 가족에게 배분하는 체제를 말함
- 가족에 대한 개인들의 의존을 완화시켜주는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개념과는 달리, 가톨릭의 가치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가족주의(familialism)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가족정책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짐
- 연구자들은 가족주의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가 균을 유형화함
  - Millar & Warman(1996)은 가족의무가 최소화되어 국가급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유형(individual autonomy), 부양의무를 핵가족으로 국한시킨 국가유형(nuclear family), 그리고 확대가족을 포함하는 국가유형(extended family)으로 나눔
  - Jonsson(2003)은 가족책임과 의무에 관한 법적 정의와 사회적 보호가 조직되는 방식과 가족 구성원간의 책임과 보호관계에 대한 국가 역할의 인식에 기반하여 ‘강한 가족책임’, ‘규정된 책임 공유’, ‘규정되지 않은 책임 공유’, ‘돌봄의 국가책임’, 그리고 ‘국가 지원 철폐’로 유형화함
- 유형화 결과는 다르지만, 복지에 대한 가족의 의무와 책임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주로 남부유럽 국가에 해당되는데, 가족을 돌봄의 주요 제공자로 규정하고 가족연대가 강하며, 공적 급여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공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 한편, 선별주의는 공공부조의 할당원리에 해당하며 빈곤계층을 주된 타겟으로 하는 표적화(targeting)를 뜻함
- 보편주의(universalism) 급여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주어지며 사회문제에 대하여 사회

- 전체가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사회의 응집력을 증가시키는 정책의 원리임
- 반면,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에 제한을 부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가용재원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고민해야 함
    - 이 외에도 자원을 잔여적인 방식으로 배분한다는 점과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행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수급자에게 낮은 자존감과 스티그마를 부여함
  - 표적화가 정교해질수록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선별주의 정책에 포괄되는 조건이나 범위가 도움이 필요한 집단의 실제적 욕구에 기반하기 보다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에 달려있기 때문에 급여의 품질이나 수준이 낮은 한계도 존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특히 경제적 부양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의 요소를 지님
  - 또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선별주의 기제가 작동된다는 점에서, 수급자 선정 과정 시 진정한 수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가리는 과정을 거침
  - 가족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성이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그 기저에는 복지 책임의 주체를 일차적으로 공공영역이 아닌 개인, 혹은 가족에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
    - 즉,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전에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이외의 타 주체의 여력이 최대한 발휘도록 하기 때문에 국가의 최후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III. 부양의무자 규정의 분석과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정책에 내재된 가치의 방향과 정책 설계, 그리고 그러한 집행으로 야기되는 결과적 현상을 규명하였음.

-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규정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는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측면이 상충하는데 사적 부양을 통해 일차적으로 복지욕구를 해결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한다는 원칙을 내포함
  - 특히 ‘가족부양의 원칙’은 개인에 대한 자립을 강조하여 개인 책임의 범위를 가족(부양의무자)까지 넓히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부양의무자제도라 할 수 있음
- 둘째, 부양의무자 규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정책에 내재된 가정 간에 상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의 영향에 속해 있으나, 오늘날 사회구성원들이 부모부양을 가족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
  - 기존의 조사결과를 검토해보니 이러한 양상은 부양자나 피부양자 모두 유사하였고, 실제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정도도 점점 미약해지고 있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곧 제도를 통해 가족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이 사적 이전을 통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라기보다 선별주의 정책의 성격으로 인해 공공의 책임으로 전달되는 급여의 접근권이 제한되기 때문임
-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선별주의 속에 가족주의가 반영된 결과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법보다 가족부양을 더 강화시키고 있으며, 부양비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간주하여 책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와 공공부조에서 규정하는 부양 의무자의 성격과 범위는 상이한데, 이것은 권리성으로 주어지는 급여와 표적화되어 제공되는 급여 특성 간의 차이 때문임

- 제도 간에 형평성을 잃은 정책의 설계는 가족주의 가치관과 선별주의 급여의 특성이 제도 내에 혼재되었기 때문일 것임
- 마지막으로 부양능력 판정 기준에 따른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사각지대는 욕구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이 급여를 받지 못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을지라도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있는 상태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음
  - 부양기준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에서 탈락하게 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과 부양비로 인해 부양의무가 있는 부양의무자의 가구가 빈곤에 취약해질 수 있음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를 받지 못할 경우,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수급 빈곤층이 발생하기도 함
  - 부양의무자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에 있어서의 가족의무 부과 및 선별주의의 강화는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그리고 수급자 모두가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남겨둠

#### IV.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 피부양가구, 즉 신청탈락가구 특성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상태를 검토 하였음
- 피부양가구의 전반적인 특성과 함께 취약가구로 분류될 수 있는 여성 가구주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1인가구,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만 선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탈락가구의 특성을 분석함
- 분석결과, 신청탈락가구 중 60세 이상인 가구주의 비중이 적지 않았으며, 노인

가구와 1인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탈락가구 중 83.57%로 나타나는 등 신청탈락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음
- 신청탈락가구 중 여성 가구주 가구는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경우가 73.53%였고, 평균 소득인정액은 255,264원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었음
- 노인가구주 가구 중 공제액이 없는 가구는 85.19%로, 대부분의 노인가구주 가구가 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인 경우가 0.74%, 최저생계비의 25% 이하인 가구는 34.47%였음
- 소득원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였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는 가구가 97.78%로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상태였음
- 신청탈락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420,371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신청탈락가구가 90.97%로, 절대다수의 가구가 소득인정액 수준이 매우 낮았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신청탈락가구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거나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부양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수급가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이지만 제도에서는 외면받는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V.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 부양여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신청탈락가구의 부양 의무자 특성을 검토함

- 연령대로 볼 때,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중 40대가 29.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60대 이상인 경우도 24.76%로, 40대와 큰 차이가 없음
-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48명으로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인 2.8명보다 낮았고,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인가구는 30.24%로, 일반가구의 20.30%보다 더 높았음
-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평균은 2,705,689원이었고 일반가구의 경상소득이 월 평균 3,835,000원으로 나타나 양 가구 간 차이를 보임
-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22.29%로 나타나 적지않은 비중이 저소득 상태였음
-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노인 1인이 거주하는 비중은 31.56%,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 하위 25%이하의 소득평가액은 0원으로, 일부 노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해 가구의 재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양의무자 가구 중 일부는 신청탈락가구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현실적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결과에서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부 집단이 부양능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울 가능성이 고려됨
  - 이는 부양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규정으로 신청탈락가구 중 일부가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VI. 부양의무자와 피부양가구의 특성

- 본 장에서는 피부양가구와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를 연결하여 분석하였음
- 먼저 부양의무자 가구를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수 있는 노인가구가 노인가구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부양관계 구조가 드러났음

○ 부양의무자 가구형태가 노인가구일수록 피부양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았는데 노인 가구의 신청탈락가구는 평균 27만 8천원 정도였다.

○ 재산규모를 살펴 본 결과, 신청탈락가구는 대체로 재산규모가 낮은 구간에서 노인가구의 비중이 낮았으며, 노인가구에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평균 27만 6천원으로, 결코 높지 않은 액수였다.

□ 둘째,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으면 필요소득도 그만큼 높아져 피부양가구의 부양이 어려울 수 있으나 부양의무자의 가구규모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평균 재산총액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으면 조금씩 증가하였음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인원이 늘어나면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은 소폭으로 증가하였음

□ 셋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소득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양의 책임을 가진 부양의무자들의 실제적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이 없는 신청탈락가구의 68.16%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상인 가구에 속하였으며, 재산이 없는 신청탈락가구의 18.36%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0~25% 구간 사이에 있어 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극빈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을 분석한 결과, 신청탈락가구는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최하위 구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 가구의 70.70%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부양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 빈곤계층이 일부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 넷째, 소득분위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을 구분한 분석결과, 부양의무자 대부분이 소득여건이 좋지 않아 신청탈락가구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음

○ 소득총액이 가장 많이 분포한 '50만원 미만' 구간에서, 신청탈락가구의 18.97%는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소득 1분위에 속한 빈곤층이었음

- 재산이 없는 신청탈락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도 하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피부양가구의 낮은 재산액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음
-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으로 분석한 결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분위별 경제적 수준에 액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여건에 있을수록 피부양가구의 소득수준도 낮았음

## VII. 부양의무자 기준 도해에 따른 집단별 특성

- 부양의무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토대로 소득·재산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음
-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초과하고 있는 집단이 어느 한쪽만을 초과하고 있는 집단보다 그 분포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 타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소득·재산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함
  - 소득평가액의 수준은 높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 부양비 지급이 재산축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대다수가 타 연령대보다 지출이 많은 20~40대임을 감안하면, 부양비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반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높으나 소득평가액이 낮아, 부양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재산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수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평가액 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높지만 우리나라 가처분소득의 중위값보다 낮아, 피부양자의 빈곤이 부양의무 가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고정재산 항목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도가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소득과 재산의 기준선만의 조정이 제도 운영에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함

## VIII. 결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이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종합 검토를 통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를 중심으로 피부양가구와 부양의무자,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특성을 주요 내용에 따라 검토하였음
- 본 연구의 학문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가족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족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론적 차원에서 해석하였음
  - 둘째, 본 연구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에 기초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에 관한 연구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음
-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부양의무자 규정 자체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정책 가정과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간에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음
    - 그 이유는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도 변화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기 때문과, 예산의 제약과 같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한꺼번에 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음

- 양자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이 단계적으로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당장의 큰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점차 완화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둘째, 신청탈락가구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거나,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므로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자리잡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통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성실하게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을 하므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신청탈락가구는 빈곤한 상태일지라도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부양능력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부양의무자를 통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임
  - 제도 때문에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통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적 상황에서 볼 때, 부양의무자 일부 집단의 부양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였음
  - 결국 과부양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부양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여건에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부양의무자 가구 역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 중 소득과 재산 기준 중에서 소득만 충족하거나 재산만 충족하는 부양의무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에 따라서 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함

□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본 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의 일부만을 활용하여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제시해주지 못하였음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주로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가구의 일반적인 기본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양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소득과 재산에만 한정되어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음

○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특성을 제시였으므로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에 한계가 있음

- 부양의무자에 관해 데이터를 사용한 거의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이슈와 쟁점에 관하여 자세한 논의를 이끌어내가기 보다는, 이들의 정보를 탐색적 수준에서 검토한 기술통계가 연구의 주된 내용이었음

#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제3절 연구 내용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노령, 실업, 건강문제 등과 같이 개인의 생애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위험에 속했던 구사회적 위험 중 노령은 비중과 규모의 변화로 인하여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노령의 위기는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나 출생율의 감소와 맞물려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OECD(2010)에 따르면, 203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일본이 31.8%, 독일이 27.8%, 이탈리아가 27.3%, 한국은 24.3%의 순으로 예측된다. 이 보고서는 1980년에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3.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0년에는 7.2%로,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에는 15.6%로 고령사회,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향후 노인과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들이 표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빈곤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와 견주어 볼 때 놀랄 만큼 높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으로 45.1%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3.5%보다 3배가량 높고,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76.6%나 된다(OECD, 2011). 빈곤에 취약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효과가 노인인구에게

적절히 배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신사회 위험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무엇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 중 하나는 바로 노인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 빈곤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은 연금제도의 미성숙 때문이었지만 부분적으로는, 빈곤한 개인에게 사후조치적 성격으로 개입하는 공공부조 역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간 연구자들이 많이 지적해왔듯이 국내의 노인 빈곤 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는다(석재은·유은주, 2007 ; 이승호·구인회, 2010 ; 이정식, 201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며,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통과되지 못한 인구가 상당하며 이들 중 다수는 노인층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빈곤의 사각지대를 접하는 원인으로 일정부분 작용할 수 있다(석재은·유은주, 2007: 44).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증가 원인이 주로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실증한 연구(구인회·손병돈, 2005)는 비록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크게 확충되었을지라도, 사적이전소득의 큰 감소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증가의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와 같이 소득보장제도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 한국사회에서는 공적이전이 미약하므로 사적이전소득이 가구의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실제로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몇 차례 완화되어 2013년 현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수급권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한하여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는데, 법제적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의 법적 쟁점을 논하거나 제도 내용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김수정, 2003 ; 이만우, 2010 ; 김남근, 2012 ; 순윤석, 2012).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거의 전무하며,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근거 제시 및 구체적인 대안의 기대 효과와 소요 예산 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여유진, 2009 ; 손병돈, 2003). 즉,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가용예산 중심으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 셈이다. 이와는 달리 실제로 실제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력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 수정 및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양가구의 특성 분석을 통해 부양의무자 조건의 현실성 및 정책 실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내용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1] 연구문제

1. 부양의무자 규정의 가정과 정책 논리, 그리고 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신청탈락가구의 특성은 무엇인가?
3.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자 및 그 부양자가 속한 가구의 특성은 무엇인가?
4.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와 피부양가구의 특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각 집단별 특성은 무엇인가?

##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전술했던 연구문제를 풀어나간다.

첫째, 그간에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진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법적 차원에서 규정에 대한 법적 쟁점을 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제도 내용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연구가 일부 존재하였으나,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할 것이다.

둘째, 부양의무자 규정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근거로 이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차 통계자료는 부양의무자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연구자료와 통계청의 『사회조사』 각년도 자료가 해당된다. 본 연구의 이차자료는 대부분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셋째,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서 추출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부양의무자와 피부양 가구의 현황을 파악한다. 행복e음에서 추출한 원자료는 피부양가구와 부양의무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며,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가, 일반가구의 상황과 유사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자료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기술통계로, 분석대상이 되는 가구 및 개인의 기본적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및 피부양자의 실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기초통계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함의가 매우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게 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e음 자료에 대해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신청탈락가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신청탈락가구는 2012년 1월 ~ 12월간 행복e음에 입력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가구에 대한 정보로, 신규로 신청한 경우와 변경하여 재신청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신청 탈락사유는 모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전체 모수 중 총 5,000가구이며, 대도시 51.4%, 중소도시 26.7%, 농어촌 21.9%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가구 일반특성과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소득과 재산은 12월말 기준 각 가구의 정보이며, 급여는 2012년 신청 당시의 급여정보이다.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한 해 동안 중복신청을 하는 가구는 5,000가구 중 36가구(0.72%)였다. 분석에서는 중복가구를 포함하여 총 5,000가구가 모두 포함되었다. 중복 신청가구를 검토한 결과, 신청 시기마다 신청 가구의 특성이 모두 달랐으며, 실제로 한해에 중복신청하는 가구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5,000가구 중에서 가구 내, 가구 간 중복되는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총 5,562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2-1>과 같다.

<표 I-2-1> 분석에 활용된 행복e음 자료의 성격

구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추출 시기		2012년 1월 ~ 12월 행복e음
분석 자료	가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존재 사유로 수급신청에서 탈락된 5,000가구(중복신청 36가구 포함)
	부양 의무자	가구 내·가구 간 중복 정보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5,562명
자료 내용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해당월말 산정된 소득재산정보 및 2012년 신청당시 급여 정보
추출 기준		대도시 51.4%, 중소도시 26.7%, 농어촌 21.9%

### 제3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특성 분석을 통해 부양의무자 조건의 현실성 및 정책 실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과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의 바탕에 가족주의와 선별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간주하여 각각의 특성과 부양의무자 규정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겠다.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이 국가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가족주의 가치관과 더불어 공공부조의 목표 효율성을 달성하게 해주는 주요 기제인 선별주의가 결합된 정책임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주로 법제적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룰지라도, 선행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3장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에 관한 그간의 비판지점을 제시하고, 아울러 부양의무자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논의한다. 3장의 내용은 실증 분석이 아닌, 기존의 문헌자료 및 2차자료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의되어 왔던 연구자들의 선행한 연구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있다.

4장에서는 피부양자인 신청탈락가구의 특성을 검토한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피부양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접근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청탈락가구인 피부양가구의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비록 기초적인 수준일지라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4장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욕구 정도를 중심으로 신청탈락가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피부양자의 부양여력을 중심으로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특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의 가구 상황

과 더불어 부양을 위한 경제적 조건들을 검토한다.

6장에서는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 그리고 신청탈락가구인 피부양자를 연결하여, 각각의 특성들을 비교한다. 6장은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간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유사한지, 다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피부양자의 빈곤한 상태가, 부양의무자 혹은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에서 되물림되는 상태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7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검토한다. 특히 7장은 도해를 통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양상을 조망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제도의 규정 내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력을 부양비를 중심으로 가늠해보는 분석이 이루어진다.

8장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 연구의 요약과 아울러 정책적 함의,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이상의 내용을 주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I-3-1>과 같다.

<표 1-3-1> 연구의 내용

연구문제	연구방법	활용자료	분석내용
① 부양의무자 규정의 가정과 정책 논리, 그리고 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문헌검토	기존 선행연구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원리, 부양의무자 규정 및 판정기준, 정책결과</li> </ul>
② 피부양가구로서의 신청 탈락가구의 특성은 무엇인가?	기술통계	행복e음(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가구의 특성</li> <li>-여성가구주 가구</li> <li>-노인가구주 가구</li> <li>-1인가구</li> <li>-근로능력가구</li> </ul>
③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자 및 그 부양자가 속한 가구의 특성은 무엇인가?	기술통계	행복e음(2012) 한국복지패널(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li> <li>-부양의무자의 노인여부</li> <li>-부양의무자 가구의 1인가구 여부</li> </ul>
④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와 피부양가구의 특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기술통계	행복e음(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 가구특성에 따른 피부양 가구 특성</li> <li>•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른 피부양자 가구 특성분석</li> </ul>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각 집단별 특성은 무엇인가?	기술통계	행복e음(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의 분포 조망</li> </ul>

## 제 2 장

# 이론적 검토 : 가족주의(famili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복지공급의 가족책임 중심주의: 가족주의(familialism)

제3절 표적화된 자원 할당: 선별주의(selectivism)

제4절 소결



## 제2장 이론적 검토 : 가족주의(Famili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

### 제1절 문제제기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속에 내포된 이론 차원의 관념에 대해서 가족주의(famili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Taylor-Gooby(2004)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국가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는 노령문제를 포함하여 신사회 위협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가 존재하듯이(Esping-Andersen, 1990), 신사회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도 몇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한 듯하다(Taylor-Gooby, 2004)<sup>1)</sup>. 국가 군(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위협에 대한 관리 내지는 해결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의 역할 비중을 어떻게 배분하거나 조합할 것인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Esping-Andersen, 1999). 이는 곧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의 공급주체 문제로, 대응이 공적영역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인가, 사적영역의 역할로 인식할 것인가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국가 주도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혹은 가족이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누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외에 정책의 대응방식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할당의 기반이 무엇인가’이다(Gilbert & Terrell, 2005). 할당의 기반은 누가 어떠한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대

---

1) Taylor-Gooby(2004: 211-224)는 Esping-Andersen(1990)의 3가지 레짐에 지중해 복지국가와 EU를 추가하여, 각 국가 군(群)들의 신사회 위협에 대한 대응방식 차이를 제시한다.

별된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선별주의는 심사를 통한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며, 소득조사가 이루어지는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의 원리를 대표하는 제도이다.

빈곤한 노인들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선별주의 정책으로 소득인정액 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별한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노인빈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과 일정정도 관련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규정은 복지제공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주의 정책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다.<sup>2)</sup>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는데, 법제적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의 법적 쟁점을 논하거나 제도 내용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김수정, 2003 ; 이만우, 2010 ; 김남근, 2012 ; 순운석, 2012).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이 가족주의와 선별주의가 혼재된 가운데 생성되고 발전되어 왔기에 제도의 설계나 정책실행 결과에서 많은 이슈들이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책 설계에 내재된 이론 차원의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할당의 기반’ 이외에 ‘사회적 급여의 형태’ 역시 정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Gilbert & Terrell, 2005). 급여의 형태는 급여를 현금으로 할 것인가, 현물로 할 것인가의 선택과 관련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은 노인에게 대한 경제적 부양에 관한 것이고, 제도를 통해 전달되는 급여는 전부 현금이므로 급여형태에 관한 언급은 제외한다.

## 제2절 복지공급의 가족책임 중심주의 : 가족주의(familialism)<sup>3)</sup>

Esping-Andersen(1999)은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개념과 함께 가족주의(familialism)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탈가족화를 ‘가구의 복지와 돌봄 책임이 복지제공이나 시장제공을 통해 완화된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주의를 ‘가족이 구성원의 복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책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Esping-Andersen, 1999 :51).

복지국가를 가족주의와 탈가족화 정책 간의 논쟁으로 본 Leitner(2003) 역시 가족의 돌봄 역할과 관련하여 가족을 강화시키려는 가족주의적 정책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탈가족화 정책으로 유형화가 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유형화의 기준이 무엇이고, 각 유형화에 대해서 어떤 국가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Esping-Andersen(1990)의 주장과 차이가 발생할지라도<sup>4)</sup>, Leitner(2003)은 가족주의 정책이 가족과 여성의 돌봄 역할을 강조하고, 탈가족화 정책은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남성 부양자 모델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Esping-Andersen(1999)과 주장하는 바가 유사하다.

결국 가족주의적인 복지체제는 복지의무를 최대한 가족에게 배분하는 체제를 말한다. 복지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가족에게 있다고 가정하는 제도가 가족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설계된 정책이다. 반대로 탈가족화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복지를 가족에 의존하는 행위를 최소화하여 경제적 자원에 대한 개인들의 통제력을 강화시켜준다.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복지는 흔히 카톨릭의 가치와 보

3) 윤희식(2012)은 연구자들 사이에 familism과 familialism이 명백한 기준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familialism은 개별 시민의 복지와 돌봄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서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familism은 집단으로써 가족이 모든 사회의 근간이며, 집단으로써 가족주의 이해가 개인과 사회위에 위치한다는 의미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다(윤희식, 2012: 26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며, 이 후의 논의를 familialism에 초점을 맞춘 ‘가족주의’와 ‘가족책임 중심주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4) Leitner(2003)은 가족주의를 아동의 돌봄책임 주체와 가족돌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도를 바탕으로 탈가족화와 가족주의가 모두 강한 선택적(optional) 가족주의, 탈가족화는 약하지만 가족화는 강한 명시적(explicit) 가족주의, 탈가족화가 강하지만 가족주의는 약한 탈가족주의, 그리고 탈가족주의와 가족주의가 모두 약한 암묵적(implicit) 가족주의로 유형화하였다.

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즉, 가족이 실패하는 상황에 한해서 공적개입을 인정하는 원리이다(van Kersbergen, 1995). 가족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당연히 가족정책이 매우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이 가족주의가 발달한 국가의 가족정책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연구자들은 이와같은 가족주의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가 군들을 유형화하기도 하였다. Millar & Warman(1996)은 유럽 16개 국가의 가족부양 의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무가 최소화되어 국가 급여가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유형(individual autonomy), 부양의무를 핵가족으로 국한시킨 국가유형(nuclear family), 그리고 부양의무자 확대가족까지 포함되는 국가유형(extended family)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족의 의무가 확대가족에 게까지 포함되는 국가유형(extended family)은 가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가족정책이 시행되는 국가들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등 대부분 남부유럽 국가가 해당되며 이들 국가에서는 대가족이 개인의 복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핵가족 내에 배우자 간,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의무들은 조부, 형제와 자매, 삼촌, 고모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가족의 경계에까지 확장되어 넓은 범위 내에 속하는 가족관계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가족의 지원에 의존한다. 국가의 서비스는 주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국가에서 가족과 관련된 정책은 비개입주의적으로 이루어지며, 확대가족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Jonsson(2003)은 가족책임과 의무에 관한 법적 정의와 사회적 보호가 조직되는 방식, 그리고 가족 구성원간의 책임과 보호관계에 대한 국가 역할의 인식에 기반을 두어 가족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것은 '강한 가족책임', '규정된 책임 공유', '규정되지 않은 책임 공유', '돌봄의 국가책임', 그리고 '국가 지원 철폐'이다. 이 중 가족주의가 나타나는 '강한 가족책임'의 유형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 가족은 아동과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

원 및 돌봄의 주 제공자이며 가족연대가 매우 강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사회구성원은 국가보다 가족의 도움이 일차적이며 공적 급여는 최후로 제공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Jonsson, 2003).

<표 II-2-1> 가족의 의무에 따른 국가 유형화

유형	개인의 자율성 강조 (individual autonomy)	핵가족에게 부양의무 부여 (nuclear family)	확대가족에게 부양의무 부여 (extended family)
주요 특징	· 현금급여의 개인단위 제공 · 노인 돌봄은 가족의 의무가 아님	· 급여와 세금이 가구단위 기준 · 일부 국가에서 법제상으로는 성인자녀 및 부모에게 가족의무 부담되나 실제 시행은 안됨	· 가족이 없는 대상은 국가가 지원 · 확대가족에 대해 비개입주의적 · 확대가족의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 국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등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남부유럽 국가

자료: Millar & Warman(1996)

<표 II-2-2> 가족 책임 정도에 따른 국가 유형화

유형	가족책임 강조	책임의 규제된 공유	책임의 규제되지 않은 공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국가지원 철회
일반적 특징	· 가족이 돌봄의 주요 제공자 · 강한 가족연대 · 공적급여는 최후로 제공	· 민법의 가족책임 명시 · 국가의 역할은 취약자에 대한 안전망 제공	· 가족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돌봄에 대한 국가의 제한된 개입	·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주된 책임	· 정치경제적 전환기에 따른 가족책임 강조 · 가족의 비공식적인 역할 강화
대표 국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프랑스, 독일 등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구 소련, 폴란드, 헝가리 등

자료: Jonsson(2003)

### 제3절 표적화된 자원 할당 : 선별주의(selectivism)<sup>5)</sup>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 논의는 보통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누가 급여의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자격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Gilbert & Terrell, 2005 ; Titmuss, 2006).

일반적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란 급여가 시민권에 기반하여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원리를 말한다. 정부의 일반조세로 조달되는 급여는 계층이나, 종교, 연령, 인종에 따라서 구별되지 않는다. 이 원칙의 기본 가정은 사회정책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당연하고 있거나, 미래에 당연할 문제에 대한 사회전체의 대응이라고 여기는 것이다(Gilbert & Terrell, 2005). 보편주의적 급여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사회통합을 유지시키는 급여 할당의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sup>6)</sup>.

선별주의의 제도의 특징은 보편주의 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반대 양상을 고려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보편주의 제도의 장점은 사회응집성을 증가시키며 급여에 따른 스티그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가 증가하며 행정비용을 최소화한다. 반면 대상효율성이 낮으며 저축과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문제 등이 단점으로 거론된다(Raitano, 2008).

반면, 선별주의는 제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규칙을 사용하면서 복지 수혜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급여는 예산의 허용 내에서 지급되며

5) Anttonen & Sipila(2008)는 선별주의(selectivism)를 잔여주의(residualism)와 비교하면서 양자의 개념 차이를 명확화하였다. 이들은 대상에 있어서 잔여주의는 빈자를 주된 타겟으로 하지만 선별주의의 타겟은 어느 대상층이라도 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선별주의에는 다른 계급과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선별주의(selectivism)를 공공부조의 할당원리로 이해하고 사용해왔다. 본 연구도 이러한 경향을 따라서 선별주의를 빈곤계층에 대한 표적화(targeting)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한다.

6) Hernandez(2005)는 보편주의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언급하였다. 첫째는 공공복지의 책임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편주의가 모든 시민들에게 품위 있는 표준적인 삶과 시민권을 공평하게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복지는 전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둘째, 보편주의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시하므로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보편주의는 집합적인 책임 하에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한다. 사회정책의 클라이언트는 전체 인구이며, 공유된 시민권에 기초하여 집합적인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제도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질서에서 특수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선별주의는 요보호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급여가 주어지며 욕구는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선별주의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별주의는 자원을 잔여적인 방식으로 배분한다. 선별주의는 인구의 상당수가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일부 인구집단이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유지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한정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선별주의적인 복지는 자조할 수 없는 개인들을 위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정은 노동은 상품이며, 노동시장의 가격이나 시장에서의 개인가치에 따라 개인은 그가 스스로의 복지를 구입할 정도의 소득활동을 한다는 것이다(Hernandez, 2005).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최저생계가 충족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개인의 잘못으로 인식된다(Titmuss, 2006).

선별주의는 인센티브를 왜곡하기도 한다(Raitano, 2008). 특정 개인에게 표적화된 급여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아서 급여가 제한된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 참여에 소극적일 수 있다(Sen, 1995).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Mkandawire, 2005). 선별주의 급여에서 빈곤의 덫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된다.

다음으로 선별주의에는 계층화와 낙인의 발생이 따른다. 계층화는 시민들 간에 지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자에게는 낮은 자존감과 스티그마를 부여한다. 계층화와 스티그마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가치 있는 빈자를 규정하고 가려내는 과정을 통해 수급자에게 나타난다. 이들은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이 된다(Hernandez, 2005). Titmuss(2006)는 돈이 가족과 개인의 자기존중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산조사로 발생하는 스티그마의 요소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선별주의 정책은 정부가 명시한 우선권과 예산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타 급여에 비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선별주의 정책에 포괄되는 조건이나 범위는 도움이 필요한 인구의 실제적인 욕구에 기반을 두기보다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에 달려있다(Hernandez, 2005). 수급자들에게는 현재의 급여를 유지하거나 적절한 급여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수급자들은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수이며, 집단 내의 공통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대가 어려워 기득권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기 어렵다(Alber, 1996). 빈자에게만 제공되는 급여가 품질이나 수준에서 낮은 것이 일반적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Sen, 1995 ; Titmuss, 2006 ; Skocpol, 1991).

선별주의 급여는 또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선별주의는 급여를 받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욕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Sen, 1995).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급여를 받고, 정직한 신청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수급자들 중에 실제로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Sen, 1995). 선별주의 정책에서의 낮은 급여 청구율(take-up rate)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Raitano, 2008).

선별주의는 또한 행정적 비용이 소모된다. 표적화된 급여에 대해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지출과 행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수급자를 골라내는 표적화가 정교할수록 조사는 더욱 철저해지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이 침해되기 쉽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은 채 특수한 욕구를 표적화하는 방법은 없다(Sen, 1995).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와 정책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선별주의 정책과 같이 수급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접근방식은 지출을 감소시키고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가용 재원을 집중시킬 수 있다.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대상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에는, 정책목표가 빈곤퇴치라면 정책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Gilbert & Terrell, 2005). 따라서 선별주의 그 자체보다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할당되는 예산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kandawire(2005)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간의 선택은 전적으로 정치경제학적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선별주의 정책 내에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늘 적용된다.

##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해 이론적인 근거로, 가족주의(famili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를 검토하였다. 가족주의와 선별주의는 각각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누가 제공할 것인가’와 ‘할당의 기반이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

가족주의는 가족이 모든 사회의 근간이며, 가족의 이해가 사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familism과는 달리, 개별 시민의 복지와 돌봄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족에 있다는 familialism을 뜻한다. 가족주의적 복지체제는 복지의무를 최대한 가족에게 배분하는 체제를 말한다.

가족에 대한 개인들의 의존을 완화시켜주는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개념과는 달리, 가톨릭의 가치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가족주의(familialism)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가족정책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자들은 가족주의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가 군을 유형화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Millar & Warman(1996)은 유럽 16개 국가의 가족부양 의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의무가 최소화되어 국가급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유형(individual autonomy), 부양의무를 핵가족으로 국한시킨 국가유형(nuclear family), 그리고 확대가족을 포함하는 국가유형(extended family)이 그것이다. Jonsson(2003)은 가족책임과 의무에 관한 법적 정의와 사회적 보호가 조직되는 방식, 그리고 가족 구성원간의 책임과 보호관계에 대한 국가 역할의 인식에 기반을 두어 가족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것은 ‘강한 가족책임’, ‘규정된 책임 공유’, ‘규정되지 않은 책임 공유’, ‘돌봄의 국가책임’, 그리고 ‘국가 지원 철폐’이다. 유형화의 결과는 다르지만, 복지에 대한 가족의 의무와 책임을 중요시 하는 국가들은 주로 남부유럽 국가에 해당되며, 가족을 돌봄의 주요 제공자로 규정하고 가족연대가 강하며, 공적 급여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공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선별주의는 공공부조의 할당원리에 해당하며 빈곤계층을 주된 타겟으로 하는 표적화(targeting)를 뜻한다. 보편주의(universalism)가 급여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주어지며, 사회문제에 대하여 사회전체가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사회의 응집력을 증가시키는 정책의 원리이다. 반면, 선별주의는 수급 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가용재원을 집중시킬 수 있다. 선별주의 방식의 자원할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고민해야 한다. 급여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특수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며, 욕구는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이 외에도 자원을 잔여적인 방식으로 배분한다는 점과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행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수급자에게 낮은 자존감과 스티그마를 부여한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 또한 표적화가 정교해질수록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선별주의 정책에 포괄되는 조건이나 범위가 도움이 필요한 집단의 실제적 욕구에 기반하기 보다 이용가능한 자원의 양에 달려있기 때문에 급여의 품질이나 수준이 낮은 한계도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특히 경제적 부양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선별주의 기제가 작동된다는 점에서, 수급자 선정 과정 시 진정한 수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가리는 과정을 거친다. 가족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성이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그 기저에는 복지 책임의 주체를 일차적으로 공공영역이 아닌 개인, 혹은 가족에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전에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이외의 타 주체의 여력이 최대한 발휘도록 하기 때문에 국가의 최후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이 내재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분석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진다.



## 제 3 장

# 부양의무자 규정의 분석과 평가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원리: 가족주의 가치관의 명시

제3절 부양의무자 규정: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정책가정의 상충

제4절 부양의무자 기준: 선별주의 속에 내재된 가족주의

제5절 부양능력 판정기준: 복지 사각지대 발생

제6절 소결



## 제3장 부양의무자 규정의 분석과 평가

### 제1절 문제제기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정책에 내재된 가치의 방향과 정책 설계, 그리고 그러한 집행으로 야기되는 결과적 현상을 규명한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크게 법적 고찰, 가족과 국가책임에 관한 논의,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규정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선행연구는 특정 주제, 특히 법제적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검토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의 연구들은 부양의무자 규정 중 특정 이슈에 초점을 좁게 맞춰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양의무자의 규정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각각의 쟁점을 논하였던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리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의 가치부터, 정책 집합의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내제된 기본 가치 혹은 정책 가정이 무엇인지 즉, 어떠한 가치관이 부양의무자 규정의 바탕을 이루는가에 관하여 분석한다. 제도의 설계에는 정책 가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가정은 사회구성원이 지니는 기본적인 가치와 상응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설계된다. 본 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내제된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지니는 가치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자'와 '부양의무가 있는 자 중에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있는자'를 선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며, 이러한 선별방식의

로 야기되는 결과적 현상들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본 장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규정의 기반부터 정책 집행의 결과에 이르기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특정 쟁점에 주목한 비판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원리 : 가족주의 가치관의 명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활보장의 원리(헌법 제 34조 제 1항)', '자활조성의 원리(헌법 제32조 제1항)', '보충성의 원리(기초보장법 제3조)', 그리고 '개별성의 원리(기초보장법 제4조 제2항, 제6조 제1항)'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원리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가 공적 부양의 측면을 나타낸다면, '보충성의 원리', '자립지원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그리고 '가족부양의 원리'는 사적 부양의 측면과 유사하다.

이 중에서 보충성의 원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가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적 부양이 아닌 사적 부양을 강조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 원리에 있어서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두 원리는 상충하는 셈이다. 여유진(2004)은 결국에는 공공부조제도 내에서 사적부양 의무의 원리와 국가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간의 절충 지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명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부양 원칙을 통해 국가보다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우선하여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보충성의 원리'와 '자립지원의 원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의 자립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보호역제의 역할을 한다.

한편, '가족부양의 원리'는 이러한 자립지원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부양의 원리'는 자립이 이루어지는 범위인 개인 책임을 가족(부양의무자)까지 넓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이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규정은 스스로의 책임과 부양책임이 있는 자의 부양 등 다른 법률과 다른 방법

에 의한 보호가 우선적으로 시행된 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다(김남근, 2012). 이는 곧 빈곤층이라는 특수한 계층을 조력하기 위한 선별적 장치라 할 수 있으며, 장치는 소득·재산 기준의 적용과 더불어 가족주의에 입각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제3절 부양의무자 규정 :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정책가정의 상충

사회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사회 내의 공유된 가치와 합의가 일정정도 가미되어 형성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족주의가 한국사회의 복제제공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인구구조와 가족유형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책임 우선주의의 가치가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와는 다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실제로 가족주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선 변화하는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는 과거보다도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현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표 III-3-1>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60세 이상 대상)

(단위: %)

구분	2007	2009	2011
경제적 어려움	40.1	42.6	40.6
무직 및 고용불안정	3.8	3.3	4.0
소일거리 없음	5.3	6.0	6.2
건강문제	40.7	37.2	37.8
외로움·소외감	3.2	3.8	3.7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0.3	0.1	0.2
사회의 경로의식약화	2.1	2.2	2.8
일상생활도움서비스부족	0.7	1.1	1.0
노인복지시설부족	2.9	2.5	2.4
기타	0.9	1.2	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통해 60세 이상인 응답자가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조사하였는데, <표 III-3-1>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가 모두 40% 안팎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건강문제가 서비스 형태의 돌봄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비용도 소모된다는 점에서, 노인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양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0년대에는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김상균·정원오, 1995). 그러나 최근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부양에 대해 '노부모 스스로 해야 한다'로 응답한 비중이 2002년에 9.6%였지만, 2012년에는 13.9%로 증가하였다. 노후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인식이 증가한 것이다. 반대로 '가족의 책임'이라는 견해는 2002년 70.7%에서 2012년 33.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부모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표 III-3-2>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2002	2006	2008	2010	2012
노부모 스스로	9.6	7.8	11.9	12.7	13.9
가족	70.7	63.4	40.7	36.0	33.2
가족과 정부사회	18.2	26.4	43.6	47.4	48.7
정부사회	1.3	2.3	3.8	3.9	4.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그렇다면 부양이 필요한 노인세대의 부양에 관한 의견은 어떠할까? <표 III-3-3>에는 노인세대에서도 부모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2006년 67.3%에서 2010년 38.3%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표 III-3-3>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대상)

(단위: %)

구분	2006	2008	2010
노부모 스스로	13.7	16.5	18.4
가족	67.3	48.1	38.3
가족과 정부사회	14.9	29.9	37.8
정부사회	4.0	5.5	5.5
기타	0.1	0.0	0.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구성원의 가족부양에 대한 의견은 단순히 의견일 뿐 실제 행위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부양 여부나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행위가 일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3-4>는 2009년과 2013년에 행해진 『부양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의 결과이다. 2009년, 2013년 각각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월평균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조사 결과, '드리지 않음'은 비중이 2009년 30.8%에서 2013년 79.0%로 증가하였고, 가장 낮은 금액인 10만원 미만도 26.0%에서 1.9%로 감소하였다. 물론 비정기적으로 전달하는 생활비를 제외한 것이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가족의 부모부양 책임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을 반영하듯, 적어도 '정기적 생활비'의 제공여부나 그 액수만을 볼 때는 부모부양에서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가치가 점차 소멸해간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표 III-3-4>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월평균 생활비

(단위: %)

구분	2009	2013
드리지 않음	30.8	79.0
10만원미만	26.0	1.9
11 ~ 20만원	19.3	5.1
21 ~ 30만원	10.6	3.8
31 ~ 40만원	4.7	2.4
41 ~ 50만원	3.3	3.4
51 ~ 70만원	2.9	1.9
71 ~ 100만원	0.6	1.6
100만원이상	1.3	0.8
모름/ 무응답	0.4	0.2

자료: 여유진 외(2009), 손병돈(2013), 부양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이제는 자녀 입장이 아닌 부모 입장으로 눈을 돌려서 노인가구의 생활비가 어디에서 충당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표 III-3-5>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생활

비 마련방법을 조사한 결과이다.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2005년 49.3%에서 2011년 51.6%로 증가하였지만, 자녀 또는 친척지원은 2005년 44.7%에서 2011년 39.2%로 완만하게 감소한다. <표 III-3-4>와 <표 III-3-5>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비록 변화의 폭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구성원의 노인부양에 관한 실제 행위 역시 가족 내에서 책임을 지는 양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하겠다.

<표 III-3-5> 생활비 마련방법(65세이상)

구분	2005	2007	2009	2011
본인 및 배우자 부담	49.3	52.3	51.9	51.6
근로소득, 사업소득	61.8	59.9	49.7	45.8
재산소득	14.2	13.5	15.9	14.4
연금, 퇴직금	15.3	17.7	27.3	30.4
예금	8.6	8.9	7.1	9.4
자녀 또는 친척지원	44.7	42.1	37.6	39.2
정부 및 사회단체	5.7	5.5	10.4	9.1
기타	0.3	0.1	0.0	0.1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가족책임 중심주의적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행동패턴 역시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의 <표 III-3-1>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완화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남겨져 있다.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부양의식과 부양행위의 약화는 노인빈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족부양의 책임을 가족에 두는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듯,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서서히 변화한 것이 사실이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출범 당시 부양의무자 범위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으나, 2004년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되어 부양의무자는 현재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 한정된다. 하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 현재의 규정 범위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김수정, 2003 ; 송다영, 2005 ; 이찬진, 2009). 현재의 부양의무자 범위가 의미하는 바는, 생계를 함께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 며느리나 사위가 국가 이전에 일차적인 부양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핵가족의 규모로 축소되거나 부부와 미혼자녀로 국한되는 경향이다. 그리고 성인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외되는 것이 대부분이다(송다영, 2005).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 책임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통한 가족부양 책임의 강조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통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덜어 내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된 가족책임 중심주의는 선별주의 정책의 특성과 함께 빈곤계층이 비빈곤계층에 비해서 사적이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총소득에서 사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한 성재민(2006)의 연구에서는 사적이전 소득이 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다. 즉,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가 1.8%이지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26.9%였다. 또한, 사적이전 소득을 받은 가구의 비중을 보면, 1분위 가구 중 46.5%가 사적이전 소득을 받았으나 그 이외의 소득계층은 20~25% 정도에 그치고 있어 사적이전 소득이 저소득 계층의 중요한 소득원천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적이전 소득이 모두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의미하지는 않을지라도, 저소득계층에서 사적이전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선별주의적인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빈곤계층이 사적이전에 더욱 의존하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6> 가구소득 분위별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

(단위: %)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사적이전소득 비중	26.9	4.9	1.6	1.2	1.8
사적이전을 받는 가구의 비중	46.5	24.3	21.6	22.8	20.5

자료: 성재민(2006:77, 79)에서 재구성. 2003년 소득기준

## 제4절 부양의무자 기준 : 선별주의 속에 내재된 가족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시초인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개념을 계승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법에서의 부양의무자 개념은 민법에서 비롯되었다<sup>7)</sup>.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함께 부양의무의 범위는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현재에 이른다. 즉, 민법의 부양의무 범위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까지를 포함하지만, 현재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위는 다르지만 부양의 의미에 대해서 양자는 각각 다른 접근을 한다.

민법이 인정한 부양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부모와 자녀 사이 및 부부 사이의 부양이고, 다른 하나는 친족 사이의 일반적 부양이다. 전자는 생활유지 의무(제1차적 부양의무)에 속하며, 부부관계·친자관계의 현실적 공동생활 그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된다. 반면 친족 사이의 일반적 부양은 생활부조 의무(제2차적 부양의무)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대체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정민호, 2012).

생활유지 의무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생활을 자기 생활의 일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의무를 뜻한다. 즉, 본인이 생활할 권리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무에 우선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상으로 보면, 부양의무 규정상 성년 자녀는 자신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유지 의무'를 이행한 이후, 노부모에 대하여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부조적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박정선, 2010). 따라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분가된 형태의 수급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는 민법에서는 부양의무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의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은 민법상의 부양의 정도와 범위를 벗어나 수급자 선정과 관

7) 생활보호법은 제정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도입되어 친족부양우선주의를 명시하였다.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으로 명기되었다. 이때부터 부양의무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 정의되었으며(생활보호법 제 2조 제4항), 여기에는 광범위한 친족범위가 포함되었다(박정선, 2010).

련하여서만 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양의무를 감당하도록 하고있는 것이다(이찬진, 2009).

한편 민법에서의 부양의무는 약정에 의하여 정하거나 가정법의 심판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민법 제974조 또는 97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성격이 강하다. 부양비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판정 결과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인 피부양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부양비는 수급자 가구의 기타소득 중 부양비로 산정하여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3). 즉, 부양비 만큼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양비는 수급권자와 해당 부양의무자가 부양비에 대한 쌍방의 약정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통상적으로 부양하는, 혹은 부양해야 할 비용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간주하고 책정한 것이다.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평가액 산정 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소득이전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일정한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간주한 것이다(이찬진, 2009). 부양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판단의 실제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수급권자가 소명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가족이 실제로 부양능력과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복지에 대하여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결과로 귀결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부양의무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범위나 의무에 있어서 제도가 사회보험에 속하는가 공공부조에 속하는가에 따라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법 상에 나타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인 형태를 보인다(송다영, 2005). 반면 공공부조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sup>8)</sup>. 부양비와 구상권의 도입은 사회보험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에

서는 찾아볼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험법과는 다르게 수급자와 부양자의 재산기준을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 권리성으로 주어지는 급여와 부조적 성격으로 제공되는 급여 간에 부양의무자 적용의 성격이 다른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잔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선별주의적 급여에서 가족책임 중심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는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복지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 해 개입하는 선별주의 급여의 태생적인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잔여적으로 제공되는 선별주의 급여에 대하여 자조 가능성을 최대한 찾아보기 위해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제도 간에 형평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인 이와 같은 집행은 가족책임 중심주의적 가치와 선별주의적 급여라는 특성이 제도 내에 혼재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8) 일례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의 부양과 피부양의 범위는 법제정 당시의 범위와 동일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 범위가 축소되어 왔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은 반대로 확대되어왔다. 즉, 직계에서 출발하여 부계·양계로, 다시 직계의 방계로의 확대 과정을 거쳐 현재 양계·형평적 확대가족 모델을 보이고 있다(왕혜숙, 2013). 왕혜숙(2013)이 지적하고 있듯이 국민건강보험법 상에서의 부양범위의 확대는 가입자들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요구와,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를 확대해야 하는 유인요인으로 작용해왔다.

## 제5절 부양능력 판정기준 : 복지 사각지대 발생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족책임 중심주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면,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자원의 할당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선별주의와 관련된다. 기준 설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표적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준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서 수급자의 포괄정도 자체도 전체 성격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다를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이 매우 복잡하면서 그 기준이 엄격한 편이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사각지대에는 욕구가 있는 대상이 급여를 받지 못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까지 포함된다. 즉, 사각지대는 비수급 빈곤층, 부양의무자, 그리고 수급 빈곤층에게 발생한다.

### 1. 비수급 빈곤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자들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통과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에서 탈락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다.

여유진 외(2003)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자 중 전체 인구의 2.2%인 104만명이 재산기준으로 탈락했으며, 전체 인구의 2.1%인 99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것으로 보고한다. 빈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공공부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개인 혹은 가구가 빈곤의 사각지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2009)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미달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이루는 가구는 60만가구, 개인은 100만명으로 추산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개인이나 가구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선(2010)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거부 및 기피로 인하여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대상가구를 148,300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즉,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피부양자를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수급가구 및 비수급 빈곤가구의 피부양 실태에 관한 심층조사(2008)』를 분석한 이승호·구인회(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47.1%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엄격한 부양자격 때문에 피부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빈곤하지만 수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엄격성 정도에 대해서는 허선·유현상(2009)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허선·유현상(2009)은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16.12%에 불과하다고 보고한다. 즉, 약 85%의 가구가 정기적으로 부양의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의 설계는 전체 수급자의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허선(2013)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2.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다.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액의 42%미만인 경우 부

양능력이 없다고 판정된다.

이상과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4인가구 기준으로 2011년 현재 경상소득 기준 최저생계비의 303%가 평균이며,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76%<sup>9)</sup>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30%로 차상위계층을 갖 벗어난 수준에 불과하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중위소득에도 훨씬 못미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즉, 실제로 부양하기 힘든 경제적 상황인 가구에게 부양의무를 담당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급자에게는 공공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절대빈곤의 최저생계비 개념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양의무자에게도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양 의무자의 경우 중위소득 정도의 생활수준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다.<sup>10)</sup> 최근 손병돈(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자의 가구형태는 노인가구가 40.75%(38만2천742명)로 가장 많았는데, 해당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는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가구는 주택마련, 자녀교육비 등 많은 생활비의 부담을 갖고 있으므로, 부양비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에게 책정되는 부양비 역시 소득계층에 따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가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나머지 30%(또는 15%) 수준을 부양한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그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산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만우(2010)에 따르면 1인가구

9)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sub/finance/fn02-146.jsp> (2013.9.20)

10) 석재은·유은주(2007)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의 중위소득의 합계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고 본다.

의 재산기준과 6인 가구의 재산 기준 간의 차이가 1,132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실제 가구규모에 따른 주택규모나 실제 재산액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다. 특히, 1인 가구는 평균재산과 중위재산이 매우 낮는데, 이는 가구 중 대다수가 경제활동 초기의 독신가구이거나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노인 단독가구이기 때문이다(이만우, 2010). 즉, 이들 계층에서는 재산이 소득으로 전환되어 가용할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부양의무를 성실히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족과 피부양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가족부양을 위해 부양가구가 지나치게 가중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과 그에 따라 부양의무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을 말해준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선별과정은 부양의무자 내에서 사각지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고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송다영, 2005). 이찬진(2009: 37)은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비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공공부조 예산에 인위적으로 맞추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예산이 욕구에 기반하기 보다는 가용자원의 양에 달려있는 것은 선별주의 제도의 현실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 3. 수급 빈곤층

비수급 빈곤층과 부양의무자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능력자로부터 간주부양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수급자 중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승호·구인회(2010)에 따르면 부양비가 책정되어 있는 수급가구의 94.4%가 실제로 책정된 부양비보다 적은 금액을 부양 받고 있으며, 실제받는 부양비가 간주된 부양비보다 많은 경우는 2.8%에 불과하다고 한다. 만약 부양비가 책정된 수급가구가 실제로 부양비를 받지 못하면 상당수가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수급자이면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부양비는 현실성뿐만 아니라 제도 내 법률체계와 관련되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하여 법의 집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두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시행규칙을, 장관령으로 각종 고시를 두고 있으며 법령 내에서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정하고 있다. 사업안내에서는 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비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모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집행단계에서 별도의 개념을 생성하고 있다(김남근,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제5조 제1항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부양능력의 유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부양능력이 있어도 미약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 제6절 소 결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정책에 내재된 가치의 방향과 정책 설계, 그리고 그러한 집행으로 야기되는 결과적 현상을 규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장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전개되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가 가족주의 가치관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는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측면이 상충하는데, 결국에는 사적부양을 통해 일차적으로 복지욕구를 해결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한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족부양의 원칙'은 개인에 대한 자립을 강조하여 개인 책임의 범위를 가족(부양의무자)까지 넓히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부양의무자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 규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정책에 내재된 가정 간에 상충하지 않고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의 영향에 속해 있으나, 오늘날 사회구성원들이 부모 부양을 가족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기존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보니 이러한 양상은 부양자나 피부양자 모두 유사하였고, 실제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정도도 점점 미약해지고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와같은 현실과는 달리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곧 제도를 통해 가족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사적 이전을 통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라기보다 선별주의 정책의 성격으로 인해 공공의 책임으로 전달되는 급여의 접근권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선별주의 속에 가족주의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 민법보다 가족부양을 더 강화시키고 있으며, 부양비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간주하여 책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와 공공부조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의 성격과 범위는 상이한데, 이것은 권리성으로 주어지는 급여와 표적화되어 제공되는 급여 특성 간의 차이 때문이다. 제도 간에 형평성을 잃은 정책의 설계는 가족주의 가치관과 선별주의 급여의 특성이 제도 내에 혼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양능력 판정 기준에 따른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각지대는 욕구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이 급여를 받지 못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을지라도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있는 상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부양기준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에서 탈락하게 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비로 인해 부양의무가 있는 부양의무자의 가구가 빈곤에 취약해질 수 있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를 받지 못할 경우,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수급 빈곤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양의무자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에 있어서의 가족의무 부과 및 선별주의의 강화는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그리고 수급자 모두가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남겨둔다.

제 4 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제3절 여성가구주 가구 여부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제4절 노인가구주 가구 여부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제5절 1인가구 여부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제6절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제7절 소결



##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 제1절 문제제기

본 장에서는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검토를 통해 부양능력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되지 못한 피부양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인하여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가구들은 상당수에 이르고, 이들 가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나 제도권 내에 흡수되지 못하여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 기반하여 본 장의 목적은 실제로 신청탈락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제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더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이후의 분석 이전에,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신청에서 탈락된 가구들의 기본 성격이 어떠한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 피부양가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를 일컫는다. 분석은 피부양가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취약가구의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구만 선별하여 이들의 특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분석의 이유는, 신청탈락가구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부양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1인가구,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즉,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이 어려운 가구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가구들이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신청탈락 가구의 특성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할 것이며, 경제적 취약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현황을 제시할 것이다.

##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약 63%로 노인가구주 비중이 높았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3.09세로 대다수가 노인 가구주 가구로 나타났다. 신청탈락가구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 가구주라는 점에서 빈곤에 취약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표 IV-2-1〉 신청탈락가구 가구주의 연령대

구분	가구(%)
10대	84(1.74)
20대	94(1.95)
30대	365(7.58)
40대	618(12.83)
50대	625(12.98)
60대이상	3,029(62.91)
계	4,815(100.0)
평균(표준편차)	63.09(17.62)

가구주의 성별 비중에서는 여성가구주 비중이 52.88%로, 남성의 47.12%보다 더 많았다. 여성 가구주 가구는 가정 내에서 돌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통한 가장의 역할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취약 집단일 수 있다. 위의 〈표 IV-1-1〉로 미루어 보건대, 무엇보다 여성 노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성 가구주의 비중 역시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표 IV-2-2〉 신청탈락가구 가구주의 성

구분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2,269(47.12)
여성 가구주 가구	2,546(52.88)
계	4,815(100.0)

신청 탈락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약 1.39명으로, 대다수의 가구가 1인 가구였다. 실제로 1인 가구의 비중이 74.7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이와 같이 높은 이유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중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구의 규모가 소득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탈락가구 중 1인가구가 많은 현상은 그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표 IV-2-3〉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원 수

구분	가구(%)
1인가구	3,599(74.75)
2인가구	813(16.88)
3인가구	217(4.51)
4인가구	123(2.55)
5인가구 이상	63(1.31)
계	4,815(100.0)
평균(표준편차)	1.39(0.83)

가구유형에서는 노인가구가 가장 많아서 50.18%가 노인가구였다. 그 다음이 일반가구로 19.21%였으며, 장애인 가구가 16.14%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성실한 부양노력이 없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표 IV-2-4〉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유형

구분	가구(%)
기타가구 <sup>11)</sup>	379(7.87)
노인가구	2,416(50.18)
모부자가구	289 (6.0)
장애인가구	777(16.14)
조손가구	29(0.6)
일반가구	925(19.21)
계	4,815(100.0)

11) 기타가구는 미혼부모가구, 소년소녀가구, 기타가구 등이 해당된다.

부양의무자와 피부양가구주와의 관계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72.50%를 차지하였다. 앞서 피부양자의 다수가 60대 이상이거나 노인 가구인 비중이 높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문제는 노인 빈곤층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자녀' 다음으로 '부모'인 경우에 신청탈락가구는 27.21%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약 30%의 수치는 신청탈락가구 중 젊은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나타난 것인지, 그 비중의 추이는 어떠한지 현재의 데이터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표 IV-2-5〉 신청탈락가구와 부양의무자의 관계

구분	가구(%)
부양의무자가 부모임	1,310(27.21)
부양의무자가 자녀임	3,492(72.52)
부양의무자가 사위·며느리임	12(0.25)
부양의무자가 배우자임	0(0.0)
기타	0(0.0)
무응답	1(0.02)
계	4,815(100.0)

장애가 있는 가구원은 근로능력이 없고 다른 가족구성원의 부양을 필요로 하므로, 이들이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생활능력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신청탈락가구 중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31.67%였으며, 1명인 가구는 28.7%, 2명 이상인 가구는 2.96%였다.

〈표 IV-2-6〉 장애있는 가구원 유무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비중

구분	가구(%)
없음	3,290(68.33)
1명	1,382(28.7)
2명이상	143(2.96)
있음	1,525(31.67)
계	4,815(100.0)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존재는 해당가구가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탈락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25.49%로, 전체의 약 1/4만이 근로능력이 있었다.

〈표 IV-2-7〉 근로능력있는 가구원 유무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비중

구분	가구(%)
없음	3,588(74.52)
1명	972(20.19)
2명이상	255(5.30)
있음	1,227(25.49)
계	4,815(100.0)

다음으로 주거 소유형태별 비중을 보면, 신청탈락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4.93%, 전월세 상태인 가구는 29.03%였으며, 그 외에 속하는 가구는 56.03%였다. 일반적으로 생활비 중에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탈락가구의 상당수가 주거로 인한 소비가 높아 가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

〈표 IV-2-8〉 신청탈락가구의 주거 소유형태

	가구(%)
주택 <sup>12)</sup>	719(14.93)
전월세	1,398(29.03)
기타 <sup>13)</sup>	2,698(56.03)
계	4,815(100.0)

전체 가구별 소득 및 재산 특성은 <표 IV-2-9>, <표 IV-2-10>과 같다.

<표 IV-2-9>는 각 가구별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특성의 평균, 표준편차 등을

12) 일부 대상자 중에 주택과 전월세를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주거 소유형태가 주택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13) 기타에 해당하는 주거유형으로는 보증부 월세, 영구임대주택, 부분무료임차, 전체무료임차, 움막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그룹홈거주자, 보장기관제공거주자, 가정위탁 등이 있다.

나타내고 있으며, <표 IV-2-10>은 분위별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표 IV-1-10>을 통해서 각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금액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열한 상태에서 전체 가구 수의 10%, 25%, 50%, 75%, 90%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해당 금액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및 재산수준의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액수로 계산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재산가액에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양자는 모두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소득 및 재산의 평균을 보면 신청탈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평균 270,873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평균 8,397원이었다.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총액은 평균 283,676원이었고, 재산총액은 수급자 특성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금액수준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평균 13,808,503원이었다.

공제총액은 소득 및 재산에 적용되는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소득공제, 일반재산 중 농어민특별공제·자연감소분, 금융재산에서 3년 이상 장기저축·생활준비금·자연감소분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공제액이 클수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져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특성이 있다. 신청탈락가구의 공제액은 평균 388,576원이었다. 분위별로 보면 하위 25%까지는 0원이었다가 상위 10%에서 66,380원정도 혜택을 받고 있어, 공제혜택을 받는 가구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공제하는 금액으로 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10%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총액은 2,958,288원이었다.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특성들을 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재산소득 환산액, 공제총액,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소득 공제, 부채총액 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가구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

(단위: 원)

구분	평균(표준편차)
소득평가액	270,873(274,229)
재산의 소득환산액	8,397(66,332)
소득총액	283,676(278,479)
재산총액	13,808,503(19,556,975)
공제총액	388,576(3,522,132)
가구특성별지출	12,767(49,241)
근로소득공제	870(15,838)
부채총액	2,958,288(16,440,749)

〈표 IV-2-10〉 신청탈락가구의 분위별 소득 및 재산

(단위: 원)

구분	최소값	10%	25%	50%	75%	90%	최대값
소득평가액	0	0	91,200	181,400	382,010	630,000	2,141,266
재산의 소득환산액	0	0	0	0	0	0	1,427,566
소득총액	0	17,531	94,600	194,600	395,900	647,033	2,161,266
재산총액	0	0	765,000	5,645,000	20,330,000	39,166,960	297,979,000
공제총액	0	0	0	0	0	66,380	79,000,000
가구특성별지출	0	0	0	0	0	30,000	1,782,830
근로소득공제	0	0	0	0	0	0	456,000
부채총액	0	0	0	0	0	4,670,000	500,000,000

앞서 살펴본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및 재산특성을 좀 더 살펴보고자 금액을 구간별로 분류하여 특정 금액에서 양 가구의 분포를 검토하였다. <표 IV-2-11> 과 같이 소득평가액은 50만원미만인 가구가 73.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50~100만원 미만으로 12.96%였으며, 소득평가액이 없는 가구가 10.8%였다.

〈표 IV-2-11〉 신청탈락가구의 구간별 소득평가액

구분	가구(%)
없음	520(10.8)
50만원 미만	3,544(73.6)
50만원 ~ 100만원 미만	624(12.96)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24(2.58)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0.06)
300만원이상	-
계	4,815(100.0)

〈표 IV-2-12〉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음’인 가구가 97.05%로 대다수의 가구가 소득환산액이 0원이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50만원 미만이였다.

〈표 IV-2-12〉 신청탈락가구의 구간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가구(%)
없음	4,673(97.05)
50만원 미만	118(2.45)
50만원 ~ 100만원 미만	19(0.39)
100만원 ~ 200만원 미만	5(0.1)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300만원이상	-
계	4,815(100.0)

〈표 IV-2-13〉에서는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과 평균 빈곤갭이 제시되어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신청탈락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279,613원이었으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소득인정액도 당연히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다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금액의 비율인 평균 빈곤갭은 59.52%(411,150원)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갭은

가구규모에 따라 다른데, 1인가구는 65.21%로 가장 높았으며, 2인 가구가 55.30% 등으로 가구의 규모가 클수록 빈곤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2-13>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원 수 별 소득인정액 특성

(단위: 원)

구분	계	평균 소득인정액 (표준편차)	평균 빈곤집	
전체	4,815	279,613 (280,641)	411,150 (234,866)	59.52%
1인	3,599	192,678 (161,205)	360,856 (161,205)	65.21%
2인	813	421,192 (275,795)	521,005 (275,795)	55.30%
3인	217	634,901 (372,584)	583,972 (372,584)	47.91%
4인이상	186	928,408 (491,647)	702,506 (459,812)	43.07%

<표 IV-2-14>에는 신청탈락가구의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금액구간별 분포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소득평가액과 유사하게 50만원 미만에서 73.52%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무소득 가구는 약 10%였다.

<표 IV-2-14>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별 비교

소득인정액 구간	가구(%)
없음	484(10.05)
50만원미만	3,540(73.52)
50만원 ~ 100만원 미만	651(13.52)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36(2.82)
200만원 ~ 300만원 미만	4(0.08)
300만원이상	-
계	4,815(100.0)

신청탈락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수준별 비중은 <표 IV-2-15>와 같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하위 25%이하인 신청탈락가구 가구는

43.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최저생계비의 25~50%이하로 24.65%였다. 즉, 신청탈락가구는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이 하위 50%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그 수준이 낮았다.

〈표 IV-2-15〉 신청탈락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구간	가구(%)
최저생계비 0 ~ 25%이하	2,098(43.57)
최저생계비 25 ~ 50%이하	1,187(24.65)
최저생계비 50 ~ 75%이하	876(18.19)
최저생계비 75 ~ 100%이하	611(12.69)
최저생계비 100%이상	43(0.89)

### 제3절 여성가구주 가구 여부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특성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비중은 <표 IV-3-1>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주의 성에서는 남성의 58.33%보다 여성이 67.32%로 더 높았으며, 연령대 별로는 남녀 모두 6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여성 가구주 중 60대 이상은 73.53%로, 남성 가구주 중 60대 이상인 50.99%보다 더 높았다.

<표 IV-3-1>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주의 연령대

구분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10대	51(2.25)	33(1.3)
20대	63(2.78)	31(1.22)
30대	216(9.52)	149(5.85)
40대	396(17.45)	222(8.72)
50대	386(17.01)	239(9.39)
60대이상	1,157(50.99)	1,872(73.53)
계	2,269(100.0)	2,546(100.0)
평균(표준편차)	58.33(17.25)	67.32(16.85)

성별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가구규모별 특성을 <표 IV-3-2>를 통해 검토한 결과, 1인 여성가구주가 86.6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신청탈락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겠다.

<표 IV-3-2>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원 수

구분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1인가구	1,392(61.35)	2,207(86.68)
2인가구	626(27.59)	187(7.34)
3인가구	117(5.16)	100(3.93)
4인가구이상	134(5.91)	52(2.04)
계	2,269(100.0)	2,546(100.0)
평균(표준편차)	1.59(0.95)	1.22(0.66)

<표 IV-3-3>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유형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구 중 노인 가구의 비중이 62.49%였다. 모부자가구 비중은 7.11%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14.77%였다. 요컨대, 신청탈락가구인 여성가구주 가구는 주로 노인가구인 경향을 보인다.

<표 IV-3-3>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유형

(단위: 가구, %)

구분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기타가구 <sup>14)</sup>	241(10.62)	138(5.42)
노인가구	825(36.36)	1,591(62.49)
모부자가구	108(4.76)	181(7.11)
장애인가구	533(23.49)	244(9.58)
조손가구	13(0.57)	16(0.63)
일반가구	549(24.2)	376(14.77)
계	2,269(100.0)	2,546(100.0)

가구주 성별에 따라 근로능력있는 가구원의 거주 유무를 분석하면 <표 IV-3-4>와 같다. 전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거주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가운데, 여성 가구주 가구 내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거주하는 비중은 21.8%였다. 반면, 남성 가구주 가구에서는 29.61%로 그 비중이 더 높았다.

<표 IV-3-4>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 내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유무

(단위: 가구, %)

구분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없음	1,597(70.38)	1,991(78.2)
1명	487(21.46)	485(19.05)
2명이상	185(8.15)	70(2.75)
있음	672(29.61)	555(21.8)
계	2,269(100.0)	2,546(100.0)

14) 기타가구: 미혼부모가구, 소년소녀가구, 기타가구가 해당된다.

<표 IV-3-5>는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별 소득 및 재산특성은 나타난 것이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255,264만원이며, 소득평가액은 249,112원이었다. 남성 가구주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인 306,933원과, 소득평가액인 249,112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표 IV-3-5>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 및 재산 평균

(단위: 원)

구분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소득인정액	306,933(318,933)	255,264(238,896)
소득평가액	295,290(310,073)	249,112(235,714)
재산의 소득환산액	11,280(79,912)	5,828(51,166)
공제총액	306,112(2,721,872)	462,068(4,105,093)
부채총액	3,439,885(16,284,481)	2,529,088(16,570,174)
계(N)	2,269	2,546

<표 IV-3-6>은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분위별 소득 및 재산의 분위별 특성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공제총액, 그리고 부채액이 없는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평가액 10%, 25%를 제외하고, 평균 금액 뿐만 아니라 모든 분위에서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형편이 더 열악한 상태였다.

<표 IV-3-6>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분위

(단위: 원)

구분	최소값	10%	25%	50%	75%	90%	최대값	
소득인정액	남성	0	0	87,656	201,700	446,479	756,316	2,323,668
	여성	0	30,000	94,600	182,256	355,995	524,415	2,141,266
소득평가액	남성	0	0	87,656	189,330	434,498	727,340	2,026,605
	여성	0	17,531	94,600	178,824	350,000	518,497	2,141,266
재산의 소득환산액	남성	0	0	0	0	0	0	1,427,566
	여성	0	0	0	0	0	0	1,095,563
공제총액	남성	0	0	0	0	0	136,000	44,000,000
	여성	0	0	0	0	0	30,000	79,000,000
부채총액	남성	0	0	0	0	0	6,650,000	500,000,000
	여성	0	0	0	0	0	2,660,000	410,000,000

소득인정액의 금액 구간별 비중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높지 않은 양상이 양 집 단 모두 동일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80.4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가구주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없는 비중이 12.78%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7.62%보다 많아,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열악함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7〉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인정액 구간별 비교

(단위: 가구, %)

구분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없음	290(12.78)	194(7.62)
50만원미만	1,492(65.76)	2,048(80.44)
50만원 ~ 100만원 미만	397(17.5)	254(9.98)
100만원 ~ 200만원 미만	88(3.88)	48(1.89)
200만원 ~ 300만원 미만	2(0.09)	2(0.08)
300만원이상	-	-
계	2,269(100.0)	2,546(100.0)

〈표 IV-3-8〉에 제시된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구간별 소득평가액 도 〈표 IV-3-7〉과 그 양상이 유사하다. 즉, 여성가구주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평가액이 없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13.71%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8.21%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

〈표 IV-3-8〉 가구주 성별에 따른 구간별 소득평가액

(단위: 가구, %)

구분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없음	311(13.71)	209(8.21)
50만원미만	1,499(66.06)	2,045(80.32)
50만원 ~ 100만원 미만	378(16.66)	246(9.66)
100만원 ~ 200만원 미만	80(3.53)	44(1.73)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0.04)	2(0.08)
300만원이상	-	-
계	2,269(100.0)	2,546(100.0)

<표 IV-3-9>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는 비중은 양 집단 모두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의 성별과 무관하게 약 90%이상의 가구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다.

<표 IV-3-9>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재산의 구간별 소득환산액

(단위: 가구, %)

구분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없음	2,190(96.52)	2,483(97.53)
50만원미만	63(2.78)	55(2.16)
50만원 ~ 100만원 미만	12(0.53)	7(0.27)
100만원 ~ 200만원 미만	4(0.18)	1(0.04)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
300만원이상	-	-
계	2,269(100.0)	2,546(100.0)

<표 IV-3-10>에는 가구의 공제총액에 대한 구간별 비교표가 제시되어 있다. 가구주의 성별과 무관하게 공제총액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절대다수였다. 즉, 여성 가구주 가구는 84.56%가 공제액이 0원이었으며, 남성 가구주 가구는 그 수치가 다소 낮은 78.76%였다.

<표 IV-3-10> 가구주 성별에 따른 구간별 공제총액

(단위: 가구, %)

구분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없음	1,787(78.76)	2,153(84.56)
100만원미만	401(17.67)	294(11.55)
100만원 ~ 300만원 미만	7(0.31)	12(0.47)
300만원 ~ 500만원 미만	52(2.29)	61(2.4)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10(0.44)	4(0.16)
1,000만원이상	12(0.53)	22(0.86)
계	2,269(100.0)	2,546(100.0)

<표 IV-3-11>은 가구주 성별에 따른 부채액을 구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부채가

없는 가구는 가구주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간에 따른 부채의 총액에 있어서 양 가구 간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표 IV-3-11〉 가구주 성별에 따른 구간별 부채총액

(단위: 가구, %)

구분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없음	1,823(80.34)	2,193(86.14)
100만원미만	37(1.63)	35(1.37)
100만원 ~ 300만원 미만	84(3.7)	70(2.75)
300만원 ~ 500만원 미만	65(2.86)	43(1.69)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83(3.66)	55(2.16)
1,000만원이상	177(7.8)	150(5.89)
계	2,269(100.0)	2,546(100.0)

이상에서 살펴본 소득 및 재산이 가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다음의 <표 IV-1-27>은 가구의 규모를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제시되어 있다. 신청 탈락가구의 가구주 성별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이하인 가구가 40%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75% 초과부터는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더 높고 그 이하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표 IV-3-12〉 가구주 성별에 따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단위: 가구, %)

구분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최저생계비 0 ~ 25%이하	1,038(45.75)	1,060(41.63)
최저생계비 25 ~ 50%이하	521(22.96)	666(26.16)
최저생계비 50 ~ 75%이하	397(17.5)	479(18.81)
최저생계비 75 ~ 100%이하	285(12.56)	326(12.8)
최저생계비 100%이상	28(1.23)	15(0.59)
계	2,269(100.0)	2,546(100.0)

## 제4절 노인가구주 가구 여부에 따른 신청탈락가구 특성

<표 IV-41>은 신청탈락가구 가구 내 노인가구주 여부에 따른 가구주 성별을 나타낸 표이다.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에는 가구주가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즉, 비노인 가구주는 남성가구주가 61.27%, 노인 가구주는 여성가구주가 63.76%를 차지하였다.

<표 IV-4-1> 노인가구주 여부별 성

(단위: 가구, %)

구분	비노인 가구주	노인 가구주
남성	1,283(61.27)	986(36.24)
여성	811(38.73)	1,735(63.76)
계	2,094(100.0)	2,721(100.0)

<표 IV-42>는 신청탈락 가구 내 노인가구주 여부별로 가구원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노인가구주인 경우 1인가구는 79.7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비노인가구주 가구 중에서도 1인가구의 비중이 68.29%로 과반수가 훨씬 넘었다. 가구주의 노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탈락가구의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표 IV-4-2> 노인가구주 여부별 가구규모

(단위: 가구, %)

구분	비노인 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주 가구
1인가구	1,430(68.29)	2,169(79.71)
2인가구	294(14.04)	519(19.07)
3인가구	195(9.31)	22(0.81)
4인가구이상	175(8.36)	11(0.4)
계	2,094(100.0)	2,721(100.0)
평균(표준편차)	1.62(1.09)	1.22(0.48)

신청탈락가구가 노인가구주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자녀’인 경우가 대다수로 98.93%였다. 반면 비노인가구 중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모’인 경우가 61.8%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표 IV-4-3〉 노인가구주 여부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위: 가구, %)

구분	비노인 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주 가구
부모	1,294(61.8)	16(0.59)
자녀	800(38.2)	2,692(98.93)
기타	0(0.0)	12(0.44)
무응답	0(0.0)	1(0.04)
계	2,094(100.0)	2,721(100.0)

신청탈락가구의 노인가구주 여부에 따른 소득인정액 구간별 분포는 <표 IV-4-4>과 같다. 노인가구주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가 약 80%이상 비중을 보인다. 그러나 비노인가구주 가구는 동일한 액수의 수준에서 약 55%를 차지하였다. 신청탈락가구의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22.45%는 소득인정액이 없었다. 신청탈락가구의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양 집단 모두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노인 가구주 가구도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가 22.45%나 되었다.

〈표 IV-4-4〉 노인가구주 여부별 소득인정액 구간

(단위: 가구, %)

구분	비노인 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주 가구
없음	470(22.45)	14(0.51)
50만원 미만	1,156(55.21)	2,384(87.61)
50만원 ~ 100만원 미만	342(16.33)	309(11.36)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22(5.83)	14(0.51)
200만원 ~ 300만원 미만	4(0.19)	-
300만원 이상	-	-
계	2,094(100.0)	2,721(100.0)

<표 IV-4-5>에 제시된 소득평가액의 구간별 양상도 위의 <표 IV-1-31>과 유사하였다. 즉, 신청탈락가구의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에 절대 다수가 소득평가액이 50만원 미만에 속하였다. 신청탈락가구 중 비노인 가구의 약 24%는 소득평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노인가구주 여부별 소득평가액 구간

(단위: 가구, %)

구분	비노인 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주 가구
없음	500(23.88)	20(0.74)
50만원 미만	1,144(54.63)	2,400(88.2)
50만원 ~ 100만원 미만	334(15.95)	290(10.66)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13(5.4)	11(0.4)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0.14)	-
300만원 이상	-	-
계	2,094(100.0)	2,721(100.0)

<표 IV-4-6>은 신청탈락가구의 노인가구주 여부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간별로 제시하고 있다. 가구주의 노인 여부와 상관없이 약 90%이상이 소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6> 노인가구주 여부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간

(단위: 가구, %)

구분	비노인 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주 가구
없음	2,023(96.61)	2,650(97.39)
50만원미만	54(2.58)	64(2.35)
50만원 ~ 100만원 미만	12(0.57)	7(0.26)
100만원 ~ 200만원 미만	5(0.24)	-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
300만원이상	-	-
계	2,094(100.0)	2,721(100.0)

신청탈락가구의 노인가구주 여부에 따른 공제총액 구간별 분포는 <표 IV-4-7>

과 같다.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77.46%, 노인가구주 가구의 85.19%가 공제혜택이 없다. 양 집단 모두 대부분이 공제혜택이 없는 것이다.

〈표 IV-4-7〉 노인가구주 여부별 공제총액 구간

(단위: 가구, %)

구분	비노인 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주 가구
없음	1,622(77.46)	2,318(85.19)
100만원 미만	379(18.1)	316(11.61)
100만원 ~ 300만원 미만	11(0.53)	8(0.29)
300만원 ~ 500만원 미만	55(2.63)	58(2.13)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3(0.14)	11(0.4)
1,000만원 이상	24(1.15)	10(0.37)
계	2,094(100.0)	2,721(100.0)

〈표 IV-48〉는 신청탈락가구의 노인가구주 여부에 따른 부채총액 구간별 분포이다. 가구주의 노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채가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부채가 있더라도 노인 가구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 가구별 양상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IV-4-8〉 노인가구주 여부별 부채총액

(단위: 가구, %)

구분	비노인 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주 가구
없음	1,638(78.22)	2,378(87.39)
100만원 미만	42(2.01)	30(1.1)
100만원 ~ 300만원 미만	93(4.44)	61(2.24)
300만원 ~ 500만원 미만	66(3.15)	42(1.54)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75(3.58)	63(2.32)
1,000만원 이상	180(8.6)	147(5.4)
계	2,094(100.0)	2,721(100.0)

〈표 IV-49〉에서는 신청탈락가구의 노인가구주 여부에 따른 가구원수별 평균 빈곤갭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이 62.71%,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이 56.60%였다. 가구의 규모에서 1인가구의 빈곤갭은 비노인 가구주 가구가 75.99%,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이 58.07%로, 1인 가구

에서는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했다.

〈표 IV-4-9〉 노인가구주 여부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특성 I

(단위: 가구, 원)

구분		계	평균 빈곤율	
전체	비노인	2,094	476,499(267,258)	62.71%
	노인	2,721	360,858(191,960)	56.60%
1인	비노인	1,430	420,648(165,040)	75.99%
	노인	2,169	321,435(145,813)	58.07%
2인	비노인	294	539,657(320,178)	57.28%
	노인	519	510,440(246,858)	54.18%
3인	비노인	195	595,118(377,133)	48.83%
	노인	22	485,178(320,230)	39.81%
4인 이상	비노인	175	694,602(456,385)	42.66%
	노인	11	828,245(518,389)	49.55%

〈표 IV-4-10〉은 신청탈락가구의 노인가구주 여부별 가구규모에 따른 분위별 소득인정액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1인가구만 한정했을 경우, 하위 25%는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 노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94,600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노인 가구주 가구는 소득인정액 하위 25%의 소득인정액이 17,531원, 노인 가구주 가구는 112,131원이었다.

〈표 IV-4-10〉 노인가구주 여부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특성 II

(단위: 원)

구분	최소값	10%	25%	50%	75%	90%	최대값	
전체	비노인	0	0	17,531	117,545	437,382	848,985	2,323,668
	노인	0	91,200	112,131	220,171	381,402	524,477	1,719,651
1인	비노인	0	0	0	83,420	203,595	385,099	1,400,000
	노인	0	91,200	94,600	190,610	329,547	451,959	1,719,651
2인	비노인	0	0	112,395	401,712	654,850	848,241	1,578,759
	노인	0	145,900	225,106	379,850	640,800	791,233	1,444,624
3인	비노인	0	0	227,980	711,233	905,760	1,074,811	1,215,053
	노인	238,906	301,200	535,503	753,443	1,029,781	1,082,233	1,469,057
4인 이상	비노인	0	125,006	648,404	976,316	1,232,933	1,528,921	2,323,668
	노인	94,600	392,294	544,361	839,576	1,231,629	1,294,600	1,457,563

<표 IV-4-11>에는 신청탈락가구의 노인가구주 여부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이 제시되어 있다. 노인가구주 가구는 최저생계비 0~25%이하가 34.47%, 최저생계비 25~50%이하가 31.31%를 차지하였다. 반면, 비노인 가구주 가구는 최저생계비 0~25%이하 55.4%, 최저생계비 25~50%이하가 16.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IV-4-11> 노인가구주 여부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단위: 가구, %)

구분	비노인 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주 가구
최저생계비 0 ~ 25%이하	1,160(55.4)	938(34.47)
최저생계비 25 ~ 50%이하	335(16.0)	852(31.31)
최저생계비 50 ~ 75%이하	322(15.38)	554(20.36)
최저생계비 75 ~ 100%이하	254(12.13)	357(13.12)
최저생계비 100%이상	23(1.1)	20(0.74)
계	2,094(100.0)	2,721(100.0)

## 제5절 1인가구 여부에 따른 신청탈락가구 특성

<표 IV-5-1>은 신청탈락가구의 1인가구 가구주 여부별 연령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인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아 67.35%를 차지하였다.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연령도 60대 이상인 가구주의 비중이 가장 높아 49.75%를 차지하였다.

<표 IV-5-1> 1인가구 여부별 가구주의 연령

(단위: 가구, 세, %)

구분	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10대	61(1.69)	23(1.89)
20대	65(1.81)	29(2.38)
30대	235(6.53)	130(10.69)
40대	330(9.17)	288(23.68)
50대	484(13.45)	141(11.6)
60대 이상	2,424(67.35)	605(49.75)
계	3,599(100.0)	1,216(100.0)
평균(표준편차)	64.64(17.15)	58.47(18.18)

신청탈락가구 중 1인가구에 속하는 가구주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V-5-2>와 같다. 1인 가구 중에서 여성가구주 가구 비중이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더 높은 61.32%였다. 반대로 가구규모가 2인 이상인 가구 중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 보다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더 높아 72.12%를 차지하였다.

<표 IV-5-2> 1인가구 여부별 성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남성	1,392(38.68)	877(72.12)
여성	2,207(61.32)	339(27.88)
계	3,599(100.0)	1,216(100.0)

신청탈락가구의 1인가구 여부별 가구유형 비중은 <표 IV-5-3>에 제시되어 있다. 1인가구 중에서는 노인가구가 54.93%였고, 다음으로 일반가구 18.12%, 장애

인가구 16.62% 순이었다. 2인이상인 가구 중에서도 노인가가 가장 많았으나 36.1%로 그 비중은 1인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뒤로 일반가가 22.45%로 1인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비중이었다. 장애인 가구는 14.72%로, 1인가구의 비중보다 다소 낮았다.

〈표 IV-5-3〉 1인가구 여부별 가구유형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2인이상 가구
기타가구 <sup>15)</sup>	316(8.78)	63(5.18)
노인가구	1,977(54.93)	439(36.1)
모부자가구	39(1.08)	250(20.56)
장애인가구	598(16.62)	179(14.72)
조손가구	17(0.47)	12(0.99)
일반가구	652(18.12)	273(22.45)
계	3,599(100.0)	1,216(100.0)

〈표 IV-5-4〉 1인가구 여부별 피부양가구주와 부양의무자 관계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2인이상 가구
부모	773(21.48)	537(44.17)
자녀	2,814(78.19)	678(55.76)
기타 <sup>16)</sup>	12(0.33)	0(0.0)
무응답	0(0.0)	1(0.08)
계	3,599(100.0)	1,216(100.0)

신청탈락가구의 1인가구 여부에 따른 가구주와 부양의무자 관계는 <표 IV-5-4>에 제시되어있다. 1인가구의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자인 경우는 78.19%였으며, 그 다음이 '부모'인 경우가 21.48%였다. 2인 이상 가구 중에는 부양의무자가 '자녀'인 경우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으나 55.76%로 1인가구의 비중보다는 낮았다. 그 다음이 '부모'인 경우로 44.17%였는데, 1인가구의 21.48%보다 더 높았다.

15) 기타가구: 미혼부모가구, 소년소녀가구, 기타가구가 해당된다.

16) 사위, 며느리, 배우자, 장인 등

<표 IV-5-5>에는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이 1인 가구의 그것보다 높았는데, 즉, 1인 가구는 192,678원, 2인 이상 가구는 536,913원이었다. 가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인정액이므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득평가액은 소득인정액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인가구가 4,531원, 2인 이상 가구가 19,840원으로 양 집단 모두 매우 낮은 액수였다.

<표 IV-5-5> 1인가구 여부별 소득 및 재산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192,678(161,205)	536,913(382,696)
소득평가액	187,867(159,309)	516,545(376,813)
재산의 소득환산액	4,531(38,099)	19,840(113,840)
공제총액	369,357(3,549,643)	445,461(3,440,224)
부채총액	1,440,467(8,103,598)	7,450,588(29,145,724)

1인가구 여부별 분위별로 살펴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특성은 <표 IV-5-6>에 제시되어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의 모든 분위에서 2인 이상 가구보다 더 낮았다. 양 집단 모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나 공제총액, 부채총액의 값이 0인 가구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IV-5-6> 1인가구 여부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단위: 원)

구분	최소값	10%	25%	50%	75%	90%	최대값	
소득인정액	1인	0	0	91,200	154,967	294,554	434,486	1,719,651
	2인 이상	0	91,200	211,875	504,916	790,917	1,009,745	2,323,668
소득평가액	1인	0	0	87,656	144,600	287,290	427,933	1,719,651
	2인 이상	0	72,595	189,278	468,259	759,640	1,000,000	2,141,266
재산소득 환산액	1인	0	0	0	0	0	0	546,498
	2인 이상	0	0	0	0	0	0	1,427,566
공제총액	1인	0	0	0	0	0	30,000	79,000,000
	2인 이상	0	0	0	0	0	150,000	49,500,000
부채총액	1인	0	0	0	0	0	990,000	190,000,000
	2인 이상	0	0	0	0	2,534,000	19,141,000	500,000,000

신청탈락가구 중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구간별로 나타내면 <표 IV-5-7>과 같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1인가구가 11.23%, 2인 이상 가구가 6.58%였다. 각 가구별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84.0%였다.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42.52%였다.

<표 IV-5-7> 1인가구 여부별 소득인정액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없음	404(11.23)	80(6.58)
50만원미만	3,023(84.0)	517(42.52)
50만원 ~ 100만원 미만	168(4.67)	483(39.72)
100만원 ~ 200만원 미만	4(0.11)	132(10.86)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4(0.33)
300만원이상	-	-
계	3,599(100.0)	1,216(100.0)

<표 IV-5-8>에서 제시된 1인가구 여부별 소득평가액 구간별 비교는 <표 IV-5-7>의 결과와 유사하다. 소득평가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중은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가 각각 83.52%, 44.24%였다. 소득평가액이 없는 가구는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가 각각 12.03%, 7.15%였다.

<표 IV-5-8> 1인가구 여부별 소득평가액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없음	433(12.03)	87(7.15)
50만원미만	3,006(83.52)	538(44.24)
50만원 ~ 100만원 미만	156(4.33)	468(38.49)
100만원 ~ 200만원 미만	4(0.11)	120(9.87)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3(0.25)
300만원이상	-	-
계	3,599(100.0)	1,216(100.0)

신청탈락가구의 1인가구 여부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간별 분포를 <표 IV-5-9>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가구 그룹별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

는 경우가 95%이상이었다. 가구규모와 무관하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는 가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양 가구간 유사했다.

〈표 IV-5-9〉 1인가구 여부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없음	3,519(97.78)	1,154(94.9)
50만원미만	76(2.11)	42(3.45)
50만원 ~ 100만원 미만	4(0.11)	15(1.23)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5(0.41)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
300만원이상	-	-
계	3,599(100.0)	1,216(100.0)

〈표 IV-5-10〉은 신청탈락가구의 1인가구 여부별 공제총액을 구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1인가구 중 공제를 받지 못한 가구가 88.8%로 매우 높은 비중이었다. 2인 이상 가구에서는 75.74%로 1인가구보다는 10%p 이상 낮은 수치지만, 공제 혜택이 없는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은 양 집단이 유사하다.

〈표 IV-5-10〉 1인가구 여부별 공제총액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없음	3,019(88.8)	921(75.74)
100만원미만	456(12.67)	239(19.65)
100만원 ~ 300만원 미만	16(0.44)	3(0.25)
300만원 ~ 500만원 미만	77(2.14)	36(2.96)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7(0.19)	7(0.58)
1,000만원이상	24(0.67)	10(0.82)
계	3,599(100.0)	1,216(100.0)

〈표 IV-5-11〉에는 신청탈락가구 중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분

포가 제시되어 있다. 1인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0~25%이하인 가구는 48.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최저생계비 25~50%이하인 가구로 24.73%였다. 2인이상인 가구에서도 최저생계비 0~25%이하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비중은 1인가구보다 20%p정도 낮은 28.87%였다. 그 다음은 최저생계비 50~75%이하에 속하는 가구로 26.4%였다. 소득인정액에 대해 가구원수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수준이 2인이상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다. 즉, 최저생계비의 50%를 초과한 이 후부터는 2인이상 가구의 비중이 대부분 높지만, 50% 이하인 경우에는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표 IV-5-11〉 1인가구 여부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특성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2인이상 가구
최저생계비 0 ~ 25%이하	1,747(48.54)	351(28.87)
최저생계비 25 ~ 50%이하	890(24.73)	297(24.42)
최저생계비 50 ~ 75%이하	555(15.42)	321(26.4)
최저생계비 75 ~ 100%이하	374(10.39)	237(19.49)
최저생계비 100%이상	33(0.92)	10(0.82)
계	3,599(100.0)	1,216(100.0)

## 제6절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신청탈락가구 특성

<표 IV-6-1>은 신청탈락 가구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연령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 72.49%가 가구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이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40~60대에 골고루 분포해있는 반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표 IV-6-1>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주의 연령

(단위: 가구, %)

구분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10대	58(1.62)	26(2.12)
20대	36(1.0)	58(4.73)
30대	203(5.66)	162(13.2)
40대	319(8.89)	299(24.37)
50대	371(10.34)	254(20.7)
60대이상	2,601(72.49)	428(34.88)
계	3,588(100.0)	1,227(100.0)
평균(표준편차)	66.57(16.53)	52.90(16.73)

신청탈락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54.77%는 남성 가구주 가구였다. 반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절반이 넘는 55.49%는 여성가구주 가구였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더 높았다.

<표 IV-6-2>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주의 성별

(단위: 가구, %)

구분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남성	1,597(44.51)	672(54.77)
여성	1,991(55.49)	555(45.23)
계	3,588(100.0)	1,227(100.0)

<표 IV-6-3>에서는 신청탈락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원 수의 분포

가 제시되어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 1인가구는 83.72%로 절대 다수가 몰려있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중에서도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그 비중은 48.49%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1인가구 비중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서는 가구규모에서 1인가구에 절대다수가 몰려 있었으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내에서는 가구규모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표 IV-6-3〉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의 규모

(단위: 가구, %)

구분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1인가구	3,004(83.72)	595(48.49)
2인가구	525(14.63)	288(23.47)
3인가구	40(1.11)	177(14.43)
4인가구이상	19(0.53)	167(13.61)
계	3,588(100.0)	1,227(100.0)
평균(표준편차)	1.19(0.46)	2.0(1.26)

〈표 IV-6-4〉는 신청탈락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피부양가구주와 부양의무자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에 부양의무자가 '자녀'인 경우가 79.85%를 차지하였다.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중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모'인 경우가 48.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V-6-4〉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피부양가구주와 부양의무자 관계

(단위: 가구, %)

구분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부모	711(19.82)	599(48.82)
자녀	2,865(79.85)	627(51.1)
기타 <sup>17)</sup>	12(0.33)	-
무응답	-	1(0.08)
계	3,588(100.0)	1,227(100.0)

17) 사위, 며느리, 배우자, 장인 등

신청탈락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평균은 <표 IV-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평균 231,477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평균 420,371원이었다. 부채총액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5,432,973원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2,112,012원보다 더 높았다.

<표 IV-6-5>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평균

(단위: 원)

구분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소득인정액	231,477(199,451)	420,371(407,747)
소득평가액	224,410(193,522)	406,741(401,148)
재산의 소득환산액	6,634(54,350)	13,553(92,729)
공제총액	329,896(3,056,038)	560,170(4,620,231)
부채총액	2,112,012(14,441,729)	5,432,973(21,045,557)

<표 IV-6-6>은 신청탈락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을 분위별로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가구가 재산과 공제, 부채가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에 있어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50% 이상의 분위에서 높은 액수를 보였다.

<표 IV-6-6>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분위별 특성

(단위: 원)

구분		최소값	10%	25%	50%	75%	90%	최대값
소득인정액	없음	0	17,531	91,200	176,337	336,641	485,935	1,719,651
	있음	0	0	87,656	300,000	700,000	984,387	2,323,668
소득평가액	없음	0	17,531	91,200	167,259	326,108	476,746	1,719,651
	있음	0	0	80,000	283,856	695,600	969,708	2,141,266
재산의 소득환산액	없음	0	0	0	0	0	0	1,427,566
	있음	0	0	0	0	0	0	1,325,618
공제총액	없음	0	0	0	0	0	91,200	61,845,204
	있음	0	0	0	0	0	50,000	79,000,000
부채총액	없음	0	0	0	0	0	2,000,000	500,000,000
	있음	0	0	0	0	1,010,000	15,000,000	352,742,000

<표 IV-6-7>은 신청탈락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구간별 소득인정액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만 한정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구가 45.56%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없는 가구는 16.38%였다.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는 7.89%였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83.0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IV-6-7>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구간별 소득인정액

(단위: 가구, %)

구분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없음	283(7.89)	201(16.38)
50만원미만	2,981(83.08)	559(45.56)
50만원 ~ 100만원 미만	304(8.47)	347(28.28)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0(0.56)	116(9.45)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4(0.33)
300만원이상	-	-
계	3,588(100.0)	1,227(100.0)

<표 IV-6-8>은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른 구간별 소득평가액이 제시되어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중에 소득평가액이 50만원미만인 가구가 45.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소득이 없는 가구는 17.36%였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에서는 소득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구가 83.0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없는 가구는 8.56%였다.

<표 IV-6-8>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평가액 구간별 비교

(단위: 가구, %)

구분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없음	307(8.56)	213(17.36)
50만원미만	2,980(83.05)	564(45.97)
50만원 ~ 100만원 미만	287(8.0)	337(27.47)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4(0.39)	110(8.96)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3(0.24)
300만원이상	-	-
계	3,588(100.0)	1,227(100.0)

신청탈락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표 IV-6-9>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소득이 있는 가구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표 IV-6-9>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가구, %)

구분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없음	3,492(97.32)	1,181(96.25)
50만원미만	86(2.40)	32(2.61)
50만원 ~ 100만원 미만	9(0.25)	10(0.81)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0.03)	4(0.33)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
300만원이상	-	-
계	3,588(100.0)	1,227(100.0)

신청탈락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공제총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표 IV-6-10>과 같다.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공제액이 0원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80.71%,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85.09%였다.

<표 IV-6-10>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공제총액 구간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없음	2,896(80.71)	1,044(85.09)
100만원미만	563(15.69)	132(10.76)
100만원 ~ 300만원 미만	15(0.42)	4(0.33)
300만원 ~ 500만원 미만	80(2.23)	33(2.69)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13(0.36)	1(0.08)
1,000만원이상	21(0.59)	13(1.06)
계	3,588(100.0)	1,227(100.0)

<표 IV-6-11>에서는 신청탈락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부채총액의 구간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부채액이 존재하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대다수였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이 86.96%,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이 73.02%였다.

〈표 IV-6-11〉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부채총액

(단위: 가구, %)

구분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없음	3,120(86.96)	896(73.02)
100만원미만	50(1.39)	22(1.79)
100만원 ~ 300만원 미만	92(2.56)	62(5.05)
300만원 ~ 500만원 미만	68(1.9)	40(3.26)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85(2.37)	53(4.32)
1,000만원이상	173(4.82)	154(12.55)
계	3,588(100.0)	1,227(100.0)

〈표 IV-6-12〉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신청탈락 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 인정액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이하를 차지하는 가구가 40%대를 보였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50% 이하인 경우가 27.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이 50~75%이하인 경우가 21.68%, 75~100%이하인 경우가 19.32%, 25~50%이하인 경우가 17.2%로 나타났다. 요컨대,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의 비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비해 분포간 상대적으로 끌고루 분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IV-6-12〉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단위: 가구, %)

구분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최저생계비 0 ~ 25%이하	1,601(44.62)	497(40.51)
최저생계비 25 ~ 50%이하	976(27.2)	211(17.2)
최저생계비 50 ~ 75%이하	610(17.0)	266(21.68)
최저생계비 75 ~ 100%이하	374(10.42)	237(19.32)
최저생계비 100%이상	27(0.75)	16(1.3)
계	3,588(100.0)	1,227(100.0)

## 제7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피부양가구, 즉 신청탈락가구 특성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상태를 검토하였다.

피부양가구의 전반적인 특성과 함께 취약가구로 분류될 수 있는 여성 가구주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1인가구,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만 선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탈락가구의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신청탈락가구 중 60세 이상인 가구주의 비중이 적지 않았으며, 노인 가구와 1인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탈락가구 중 83.57%로 나타나는 등 신청탈락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다.

취약가구로만 한정해서 검토해본 결과, 여성 가구주 가구는 신청탈락가구에 서 60대 이상이 73.53%로 나타났고, 여성 가구주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255,264원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50만원 이상이며, 여성 가구주 가구 중 1인가구가 다수라는 분석결과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금액이다.

노인가구주 가구 중 공제액이 없는 가구는 신청탈락가구 중 85.19%로, 대부분의 노인가구주 가구가 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가구주 여부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에 있어서 신청탈락가구에 속하는 노인가구주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인 경우가 0.74%에 불과했으며, 최저생계비의 25% 이하인 가구는 34.47%였다.

소득원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1인가구의 경우 신청탈락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는 가구가 97.78%로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중에서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아, 근로능력이 있으나 곧 노령기에 접어드는 인구집단에 다수 몰려있었다. 이는 곧 신청탈락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

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탈락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420,371원이었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신청탈락가구가 90.97%로, 절대다수가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신청탈락가구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거나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신청탈락가구는 수급가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이지만 제도에서는 외면받는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신청탈락가구의 다수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가 성실한 부양의 책임을 감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사각지대에 처할 수도 있고, 혹은 빈곤과는 무관한 집단일 수도 있다. 즉,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정도에 대한 현실성과, 피부양가구에 대한 부양 의지가 중요하다. 부양의지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활용하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부양능력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잠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다음 장에서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 5 장

##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제3절 부양의무자의 노인 여부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제4절 가구규모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제5절. 소결



## 제5장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특성

### 제1절 문제제기

앞 장에서는 신청탈락가구의 특성을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청탈락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성실하고 적절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본 장에서는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을 한정된 데이터를 통해 검토하여, 부양의무자들의 성실한 부양책임의 전제가 되는 부양여력을 기능해본다.

기존의 연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 혹은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한 규정에 관하여 논리적 비판을 제시했을 뿐, 실제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들이 어떤 집단이고, 그들이 속한 가구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논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속성을 밝힐 수 있는 데이터의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양의무자의 특성 및 그들이 속한 가구의 여건을 검토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와 1인가구인 경우에 주목하여 보다 자세한 분석을 시행한다. 노인 부양의무자와 단독으로 거주하는 부양의무자는 타 조건에 비해서 부양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장의 내용을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논리적 분석을 넘어서 실제 부양의무자의 여건과 상황들에 관한 내용들이 제시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념적 차원 뿐만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재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 제2절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표 IV-2-1>에는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주 연령대별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부양의무자의 평균 연령은 49.76세이다. 부양의무자 중 20대의 비중은 6.33%, 60대 이상 부양의무자 비중은 24.76%이다. 기중치를 적용한 복지패널 데이터로 평균 가구주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40대와 60대가 약 27%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50대도 24.65%로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신청탈락가구가 노인층의 비중이 많고,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표 V-2-1> 부양의무자의 연령

구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단위: 가구, %)
		복지패널
10대	6(0.12)	-
20대	305(6.33)	3.53
30대	932(19.36)	17.40
40대	1,416(29.41)	27.29
50대	964(20.02)	24.65
60대이상	1,192(24.76)	27.13
계	4,815(100.0)	100.0
평균(표준편차)	49.76(14.71)	

<표 IV-2-2>에는 부양의무자의 성별이 제시되어 있는데, 남성이 50.34%, 여성이 49.66%로 남성이 다소 높지만 큰 차이는 없다.

<표 V-2-2> 부양의무자의 성별

구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단위: 가구, %)
남성	2,424(50.34)	
여성	2,391(49.66)	
계	4,815(100.0)	

<표 V-2-3>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규모는 평균 2.48명이며, 가구규모가 1~2인 가구인 경우는 모두 50% 이상으로 과반수가 넘었다.

복지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일반 가구의 경우에 평균 가구규모가 2.8명이며, 1인가구의 비중이 20.30%로,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규모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커서 26.50%를 차지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와는 규모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V-2-3>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

구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단위: 가구, %)
		복지패널
1인가구	1,456(30.24)	20.30
2인가구	1,197(24.86)	23.25
3인가구	794(16.49)	21.01
4인가구	1,152(23.93)	26.50
5인가구	192(3.99)	7.14
6인가구	23(0.48)	1.48
7인가구이상	1(0.02)	0.31
계	4,815(100.0)	100.0
평균(표준편차)	2.48(1.28)	2.8(0.02)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의 현황을 <표 V-2-4>를 통해서 보면,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 10.16%로 나타났다.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한 일반가구를 통해 가구 내 장애인 존재에 대한 비중을 보면, 장애인이 없는 가구가 93.47%,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6.52%로 나타나,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가운데 장애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V-2-4> 부양의무자 가구 내 장애가 있는 가구원 유무

구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단위: 가구, %)
		복지패널
없음	4,326(89.84)	93.47
있음	489(10.16)	6.52
계	4,815(100.0)	100.0

<표 V-2-5>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주거소유 형태별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46.75%, 전월세가 5.28%였다.

복지패널 자료를 통해서 평균적인 가구의 주거 소유형태를 보면, 자가인 경우가 54.62%로 나타나,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보다 높은 비중이었다. 전월세의 경우는 20.74%로, '기타' 소유형태에 몰려있는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표 V-2-5> 부양의무자 가구의 주거소유 형태

구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복지패널
자가 <sup>18)</sup>	2,251(46.75)	54.62
전월세	254(5.28)	20.74
기타 <sup>19)</sup>	2,310(47.98)	24.64
계	4,815(100.0)	100.0

<표 V-2-6>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및 재산총액과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총액을 비교해볼 때, 복지패널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일반 가구의 평균적인 월소득이 더 높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중위값은 2,315,576원, 평균은 2,705,689원이며,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전체 가구의 소득 중위값은 39,340,000원(월 평균 약 3,278,333원), 평균은 46,020,000원(월 평균 약 3,835,000원)으로 양 가구 간에 큰 차이가 드러난다.

18) 일부 대상자 중에 주택과 전월세를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주거 소유형태가 자가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19) 기타에 해당하는 주거유형으로는 보증부 월세, 영구임대주택, 부분무료임차, 전체무료임차, 움막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그룹홈거주자, 보장기관제공거주자, 가정위탁 등이 있다.

〈표 V-2-6〉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단위: 원)

구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한국복지패널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소득총액*	2,315,576	2,705,689	39,340,000	46,020,000
재산총액	81,608,196	159,093,559	159,000,000	292,040,000
부채총액	0	26,788,644	7,000,000	41,020,000

\*주: 「한국복지패널자료」는 경상소득으로 계산함.

〈표 V-2-7〉을 통해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현황을 보면, 소득평가액은 평균 2,669,054원, 재산의소득환산액은 5,686,977원이었다. 소득총액은 2,705,689원, 재산총액은 159,093,559원이었다.

〈표 V-2-7〉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

(단위: 원)

구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평가액	2,669,054(2,600,783)
재산의 소득환산액	5,686,977(12,276,759)
소득총액	2,705,689(2,606,942)
재산총액	159,093,559(244,803,680)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간별로 비교해 본 결과가 각각 <표 V-2-8>, <표 V-2-9>에 제시되어 있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 중 10.22%는 소득평가액이 없었으며, 소득평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37.7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V-2-8〉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평가액 구간별 비교

(단위: 가구, %)

구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없음	492(10.22)
50만원미만	581(12.07)
50만원 ~ 100만원 미만	292(6.06)
100만원 ~ 200만원 미만	704(14.62)
200만원 ~ 300만원 미만	929(19.29)
300만원이상	1,817(37.74)
계	4,815(100.0)

<표 V-2-9>에는 구간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제시되어 있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는 비중은 38.09%였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40.93%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표 V-2-9> 부양의무자 가구의 구간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가구, %)

구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없음	1,834(38.09)
50만원미만	36(0.75)
50만원 ~ 100만원 미만	165(3.43)
100만원 ~ 200만원 미만	445(9.24)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64(7.56)
300만원이상	1,971(40.93)
계	4,815(100.0)

### 제3절 부양의무자의 노인 여부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다음으로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노인인가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부양의무자가 노인일 경우에는 부양을 위해 소득보다는 재산에 의존해야 한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중에는 60세 이상인 경우가 24.76%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노인인 부양의무자는 노인이 아닌 부양의무자보다 부양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중에서 노인집단만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부양의무자의 노인 여부에 따른 가구규모는 <표 IV-3-1>에 제시되어 있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노인 부양의무자 1인이 거주하는 비중이 31.56%였으며, 2인 가구 이하인 비중이 90%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표 V-3-1> 부양의무자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가구원 수

(단위: 가구, %)

구분	노인	비노인
1인가구	284(31.56)	1,172(29.94)
2인가구	535(59.44)	662(16.91)
3인가구	55(6.11)	739(18.88)
4인가구이상	26(2.89)	1,342(34.29)
계	900(100.0)	3,915(100.0)
평균(표준편차)	1.82(0.74)	2.63(1.33)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약 50%로 거의 동일하였으며, 비노인 부양의무자도 유사하였다.

<표 V-3-2> 부양의무자의 노인여부에 따른 성별

(단위: 가구, %)

구분	노인	비노인
남성	446(49.56)	1,978(50.52)
여성	454(50.44)	1,937(49.48)
계	900(100.0)	3,915(100.0)

노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노인이 장애인인 비중이 20%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비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와 6~7% 정도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라기보다는 장애가 있는 노인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표 V-3-3〉 부양의무자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 내 장애있는 가구원 거주유무

(단위: 명, %)

구분	노인	비노인
없음	680(75.56)	3,646(93.13)
1명	199(22.11)	238(6.08)
2명이상	21(2.33)	31(0.79)
있음	220(24.44)	269(6.87)
계	900(100.0)	3,915(100.0)

〈표 V-3-4〉에서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 소득평가액은 597,578원이었으며, 비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 소득평가액은 3,145,255원으로 25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가 7,513,421원으로, 비노인 부양의무자의 5,267,105원보다는 더 높았다. 즉, 노인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은 비노인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보다 낮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00만원 이상 높았다.

〈표 V-3-4〉 부양의무자의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균

(단위: 원)

구분	노인 부양의무자(n=900)	비노인 부양의무자(n=3,915)
소득평가액	597,578(1,197,794 )	3,145,255(2,603,147)
재산의 소득환산액	7,513,421(10,741,113)	5,267,105(12,567,131)

〈표 V-3-5〉에는 부양의무자의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련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신청탈락가구에 속하는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 하위 25%이하는 소득평가액이 0원이었다. 반면 비노인 부양의무자 가구는 하위 25%가 재산

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었다.

〈표 V-3-5〉 부양의무자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분위별 특성

(단위: 원)

구분		최소값	10%	25%	50%	75%	90%	최대값
소득평가액	노인	0	0	0	203,613	692,530	1,774,100	24,124,825
	비노인	0	366,156	1,563,113	2,797,166	4,203,790	5,831,710	55,450,666
재산의 소득환산액	노인	0	1,102,659	2,033,883	4,109,710	8,593,490	17,317,428	109,079,745
	비노인	0	0	0	992,293	5,703,187	13,963,756	200,812,794

〈표 V-3-6〉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구간별로 비교해보면,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는 50만원 미만에 70%이상이 몰려있었다. 반면, 비노인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약 11%였다. 소득평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가 2.67%, 비노인 부양의무자 가구가 45.8%로 양 가구간에 차이를 보였다.

〈표 V-3-6〉 부양의무자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평가액

(단위: 가구, %)

구분	노인	비노인
없음	238(26.44)	254(6.49)
50만원미만	396(44.0)	185(4.73)
50만원 ~ 100만원 미만	80(8.89)	212(5.42)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15(12.78)	589(15.04)
200만원 ~ 300만원 미만	47(5.22)	882(22.53)
300만원이상	24(2.67)	1,793(45.8)
계	900(100.0)	3,915(100.0)

〈표 V-3-7〉을 통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간별로 비교해 본 결과,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의무자의 노인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은 구간에 몰려 있었다. 특히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V-3-7〉 부양의무자 노인여부에 따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가구, %)

구분	노인	비노인
없음	20(2.22)	1,814(46.33)
50만원미만	3(0.33)	33(0.84)
50만원 ~ 100만원 미만	52(5.78)	113(2.89)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44(16.0)	301(7.69)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25(13.89)	239(6.1)
300만원이상	556(61.78)	1,415(36.14)
계	900(100.0)	3,915(100.0)

## 제4절 가구규모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본 절에서는 부양의무자의 가구규모를 1인가구와 2인이상인 가구로 나누어서 각 가구의 특성을 검토한다.

1인이 거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중 60대 이상인 경우는 22.6%였으며, 2인이상 가구 중에는 25.69%를 차지하였다. 1인가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30~40대인 경우가 50% 이상이였으며, 2인이상 가구에서는 40~50대가 56%였다.

〈표 V-4-1〉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 부양의무자 연령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2인이상 가구
10대	5(0.34)	1(0.03)
20대	249(17.1)	56(1.67)
30대	417(28.64)	515(15.33)
40대	323(22.18)	1,093(32.54)
50대	133(9.13)	831(24.74)
60대이상	329(22.6)	863(25.69)
계	1,456(100.0)	3,359(100.0)
평균(표준편차)	45.52(17.08)	51.59(13.14)

〈표 V-4-2〉에는 가구규모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4,570,892원, 2인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9,997,376원이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인가구가 2,455,560원, 2인이상 가구가 7,087,675원으로 후자가 월등히 높았다.

〈표 V-4-2〉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 소득 및 재산 평균

(단위: 원)

구분	1인가구(n=1,456)	2인이상 가구(n=3,359)
소득인정액	4,570,892(7,571,581)	9,997,376(14,085,204)
소득평가액	2,115,333(1,558,304)	2,909,071(2,907,607)
재산의 소득환산액	2,455,560(7,769,829)	7,087,675(13,543,302)

가구규모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소득 및 재산 특성을 <표 IV-4-3> 을 통해 분위별로 검토한 결과, 소득평가액에서는 2인 이상 가구가 고분위에서 높은 액수를 보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에도 2인 이상인 가구가 50%이상의 분위에서 월등히 높은 액수였다.

<표 V-4-3>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 소득 및 재산 분위

(단위: 원)

구분		최소값	10%	25%	50%	75%	90%	최대값
소득평가액	1인	0	0	877,005	2,200,000	2,900,000	3,870,979	12,000,000
	2인	0	58,333	666,667	2,500,000	4,289,130	6,068,783	55,450,666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	0	0	0	0	1,919,252	7,027,784	133,989,254
	2인	0	0	0	3,015,378	7,991,805	17,156,631	200,812,794

<표 V-4-4> 에서 제시된 가구규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구간별로 비교해보면,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1인가구가 약 21%, 2인 이상 가구가 약 22%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평가액이 매우 낮은 가구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다.

<표 V-4-4>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구간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1인가구	2인이상 가구
없음	184(12.64)	308(9.17)
50만원미만	130(8.93)	451(13.43)
50만원 ~ 100만원 미만	64(4.4)	228(6.79)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17(14.9)	487(14.5)
200만원 ~ 300만원 미만	522(35.85)	407(12.12)
300만원이상	339(23.28)	1,478(44.0)
계	1,456(100.0)	3,359(100.0)

가구규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간별로 비교한 <표 V-4-5> 를 보면, 양 집단 모두 1인 가구 중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 중 1인가구는 65.32%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었다. 2인 이상 규모의 가구 중 소득환산액이 없는 가구는 26.29%였다. 반면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인 가구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약 20%로, 2인 이상 가구에서는 50.07%였다.

〈표 V-4-5〉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명, %)

구분	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없음	951(65.32)	883(26.29)
50만원미만	6(0.41)	30(0.89)
50만원 ~ 100만원 미만	54(3.71)	111(3.3)
100만원 ~ 200만원 미만	89(6.11)	356(10.6)
200만원 ~ 300만원 미만	67(4.6)	297(8.84)
300만원이상	289(19.85)	1,682(50.07)
계	1,456(100.0)	3,359(100.0)

## 제5절 소 결

본 절에서는 부양여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특성을 검토하였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중 40대가 29.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60대 이상인 경우도 24.76%로, 40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48명이었으며, 복지패널을 통해 확인한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인 2.8명보다 낮았다. 특히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인가구는 30.24%로 일반가구의 20.30%보다 훨씬 높았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는 장애인의 거주 비중도 10.16%로 높았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면,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평균이 1,857,472원이었고 한국복지패널데이터로 분석한 일반가구의 경상소득이 월 평균 3,835,000원으로, 측정기준은 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양 가구 간 큰 차이를 보였다.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이 22.29%로 나타나 적지않은 비중이 저소득 상태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는 비중은 38.09%였다.

부양의무자의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노인 1인이 거주하는 비중이 31.56%였으며,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 하위 25%이하는 소득평가액이 0원이었다. 일부 노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해 가구의 재산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득보다 재산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더 커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가 일반적인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기에는 무리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가구의 유형이나 구성, 그리고 소득을 검토해 볼 때,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는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비중이 낮지 않았으며, 소득이 매우 낮은 집단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볼 때, 부양의무자 가구 중 일부는 신청탈락가

구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현실적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결과에서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부 집단이 부양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울 가능성이 고려된다. 이는 부양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규정으로 신청탈락가구 중 일부가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그 자체의 한계를 고려할 수도 있다. 즉, 일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같은 기준을 만들게 되면, 그 기준에서 미미하게 벗어나는 집단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규정의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준과 근접한 영역에 위치하여 제도 혜택에서 배제되는 집단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타당한가와, 기준선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3장에서 논의하였다. 후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단서가 발견된다. 자녀교육, 주택마련 등으로 가구소비가 가장 왕성할 수 있는 40대가 부양의무자 중 29.41%, 1인가구가 30.24%였다. 소득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구가 22.29%였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인 가구가 38.09%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부양능력 판정 기준선을 미미하게 초과하는 집단이 소수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 일반 가구와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결과도 부양의무자의 특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신청탈락가구와 이들의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분석이 각각 이루어진 이후 단계에서는 피부양가구와 부양의무자 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비관적인 가설은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피부양가구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부양의무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한다.



제 6 장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가구의 특성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부양의무자 가구특성에 따른 피부양가구 특성

제3절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른 피부양자 가구 특성

제4절 소 결



## 제6장 부양의무자와 피부양가구의 특성

### 제1절 문제제기

앞서 제3장에서는 신청탈락가구인 피부양가구의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4장에서는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및 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3장과 4장이 각 집단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이 시행되었다면, 본 장에서는 부양의무자와 피부양가구를 연결하여 주요 특성별로 비교, 분석한다.

본 장에서 부양의무자와 피부양가구를 연결하여 분석을 시행하는 이유는 피부양가구의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건 역시 일반 가구의 그것보다는 상당히 열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빈곤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빈곤이 대물림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상당 비중이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세대별로 경제적 수준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 혹은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는 비록 부양의무자 규정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을지라도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본 장에서 부양자와 피부양가구 간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부양의무자의 가족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득 및 자산으로 구성된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는 측면이다. 부양의무자의 가족특성은 노인가구 여부, 장애인 가구원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통해서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는 측면이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위해서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소득 수준, 소득분위 분포를 기준으로 부양의무

자 가구의 소득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분석한다.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가구원수, 가구유형, 장애있는 가구원 거주가구, 근로능력있는 가구원 거주가구 등의 변수를 검토한다. 그리고 피부양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소득총액, 재산총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과 재산과 관련 변수들을 분석에 적용할 것이다.

## 제2절 부양의무자 가구특성에 따른 피부양가구 특성

### 1. 노인과 비노인 부양의무자 가구 구분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V-2-1〉은 부양의무자 노인가구 여부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피부양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가구를 65세 이상 노인인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성별로 보면,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 소속 여부에 따른 피부양가구 가구주의 성별 분포는 유사하였다. 연령별 특성을 보면, 피부양가구의 가구주는 60대 이상 연령층 비중이 높고, 피부양가구 가구주의 48.6%는 부양의무자 가구형태가 노인 가구였다.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이 40대 연령층 중에서 53.1%, 50대 연령층 중에서 47.4%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가구였다.

가구원수별로 보면, 피부양가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양의무자 가구형태가 노인가구의 경우 신청탈락가구는 1인가구가 49.9%로 나타났다. 피부양가구의 가구형태를 노인세대, 모부자세대, 장애인세대, 조손세대, 일반세대로 구분해 볼 때, 노인세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양의무자 가구형태가 노인가구의 경우 피부양가구는 노인세대 중에서 51.0%를 차지하였다. 피부양가구에서 장애인세대는 전체 중에서 16.1%인데, 부양의무자 가구형태가 노인가구의 경우 피부양가구는 장애인세대의 32.8%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가구형태가 노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이 있는 피부양가구는 51.0%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여부별로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부양가구 중 19.3%였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가구인 경우는 피부양가구 중 55.2%였다.

〈표 VI-2-1〉 부양의무자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부양의무자 노인	부양의무자 비노인
성별	남성	2269(47.1)	1145(50.5)	1124(49.5)
	여성	2545(52.9)	1250(49.1)	1295(50.9)
연령	20대 미만	178(3.7)	100(56.2)	78(43.8)
	30대	365(7.6)	198(54.2)	167(45.8)
	40대	618(12.8)	328(53.1)	290(46.9)
	50대	625(13.0)	296(47.4)	329(52.6)
	60대이상	3029(62.9)	1473(48.6)	1556(51.4)
가구원 수	1인가구	3470(72.1)	1731(49.9)	1739(50.1)
	2인가구	886(18.4)	529(59.7)	357(40.3)
	3인가구	249(5.2)	90(36.1)	159(63.9)
	4인가구	140(2.9)	30(21.4)	110(78.6)
	5인가구	49(1.0)	11(22.4)	38(77.6)
	6인가구	13(0.3)	2(15.4)	11(84.6)
	7인가구이상	8(0.2)	2(25.0)	6(75.0)
가구유형	노인세대	2416(50.2)	1232(51.0)	1184(49.0)
	모부자세대	289(6.0)	128(44.3)	161(55.7)
	장애인세대	777(16.1)	255(32.8)	522(67.2)
	조손세대	29(0.6)	21(72.4)	8(27.6)
	일반세대	925(19.2)	549(59.4)	376(40.6)
	기타	379(7.9)	210(55.4)	169(44.6)
장애인가구원여부	없음	3290(68.6)	1665(50.6)	1625(49.4)
	있음	1505(31.4)	767(51.0)	738(49.0)
근로능력가구원여부	없음	3885(80.7)	1882(48.4)	2003(51.6)
	있음	930(19.3)	513(55.2)	417(44.8)
계		4815(100.0)	2395(49.7)	2420(50.3)

## 나. 소득수준 및 자산수준 특성

〈표 VI-2-2〉는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 여부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소득총액을 구간별로 살펴 본 결과이다. 대다수 피부양가구의 총소득 수준은 100만원 미만

에 속하며, 특히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83.2% 비중이 최저 소득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양의무자 가구는 노인가구일 가능성이 높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가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관계의 취약성이 확인된다.

〈표 VI-2-2〉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총액 구간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노인	비노인
50만원미만	4007(83.2)	2011(50.2)	1996(49.8)
50~100만원미만	673(14.0)	352(52.3)	321(47.7)
100~200만원미만	132(2.7)	31(23.5)	101(76.5)
200~300만원미만	3(0.1)	1(33.3)	2(66.7)
300만원 이상	-	-	-
전체	4815(100.0)	2395(49.7)	2420(50.3)

〈표 VI-2-3〉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 여부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소득총액 평균을 제시하였다. 피부양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가구인 경우는 평균소득이 27만 8천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VI-2-3〉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총액 평균

(단위: 원)

구분	전체	노인	비노인
1분위	41,144	35,725	46,037
2분위	112,935	114,909	111,127
3분위	197,133	201,187	193,570
4분위	350,054	351,225	348,488
5분위	731,663	674,917	787,359
전체	283,676	278,870	288,432

〈표 VI-2-4〉는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 여부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재산총액 구간별 분포를 살펴 본 결과이다. 재산총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피

부양가구 가운데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는 12.9%로 나타났고,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가구가 52.3%로, 비노인인 가구의 47.7%보다 다소 높았다. 재산총액 분포를 비교해 보면 피부양가구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양의무자 가구를 노인가구와 비노인 가구를 구분한 결과를 보면, 비노인가구인 경우 100만원 미만 중에서 52.2%, 100-300만원 미만 중에서 47.6%, 300-500만원 미만 중에서 58.0%, 500-1000만원 미만 중에서 52.2%로 나타나 대체로 재산규모가 낮은 구간에서 비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표 VI-2-4〉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재산총액 구간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노인	비노인
없음	621(12.9)	325(52.3)	296(47.7)
100만원 미만	670(13.9)	350(52.2)	320(47.8)
100-300만원 미만	599(12.4)	285(47.6)	314(52.4)
300-500만원 미만	386(8.0)	224(58.0)	162(42.0)
500-1000만원 미만	607(12.6)	317(52.2)	290(47.8)
1000만원 이상	1932(40.1)	945(48.9)	987(51.1)
전체	4815(100.0)	2446(50.8)	2369(49.2)

〈표 VI-2-5〉는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 여부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평균 재산총액을 제시하고 있다. 피부양가구의 재산평균 총액은 1천 3백 80만원이었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유형을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구분해 볼 때, 1분위, 3분위에서 비노인 가구가 노인가구에 비해 평균 재산총액이 높았다. 부양의무자 가구형태가 노인가구인 경우 피부양가구의 재산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노인가구일수록 비록 생활비 보조는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부양가구와 피부양가구 간에 재산의 사적이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VI-2-5〉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재산총액 평균

(단위: 원)

구분	전체	노인	비노인
1분위	93,710	89,801	98,134
2분위	1,711,902	1,760,257	16,64,406
3분위	6,430,820	6,349,398	6,527,399
4분위	17,117,828	17,342,411	16,889,389
5분위	45,467,746	46,619,512	44,460,814
전체	13,808,503	13,376,386	14,254,666

〈표 VI-2-6〉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 여부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소득인정액이 피부양가구에서 낮은 소득구간에 집중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은 10만원 미만이 무려 33.4%에 이르고 20-40만원 미만 23.6%, 10-20만원 미만 18.5% 순서로 나타났다.

피부양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소득인정액 구간에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소득인정액 분포에서 100~200만원 미만 중에서 54.5%는 부양의무자 가구형태가 노인가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2-6〉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노인	비노인
10만원미만	1609(33.4)	807(50.2)	802(49.8)
10~20만원미만	890(18.5)	422(47.4)	468(52.6)
20~40만원미만	1134(23.6)	566(49.9)	568(50.1)
40~60만원미만	626(13.0)	313(50.0)	313(50.0)
60~100만원미만	416(8.6)	210(50.5)	206(49.5)
100~200만원미만	134(2.8)	73(54.5)	61(45.5)
200만원이상	4(0.1)	2(50.0)	2(50.0)
계	4813(100.0)	2393(49.7)	2420(50.3)

〈표 VI-2-7〉에서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 여부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을 살펴보았다. 피부양가구의 총소득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구분하여

평균 소득인정액 수준을 분석하였다. 평균 소득인정액 수준은 피부양가구가 27만 9천원이었고, 최저생계비 25% 미만의 소득계층에서는 평균 약 9만원이었다. 부양의무자가구 중에서 노인가구를 보면,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평균 27만 6천원, 비노인가구에서는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평균 28만 2천원이었다.

〈표 VI-2-7〉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단위: 원)

구분	전체	노인	비노인
최저생계비 0~25% 미만	90,999	83,671	97,549
최저생계비 25~50% 미만	238,374	255,466	221,387
최저생계비 50~75% 미만	474,940	440,512	512,521
최저생계비 75~100% 미만	663,246	604,041	731,461
최저생계비 100%이상	675,293	683,222	664,620
전체	279,561	276,949	282,147

〈표 VI-2-8〉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 여부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소득평가액 비중을 소득총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피부양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최하위 소득구간인 10만원 미만에서 34.4%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구간별로 부양의무자가구가 노인가구인 경우와 비노인가구인 경우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VI-2-8〉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평가액 구간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노인	비노인
10만원미만	1658(34.4)	834(50.3)	824(49.7)
10~20만원미만	909(18.9)	429(47.2)	480(52.8)
20~40만원미만	1117(23.2)	557(49.9)	560(50.1)
40~60만원미만	604(12.5)	304(50.3)	300(49.7)
60~100만원미만	400(8.3)	202(50.5)	198(49.5)
100~200만원미만	122(2.5)	66(54.1)	56(45.9)
200만원이상	3(0.1)	1(33.3)	2(66.7)
계	4813(100.0)	2393(49.7)	2420(50.3)

〈표 VI-2-9〉는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 여부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비교한 결과이다. 피부양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인 평균에 있어서 양 집단간 소득평가액이 유사하였다. 즉, 노인가구는 270,388원, 비노인 가구는 271,257원이었다. 최저생계비 25%미만의 소득계층에서 피부양가구는 평가액이 평균 7만 7천원이었고, 부양의무자가구가 노인 가구인 경우보다 비노인 가구인 경우가 다소 높았다.

〈표 VI-2-9〉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소득평가액 평균

(단위: 원)

구분	전체	노인	비노인
최저생계비 0~25%미만	77,220	73,802	80,276
최저생계비 25~50%미만	231,264	248,864	213,773
최저생계비 50~75%미만	469,454	435,825	506,161
최저생계비 75~100%미만	662,013	603,816	729,067
최저생계비 100%이상	675,293	683,222	664,620
전체	270,824	270,388	271,257

〈표 VI-2-10〉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간별로 보면, 피부양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특히 피부양가구의 49.6%가 노인가구였다.

〈표 VI-2-10〉 부양의무자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간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노인	비노인
없음	4673(97.1)	2316(49.6)	2357(50.4)
10만원미만	37(0.8)	21(56.8)	16(43.2)
10~20만원미만	28(0.6)	15(53.6)	13(46.4)
20~40만원미만	39(0.8)	25(64.1)	14(35.9)
40~60만원미만	25(0.5)	11(44.0)	14(56.0)
60~100만원미만	8(0.2)	4(50.0)	4(50.0)
100만원이상	5(0.1)	3(60.0)	2(40.0)
전체	4,815(100.0)	2,395(49.7)	2,420(50.3)

〈표 VI-2-11〉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살펴보았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있더라도 평균액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피부양가구의 최저생계비가 0~25% 미만인 경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평균은 13,477원이었고, 부양가구가 노인가구인 경우가 9,430원, 비노인인 가구가 17,094원이었다.

〈표 VI-2-11〉 부양의무자의 노인가구여부별 피부양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원)

구분	전체	노인	비노인
최저생계비 0~25%미만	13,477	9,430	17,094
최저생계비 25~50%미만	6,858	6,602	7,112
최저생계비 50~75%미만	4,767	3,308	6,360
최저생계비 75~100%미만	1,086	226	2,076
최저생계비 100%이상	-	-	-
전체	8,394	6,122	10,642

## 2.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에 따른 비교

〈표 VI-2-12〉는 부양의무자의 장애인가구원수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89.8%가 장애인 가구원수가 없었으며, 1명 9.1%, 2명 이상 1.1%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피부양가구의 가구주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애인 가구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피부양자의 연령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1명 이상의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20대 중 6.7%, 30대 중 17.0%, 40대 중 18.3%, 50대 중 7.0%, 60대 이상 중 6.8%로 나타났다.

피부양가구는 1~3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 인원별로 보면, 1인 10.3%, 2인 7.2%, 3인 12.4% 비율로 장애인 가구원이 존재하였다.

가구유형에 따른 결과를 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애인이 1명 이상이 있는 가구 중, 신청탈락가구는 노인세대 8.2%, 모부자세대 10.7%, 장애인세대 16.1%였다.

장애인 가구원별로 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피부양 가구에서도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1명이 10.7%, 2명 이상이 14.7%로 나타났다.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수별로 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 가구는 10.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VI-2-12〉 부양의무자 장애인 가구원수별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없음	1명	2명 이상
성별	남성	2045(90.1)	191(8.4)	33(1.5)
	여성	2280(89.6)	246(9.7)	19(0.7)
연령	20대	163(91.6)	12(6.7)	3(1.7)
	30대	297(81.4)	62(17.0)	6(1.6)
	40대	493(79.8)	113(18.3)	12(1.9)
	50대	573(91.7)	44(7.0)	8(1.3)
	60대 이상	2800(92.4)	206(6.8)	23(0.8)
가구원수	1인	3,113(89.7)	335(9.7)	22(0.6)
	2인	822(92.8)	45(5.1)	19(2.1)
	3인	218(87.6)	23(9.2)	8(3.2)
	4인	114(81.4)	23(16.4)	3(2.1)
	5인	41(83.7)	8(16.3)	0(0.0)
	6인	12(92.3)	1(7.7)	0(0.0)
	7인 이상	6(75.0)	2(25.0)	0(0.0)
가구 유형	노인세대	2,219(91.8)	180(7.5)	17(0.7)
	모부자세대	258(89.3)	26(9.0)	5(1.7)
	장애인세대	652(83.9)	109(14.0)	16(2.1)
	조손세대	28(96.6)	1(3.4)	0(0.0)
	일반세대	841(90.9)	74(8.0)	10(1.1)
	기타	328(86.5)	47(12.4)	4(1.1)
장애인 가구원수	없음	2,970(90.3)	292(8.9)	28(0.9)
	1명	1,234(89.3)	128(9.3)	20(1.4)
	2명 이상	122(85.3)	17(11.9)	4(2.8)
근로능력 가구원수	없음	3,213(89.5)	341(9.5)	34(0.9)
	1명	892(91.8)	68(7.0)	12(1.2)
	2명 이상	221(86.7)	28(11.0)	6(2.4)
거주 지역	농어촌	947(88.9)	102(9.6)	16(1.5)
	대도시	2,242(90.7)	209(8.5)	20(0.8)
	중소도시	1,137(88.9)	126(9.9)	16(1.3)
계		4,326(89.8)	437(9.1)	52(1.1)

<표 VI-2-13>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총액 비중과 평균을 살펴보았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장애없음'이나 '1명'이 있을 경우에 평균 소득총액이 약 28~29만원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평균소득총액은 3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피부양가구는 평균 50만원 미만 에 속하는데 이 소득구간에서 부양의무자가구 가운데 장애인이 1명이 있는 가구는 9.1%였고, 2명 이상이 있는 가구는 0.9%로 나타났다.

<표 VI-2-13>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소득총액 비중과 평균

(단위: 명, %, 원)

구분	없음	1명	2명 이상
50만원미만	3,604(89.9)	366(9.1)	37(0.9)
50~100만원미만	614(91.2)	48(7.1)	11(1.6)
100~200만원미만	105(79.5)	23(17.4)	4(3.0)
200~300만원미만	3(100.0)	0(0.0)	0(0.0)
300만원이상	0(0.0)	0(0.0)	0(0.0)
평균	282,138	287,318	380,974

<표 VI-2-14>는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에 따른 재산총액 비중과 평균을 제시한 결과이다. 장애인 가구원이 없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피부양가구의 재산소득 평균 총액은 13,837,508원으로 소득총액과 달리 재산총액은 다소 높았다. 장애인가구원이 1명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 13,384,694원이지만 2명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 14,957,168원으로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와 장애인 가구원이 없는 경우 간에 평균 재산총액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산이 없는 피부양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애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10.8%였다. '100만원 미만'의 재산구간에서는 10.4%, '100~300만원' 미만의 재산구간에서는 10.1%로 나타났다.

〈표 VI-2-14〉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재산총액 비중과 평균

(단위: 명, %, 원)

구분	없음	1명	2명 이상
없음	554(89.2)	59(9.5)	8(1.3)
100만원미만	600(89.6)	63(9.4)	7(1.0)
100~300만원미만	533(89.0)	60(10.0)	6(1.0)
300~500만원미만	351(90.9)	35(9.1)	0(0.0)
500~100만원미만	539(88.8)	61(10.0)	7(1.2)
1000만원이상	1749(90.5)	159(8.2)	24(1.2)
평균	13,837,508	13,384,694	14,957,168

〈표 VI-2-15〉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비중과 평균

(단위: 명, %, 원)

구분	없음	1명	2명 이상
10만원 미만	1,407(87.4)	186(11.6)	16(1.0)
10~20만원 미만	804(90.3)	78(8.8)	8(0.9)
20~40만원 미만	1,052(92.8)	73(6.4)	9(0.8)
40~60만원 미만	581(92.8)	42(6.7)	3(0.5)
60~100만원 미만	370(88.9)	34(8.2)	12(2.9)
100~200만원 미만	107(79.9)	23(17.2)	4(3.0)
200만원 이상	4(100.0)	0(0.0)	0(0.0)
평균	278,935	275,331	371,967

〈표 VI-2-15〉에서는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비중과 평균을 제시한 결과이다. 부양의무자 가구 내 장애인 가구원의 존재는 피부양가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요소이다. 소득인정액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가구원이 없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278,935원이었다. 부양의무자가구 중에서 장애인 가구원이 1명일 때와 2명 이상일 경우를 비교해 보면,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정도 늘어났다.

〈표 VI-2-16〉은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평가액 비중과 평균을 제시한 결과이다. 소득평가액 수준을 보면, 앞선 소득인정액의 평균수

준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장애인 가구원이 없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 소득평가액은 270,350원이었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장애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피부양가구의 최하위 구간의 소득평가액은 12.3%였고, 피부양가구의 최상위 소득평가액 구간에서는 장애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20.5%였다.

〈표 VI-2-16〉 부양의무자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소득평가액 비중과 평균

(단위: 명, %, 원)

구분	없음	1명	2명 이상
10만원 미만	1,453(87.6)	188(11.3)	17(1.0)
10~20만원 미만	819(90.1)	82(9.0)	8(0.9)
20~40만원 미만	1,037(92.8)	72(6.4)	8(0.7)
40~60만원 미만	560(92.7)	40(6.6)	4(0.7)
60~100만원 미만	356(89.0)	33(8.3)	11(2.8)
100~200만원 미만	97(79.5)	21(17.2)	4(3.3)
200만원 이상	3(100.0)	0(0.0)	0(0.0)
평균	270,350	265,613	358,547

### 3.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비교

〈표 VI-2-17〉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피부양가구의 특성을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피부양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30.2%, 2인인 경우 24.9%, 3인인 경우 44.9%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 피부양가구주를 보면, 가구주가 여성인 피부양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 26.2%, 2인일 경우 21.5%, 그리고 3인 이상일 경우는 52.3%였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따라 피부양자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았

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1인가구는 피부양가구에서 60대 중 21.7%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많은 50대는 56.2%를 차지하였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2인 가구에서는 60대인 피부양가구가 15.8%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3인 가구 이상인 경우도 60대 이상의 연령층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아 62.5%였다.

피부양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1인가구는 피부양자 가구원이 3인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2인가구는 피부양가구에서 4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3인 이상 가구는 피부양가구에서는 2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피부양자 가구의 가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수가 단독가구(1인가구) 유형에서 피부양가구는 일반세대보다 노인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노인세대 중에서 17.9%를 차지하였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수가 2인 가구인 경우 피부양가구는 노인세대 중 16.5%, 장애인세대 중 43.1%, 일반세대 29.3%로 나타나 부양의무자 가구원수가 2인 가구인 경우 피부양자 가구의 각 세대 유형 내에서 장애인세대 구성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수가 3인가구 이상은 피부양가구가 노인세대, 일반세대, 장애인 세대 순서로 구성되었다. 특히 노인세대는 65.6%로 나타나 부양의무자 가구원수가 3인인 가구는 피부양자 가구의 세대유형 내에서는 대다수가 노인세대로 구성되었다. 피부양가구에서 장애있는 가구원수별로 구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의 책임을 진 피부양가구 가운데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수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유형에서 피부양가구는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장애인이 1명인 경우를 살펴보면, 피부양가구에서 가구원수가 1인가구에서 28.9%, 2인가구에서 25.4%, 3인가구이상에서 45.7%를 구성하였다.

피부양가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능력 가구원이 없는 피부양가구에서 3인 이상의 가구규모인 부양의무자 가구는 50.6%였다. 또한, 근로능력 가구원 없는 피부양가구는 26.3%였다.

〈표 VI-2-17〉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별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가구
성별	남성	790(34.8)	650(28.6)	829(36.5)
	여성	666(26.2)	547(21.5)	1332(52.3)
연령	20대	83(46.6)	45(25.3)	50(28.1)
	30대	117(32.1)	199(54.5)	49(13.4)
	40대	248(40.1)	306(49.5)	64(10.4)
	50대	351(56.2)	167(26.7)	107(17.1)
	60대 이상	657(21.7)	480(15.8)	1,892(62.5)
가구원수	1인	1,020(29.4)	846(24.4)	1,604(46.2)
	2인	268(30.2)	154(17.4)	464(52.4)
	3인	100(40.2)	98(39.4)	51(20.5)
	4인	47(33.6)	68(48.6)	25(17.9)
	5인	16(32.7)	20(40.8)	13(26.5)
	6인	2(15.4)	9(69.2)	2(15.4)
	7인 이상	3(37.5)	2(25.0)	3(37.5)
가구유형	노인세대	432(17.9)	399(16.5)	1,585(65.6)
	모부자세대	161(55.7)	93(32.2)	35(12.1)
	장애인세대	255(32.8)	335(43.1)	187(24.1)
	조손세대	12(41.4)	4(13.8)	13(44.8)
	일반세대	424(45.8)	255(27.6)	246(26.6)
	기타	172(45.4)	111(29.3)	96(25.3)
장애 있는 가구원	없음	1,101(30.7)	884(24.7)	1,600(44.6)
	1명	355(28.9)	313(25.4)	562(45.7)
	2명이상	0(0.0)	0(0.0)	0(0.0)
근로능력있는 가구원	없음	943(26.3)	828(23.1)	1,817(50.6)
	1명	429(44.1)	275(28.3)	268(27.6)
	2명이상	84(32.9)	94(36.9)	77(30.2)
계		1,456(30.2)	1,197(24.9)	2,162(44.9)

〈표 VI-2-18〉에서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총액 비중과 평균을 제시하였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으면 필요소득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양가구의 부양이 어려울 수 있다. 분석결과, 가구소득이 낮은

소득계층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피부양가구의 소득총액이 가장 밀집된 최하위 소득구간에서 '50만원 미만' 중에서 피부양가구가 '50만원 미만'인 가구 중에서 46.3%는 부양의무자 가구규모가 3인 이상이었다. '50-100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는, 피부양가구의 경우 동일한 소득구간 내에서 40.6%가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는 3인 이상이었다.

피부양가구의 평균소득은 부양의무자 가구규모가 1인, 2인, 3인 가구 이상 모두 평균 28만원 정도였다. 즉,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 피부양가구의 총가구소득액이 변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표 VI-2-18〉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득총액 비중과 평균

(단위: 명,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이상
50만원미만	1,170(29.2)	982(24.5)	1,855(46.3)
50-100만원미만	238(35.4)	162(24.1)	273(40.6)
100-200만원미만	47(35.6)	52(39.4)	33(25.0)
200-300만원미만	1(33.3)	1(33.3)	1(33.3)
300만원이상	0(0.0)	0(0.0)	0(0.0)
평균	280,527	283,871	285,688

〈표 VI-2-19〉에서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재산총액 비중과 평균을 제시하였다. 부양의무자가 1인가구인 피부양가구 중 36.4%는 재산총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의 재산구간에서 피부양가구는 40%가 부양의무자 가구규모가 3인가구 이상이었다. 한편, '1000만원 이상'의 재산구간에서 피부양가구의 51.8%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3인 이상인 가구였다. 그리고 '500-1000만원' 미만 가구에서 피부양가구는 43.7%가 3인 이상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였다.

〈표 VI-2-19〉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재산총액 비중과 평균

(단위: 명,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이상
없음	226(36.4)	181(29.1)	214(34.5)
100만원미만	228(34.0)	174(26.0)	268(40.0)
100~300만원미만	191(31.9)	161(26.9)	247(41.2)
300~500만원미만	122(31.6)	96(24.9)	168(43.5)
500~1000만원미만	191(31.5)	151(24.9)	265(43.7)
1000만원이상	498(25.8)	434(22.5)	1000(51.8)
평균	11,947,402	13,114,164	15,446,286

〈표 VI-2-20〉은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비중과 평균을 제시한 결과이다. 소득인정액 평균은 1인가구에서 272,407원, 2인가구에서 275,390원, 그리고 3인이상 가구에서 286,804원으로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인정액 구간에서 피부양가구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가구의 35.9%는 1인가구, 34.8%는 3인가구 이상에 속하였다.

〈표 VI-2-20〉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비중과 평균

(단위: 명,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이상
10만원미만	577(35.9)	472(29.3)	560(34.8)
10~20만원미만	233(26.2)	213(23.9)	444(49.9)
20~40만원미만	270(23.8)	233(20.5)	631(55.6)
40~60만원미만	175(28.0)	113(18.1)	338(54.0)
60~100만원미만	154(37.0)	111(26.7)	151(36.3)
100~200만원미만	45(33.6)	54(40.3)	35(26.1)
200만원이상	1(25.0)	1(25.0)	2(50.0)
평균	272,407	275,390	286,804

〈표 VI-2-21〉은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평가액 비중과 평균을 제시한 결과이다. 소득평가액 평균 역시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졌는

데,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소득평가액은 3인가구 이상에서 평균 27만원으로 나타났다. 피부양가구는 1인가구, 2인가구의 경우 '10만원 미만'에 가장 인원이 많았는데, 동일한 소득 구간 내에서 각각 35.5%, 29.5%를 차지하였다. 또한 '20~40만원' 내에서 피부양가구의 56%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가 3인 이상에 속하였다. 부양의무자의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이 그 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낮은 소득구간에 있는 피부양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부담이 가족원수가 3인 이상일 경우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2-21〉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득평가액 비중과 평균

(단위: 명,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이상
10만원미만	588(35.5)	489(29.5)	581(35.0)
10~20만원미만	237(26.1)	217(23.9)	455(50.1)
20~40만원미만	268(24.0)	224(20.1)	625(56.0)
40~60만원미만	168(27.8)	108(17.9)	328(54.3)
60~100만원미만	154(38.5)	108(27.0)	138(34.5)
100~200만원미만	39(32.0)	50(41.0)	33(27.0)
200만원이상	1(33.3)	1(33.3)	1(33.3)
평균	264,843	264,793	278,300

### 제3절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른 피부양자 가구 특성

#### 1.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 비교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VI-3-1>에서는 부양의무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별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이상 가구에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진 피부양가구는 70.70%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미만인 소득구간 중에서는 '0~25% 미만'에 속한 피부양가구의 경우는 전체 중에서 14.23%였다. 앞서 살펴본 수급가구 분포와 비교해 보면 피부양가구 역시 일부가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피부양가구를 대상으로, 피부양가구의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최저생계비 기준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따라 어떠한 분포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피부양가구의 가구주 성별로 볼 때,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에 속한 가구는 남성의 67.61%, 여성의 73.4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낮은 경우 최하위 소득구간인 '0~25% 미만'에 속한 피부양가구가 남성의 16.88%, 여성의 11.86%를 차지하였다.

피부양가구의 가구주 연령층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40대 가운데 '100% 이상' 38.83%, '0~25% 미만' 29.45% 순서로 나타났다. 50대 연령층 중에서는 '100% 이상'에서 72.00%, '0~25% 미만' 17.76% 순으로 비중을 보였다. 60대 연령층 내에서는 '100% 이상' 78.71%, '0~25% 미만' 10.27%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수급가구와 마찬가지로, 피부양가구도 1~2인 가구로 구성되었다.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에 속한 가구는 1인 가구의 71.55%, 2인 가구의 77.12%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0~25% 미만'에 속한 피부양가구는 1인 가구의 13.53%, 2인 가구의

13.16%였다.

가구유형별 특성도 노인세대, 일반세대, 장애인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수급가구와 유사하다. ‘노인세대’ 내에서 피부양가구의 76.95%는 ‘100% 이상’에 속한 가구였고, 노인세대의 10.31%는 ‘0~25% 미만’에 속하였다. 장애인가구는 동일한 가구유형 내에서 피부양가구의 51.09%는 ‘100% 이상’에 속한 가구였고, 23.68%는 ‘0~25% 미만’에 속하였다.

〈표 VI-3-1〉 부양의무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별 신청탈락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0-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100% 미만	100% 이상
성별	남성	383(16.88)	187( 8.24)	101( 4.45)	64(2.82)	1,534(67.61)
	여성	302(11.86)	144( 5.66)	125( 4.91)	105(4.12)	1,870(73.45)
연령	20대 미만	21(11.80)	9(5.06)	7(3.93)	4(2.25)	137(76.97)
	30대	60(16.44)	63(17.26)	23(6.30)	26(7.12)	193(52.88)
	40대	182(29.45)	126(20.39)	53(8.58)	17(2.75)	240(38.83)
	50대	111(17.76)	41(6.56)	10(1.60)	13(2.08)	450(72.00)
	60대 이상	311(10.27)	92(3.04)	133(4.39)	109(3.60)	2,384(78.71)
가구 원수	1인	487(13.53)	234(6.50)	170(4.72)	133(3.70)	2,575(71.55)
	2인	107(13.16)	28(3.44)	29(3.57)	22(2.71)	627(77.12)
	3인	46(21.20)	30(13.82)	13(5.99)	4(1.84)	124(57.14)
	4인	32(26.02)	28(22.76)	12(9.76)	4(3.25)	47(38.21)
	5인	11(25.58)	9(20.93)	2(4.65)	3(6.98)	18(41.86)
	6인	2(16.67)	1( 8.33)	0(0.00)	2(16.67)	7(58.33)
	7인 이상	0(0.00)	1(12.50)	0(0.00)	1(12.50)	6(75.00)
가구 유형	노인세대	249(10.31)	81(3.35)	121(5.01)	106(4.39)	1,859(76.95)
	모부자세대	57(19.72)	29(10.03)	13(4.50)	8(2.77)	182 (62.98)
	장애인세대	184(23.68)	123(15.83)	48(6.18)	25 (3.22)	397 (51.09)
	조손세대	4(13.79)	1(3.45)	0(0.00)	0(0.00)	24 (82.76)
	일반세대	124(13.41)	62(6.70)	31(3.35)	23(2.49)	685 (74.05)
	기타	67(17.68)	35(9.23)	13(3.43)	7(1.85)	257 (67.81)
장애 있는 가구원	없음	440(13.37)	206(6.26)	152(4.62)	118(3.59)	2,374(72.16)
	1명	212(15.34)	106(7.67)	65(4.70)	48(3.47)	951(68.81)
	2명이상	33(23.08)	19(13.29)	9(6.29)	3(2.10)	79(55.24)
근로능력있는 가구원	없음	508(14.16)	227(6.33)	168(4.68)	137(3.82)	2,548(71.01)
	1명	129(13.27)	74(7.61)	46(4.73)	23(2.37)	700(72.02)
	2명이상	48(18.82)	30(11.76)	12(4.71)	9(3.53)	156(61.18)
계		685(14.23)	331(6.87)	226(4.69)	169(3.51)	3,404(70.70)

피부양가구 중에서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수는 대부분 1명이 있는 경우였다. 장애인 가구원수 1명이 있는 가구 중에서 '100% 이상' 68.81%, '0~25% 미만' 15.34% 순서로 나타났다.

피부양가구 중에서 근로능력에 따른 분석결과도 다음과 같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가구 중에서 71.01%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00% 이상'인 경우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1명'이 있는 피부양가구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00% 이상'인 경우가 72.02%, '0~25% 미만'인 경우가 13.27%였다.

#### 나. 소득수준 및 자산수준 특성

〈표 VI-3-2〉는 부양의무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재산총액 비중과 평균을 제시한 결과이다.

피부양가구의 평균 재산총액을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재산구간별로 보면, 피부양가구는 최하위 '0~25%'에서 평균 13,259,629였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이 최상위 '100% 이상'인 경우 피부양가구는 가구는 평균 13,817,817원으로 나타났다.

피부양가구의 재산총액이 최상위 '1000만원 이상'내에서 피부양가구의 71.38%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00% 이상인 가구에 속하였다. 재산총액이 없는 피부양가구의 68.76%는 부양의무자 소득총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00% 이상에 속하였고, 18.36%는 0~25% 미만에 속하였다. 다수의 피부양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이상에 있더라도 생계나 주거에 필요한 재산마저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3-3〉은 부양의무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을 살펴 본 결과이다.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인 경우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평균 278,110원이었고, 소득평가액은 평균 270,522원으로

나타나 금액수준이 거의 비슷하였다.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모두 최하위 '10만원 미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하였는데, 동일한 소득구간 내에서 가구의 65.32%는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7.71%는 최저생계비의 '0~25% 미만'에 속하였다.

〈표 VI-3-2〉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별 재산총액 비중과 평균

(단위: 명, %, 원)

구분	0-25%미만	25-50%미만	50-75%미만	75-100%미만	100%이상
없음	114(18.36)	33(5.31)	27(4.35)	20(3.22)	427(68.76)
100만원 미만	108(16.12)	63(9.40)	28(4.18)	21(3.13)	450(67.16)
100-300만원 미만	76(12.69)	41(6.84)	26(4.34)	17(2.84)	439(73.29)
300-500만원 미만	53(13.73)	31(8.03)	19(4.92)	17(4.4)	266(68.91)
500-100만원 미만	72(11.86)	45(7.41)	22(3.62)	25(4.12)	443(72.98)
1000만원 이상	262(13.56)	118(6.11)	104(5.38)	69(3.57)	1,379(71.38)
평균	13,259,629	13,251,063	16,120,613	13,845,496	13,817,817

〈표 VI-3-3〉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별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단위: 명, %, 원)

구분	0-25%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100% 미만	100% 이상	
소득 인정 액	10만원미만	285(17.71)	130(8.08)	82(5.10)	61(3.79)	1,051(65.32)
	10~20만원미만	111(12.47)	54(6.07)	49(5.51)	28(3.15)	648(72.81)
	20~40만원미만	121(10.67)	54(4.76)	50(4.41)	37(3.26)	872(76.90)
	40~60만원미만	69(11.02)	35(5.59)	22(3.51)	26(4.15)	474(75.72)
	60~100만원미만	71(17.07)	35(8.41)	15(3.61)	12(2.88)	283(68.03)
	100~200만원미만	27(19.85)	23(16.91)	8(5.88)	5(3.68)	73(53.68)
	200만원 이상	1(25.00)	0(0.00)	0(0.00)	0(0.00)	3(75.00)
	평균	277,832	308,034	263,294	283,265	278,110
소득 평가 액	10만원미만	299(18.03)	134(8.08)	86(5.19)	64(3.86)	1,075(64.84)
	10~20만원미만	110(12.10)	54(5.94)	51(5.61)	29(3.19)	665(73.16)
	20~40만원미만	114(10.21)	53(4.74)	47(4.21)	38(3.40)	865(77.44)
	40~60만원미만	67(11.09)	34(5.63)	20(3.31)	23(3.81)	460(76.16)
	60~100만원미만	69(17.25)	34(8.50)	15(3.75)	10(2.50)	272(68.00)
	100~200만원미만	25(20.16)	22(17.74)	7(5.65)	5(4.03)	65(52.42)
	200만원이상	1(33.33)	0(0.00)	0(0.00)	0(0.00)	2(66.67)
	평균	265,959	299,738	251,022	267,879	270,522

## 2.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비교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은 <표 VI-34>에서 피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을 제시하였다.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최하분위에 속한 피부양가구가 20%, 4, 5분위에 각각 20%, 3분위에 19.83%, 2분위에 20.17%로 나타났다.

피부양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별, 가구원수별, 가구유형별, 장애있는 가구원수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수별,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주 성별을 보면, 남성 중 24.46%, 여성 중 16.03%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수준이 1분위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각 분위별로 남성과 여성 간에 상대적 비중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피부양가구의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여건이 낮은 소득분위에서 비중이 다소 높았지만 높은 소득분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특성은 피부양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에 속하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1, 2분위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보였다.

가구원수는 1인~2인 가구에 인원이 많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피부양가구의 가구원수가 1인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소득은 3분위에 속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피부양가구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5분위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노인세대는 세대 내에서 29.64%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5분위였고, 22.43%는 4분위로 나타났다. 모부자세대는 세대 내에서 29.76%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1분위에 있었다. 장애인세대는 38.35%가 부양의무자 가구가 1분위에 속하였고 23.17%는 2분위에 있었다. 일반세대는 19.68%가 부양의무자 가구가 1분위였고, 26.70%가 3분위였다.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피부양가구가 대부분 1명인데, 이러한 가구 내에

서 21.71%는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1분위에 속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24.69%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3분위에 속하였다.

〈표 VI-3-4〉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별 신청탈락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성별	남성	555(24.46)	451(19.88)	42 (18.73)	422(18.60)	416(18.33)
	여성	408(16.03)	520(20.42)	530(20.82)	541(21.25)	547(21.48)
연령	20대	2(15.17)	58(32.58)	41(23.03)	35(19.66)	17(9.55)
	30대	119(32.60)	141(38.63)	50(13.70)	44(12.05)	11(3.01)
	40대	309(50.00)	149(24.11)	78(12.62)	57(9.22)	25(4.05)
	50대	150(24.00)	110(17.60)	198(31.68)	115(18.40)	52(8.32)
	60대 이상	358(11.82)	513(16.94)	588(19.41)	712(23.51)	858(28.33)
가구원수	1인	675(18.76)	745(20.70)	755(20.98)	723(20.09)	701(19.48)
	2인	130(15.99)	119(14.64)	156(19.19)	189(23.25)	219(26.94)
	3인	72(33.18)	46(21.20)	31(14.29)	39(17.97)	29(13.36)
	4인	62(50.41)	36(29.27)	8(6.50)	10(8.13)	7(5.69)
	5인	20(46.51)	14(32.56)	3(6.98)	1(2.33)	5(11.63)
	6인	3(25.00)	8(66.67)	1(8.33)	0(0.00)	0(0.00)
	7인 이상	1(12.50)	3(37.50)	1(12.50)	1(12.50)	2(25.00)
가구 유형	노인세대	294(12.17)	428(17.72)	436(18.05)	542(22.43)	716(29.64)
	모부자세대	86(29.76)	62(21.45)	63(21.80)	56(19.38)	22(7.61)
	장애인세대	298(38.35)	180(23.17)	106(13.64)	106(13.64)	87(11.20)
	조손세대	5(17.24)	5(17.24)	6(20.69)	3(10.34)	10(34.48)
	일반세대	182(19.68)	213(23.03)	247(26.70)	194(20.97)	89(9.62)
	기타	98(25.86)	83(21.90)	97(25.59)	62(16.36)	39(10.29)
장애 있는 가구원	없음	609(18.51)	658(20.00)	682(20.73)	688(20.91)	653(19.85)
	1명	300(21.71)	288(20.84)	256(18.52)	248(17.95)	290(20.98)
	2명이상	54(37.76)	25(17.48)	17(11.89)	27(18.88)	20(13.99)
근로능력있는 가구원	없음	690(19.23)	706(19.68)	668(18.62)	726(20.23)	798(22.24)
	1명	197(20.27)	210(21.60)	240(24.69)	197(20.27)	128(13.17)
	2명이상	76(29.80)	55(21.57)	47(18.43)	40(15.69)	37(14.51)

## 나. 소득수준 및 자산수준 특성

〈표 VI-3-5〉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소득총액 비중 및 평균을 제시하였다. 대다수 피부양가구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지위에 있지만 부양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 역시 하위소득에 집중되어 있다. 부양의무자 대부분은 소득이 부족하여 수급가구 및 신청가구를 부양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구간에서 신청탈락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에서 20.41%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1분위 내에서 신청탈락가구는 평균 301,562원이었으며, 또한 '50~100만원 미만'의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가 1분위인 경우 22.44%, 2분위인 경우 17.83%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소득구간에 있는 신청탈락가구는 5분위에서 19.91%의 비중을 보였다.

〈표 VI-3-5〉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별 피부양가구의 소득총액 비중 및 평균

(단위: 명, %, 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0만원미만	760(18.97)	812(20.26)	819(20.44)	798(19.92)	818(20.41)
50~100만원미만	151(22.44)	120(17.83)	117(17.38)	151(22.44)	134(19.91)
100~200만원미만	51(38.64)	38(28.79)	18(13.64)	14(10.61)	11(8.33)
200~300만원미만	1(33.33)	1(33.33)	1(33.33)	0(0.00)	0(0.00)
300만원이상	0(0.00)	0(0.00)	0(0.00)	0(0.00)	0(0.00)
평균	301,562	280,603	254,022	290,527	291,444

〈표 VI-3-6〉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에 따른 피부양가구의 재산총액 비중 및 평균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피부양가구의 평균 재산총액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피부양가구는 1분위에서는 평균 12,939,237원, 5분위에서는 평균 15,566,252원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평균 2,627,015원이었다.

다음으로 피부양가구의 재산총액을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우선,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도 하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이 높았는데, 동일한 재산구간 내에서 피부양가구는 1분위에 18.48%, 5분위에 23.65%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총액이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구간에 있는 인원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3-6〉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별 피부양가구의 재산총액 비중 및 평균

(단위: 명, %, 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없음	145(23.35)	134(21.58)	132(21.26)	118(19.00)	92(14.81)
100만원 미만	164(24.48)	134(20.00)	138(20.60)	116(17.31)	118(17.61)
100~300만원미만	108(18.03)	129(21.54)	120(20.03)	128(21.37)	114(19.03)
300~500만원미만	82(21.24)	81(20.98)	73(18.91)	78(20.21)	72(18.65)
500~1000만원미만	107(17.63)	118(19.44)	141(23.23)	131(21.58)	110(18.12)
1000만원이상	357(18.48)	375(19.41)	351(18.17)	392(20.29)	457(23.65)
평균	12,939,237	14,040,110	12,025,929	14,454,255	15,566,252

〈표 VI-3-7〉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분위별로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수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40만원 미만'에 속한 비중이 높았다. 평균적으로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5분위인 경우에 소득인정액은 평균 291,940원, 소득평가액은 285,369원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이 크지 않아서 피부양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양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 2분위에서 피부양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0만원 미만'에서 1분위 25.42%, 2분위 21.44%였고, '10~20만원 미만'에서 1분위 17.53%, 2분위 20.79%로 나타났다. 한편, '20~40만원' 구간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은 4분위, 5분위에서 각각 22.22%, 26.4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평가액을 보면, '10만원 미만'에서 1분위 25.69%, 2분위 21.71%로 나타나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여건에 있을수록 가구의 소득평가액 수준도 낮음을 알 수 있었다. '10~20만원' 미만에서는 1분위에, 21.01%가 2분위에 분포하였다.

<표 VI-3-7> 부양의무자의 소득분위에 따른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단위: 명,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인정 액	10만원미만	409(25.42)	345(21.44)	350(21.75)	274(17.03)	231(14.36)
	10~20만원미만	156(17.53)	185(20.79)	166(18.65)	177(19.89)	206(23.15)
	20~40만원미만	157(13.84)	199(17.55)	226(19.93)	252(22.22)	300(26.46)
	40~60만원미만	88(14.06)	129(20.61)	130(20.77)	154(24.60)	125(19.97)
	60~100만원미만	103(24.76)	71(17.07)	63(15.14)	90(21.63)	89(21.39)
	100~200만원미만	49(36.03)	41(30.15)	19(13.97)	16(11.76)	11(8.09)
	200만원이상	1(25.00)	1(25.00)	1(25.00)	0(0.00)	1(25.00)
	평균	285,160	282,940	251,239	286,522	291,940
소득 평가 액	10만원미만	426(25.69)	360(21.71)	356(21.47)	278(16.77)	238(14.35)
	10~20만원미만	155(17.05)	191(21.01)	168(18.48)	184(20.24)	211(23.21)
	20~40만원미만	149(13.34)	194(17.37)	224(20.05)	252(22.56)	298(26.68)
	40~60만원미만	85(14.07)	122(20.20)	127(21.03)	150(24.83)	120(19.87)
	60~100만원미만	101(25.25)	67(16.75)	62(15.50)	86(21.50)	84(21.00)
	100~200만원미만	46(37.10)	36(29.03)	17(13.71)	13(10.48)	12(9.68)
	200만원이상	1(33.33)	1(33.33)	1(33.33)	0(0.00)	0(0.00)
	평균	274,436	269,264	246,528	278,579	285,369

##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피부양가구와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 주된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양의무자 가구를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수 있는 노인가구가 노인가구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부양관계 구조가 있음이 드러났다. 부양의무자 가구형태가 노인가구일수록 피부양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았는데, 노인가구의 신청탈락가구는 평균 27만 8천원 정도였다. 재산규모를 살펴 본 결과, 신청탈락가구는 대체로 재산규모가 낮은 구간에서 노인가구의 비중이 낮았다. 또한 소득인정액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에서 신청탈락가구는 평균 27만 6천원으로, 결코 높지 않은 액수였다.

둘째,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으면 필요소득도 그만큼 높아져 피부양가구의 부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가정과 달리, 부양의무자의 가구규모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평균 재산총액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으면 조금씩 증가하였다.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은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인원이 늘어나면 신청탈락가구는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소득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양의 책임을 가진 부양의무자들이 실제적 부양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이 없는 신청탈락가구의 68.76%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상인 가구에 속하였다. 한편 재산이 없는 신청탈락가구의 18.36%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0~25% 구간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극빈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을 분석한 결과, 신청탈락가구는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최하위 구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가구의 65.32%만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는 부양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 빈곤계층인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소득분위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을 구분한 분석결과 역시 부양의무자 대부분이 소득여건이 좋지 않아 신청탈락가구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소득총액이 가장 많이 분포한 '50만원 미만' 구간에서, 신청탈락가구의 18.97%는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소득 1분위에 속한 빈곤층이었다. 재산이 없는 신청탈락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도 하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피부양가구의 낮은 재산액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으로 분석한 결과도 부양의무자 가구의 분위별 경제적 수준에 액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여건에 있을수록 피부양가구의 소득수준도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제 7 장

## 부양의무자 기준 도해에 따른 집단별 특성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 도해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도해 집단별 소득·재산 특성

제4절 소 결



# 제7장 부양의무자 기준 도해에 따른 집단별 특성

## 제1절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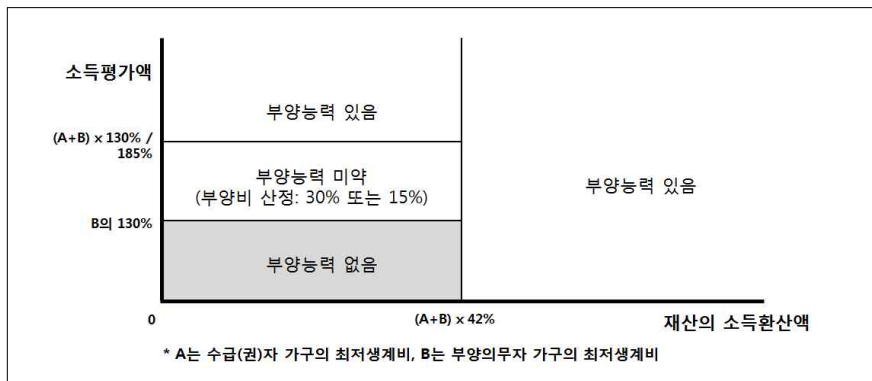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분석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변동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수급자 수의 증가정도나 소요예산 등을 도출하는 연구보고서가 대부분이다(여유진 외, 2009; 손병돈, 2013). 즉, 가용예산을 중심으로 정책의 예상되는 효과를 검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가용예산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력을 중심으로 부양여력이 얼마나 되며, 현 제도 하에서 타당한 정도인지에 관한 실증적 접근을 할 것이다.

분석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도해에 따라 해당되는 소득 및 재산의 특성에 포함되는 부양의무자 가구를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 장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규정이 제시하는 소득 및 재산의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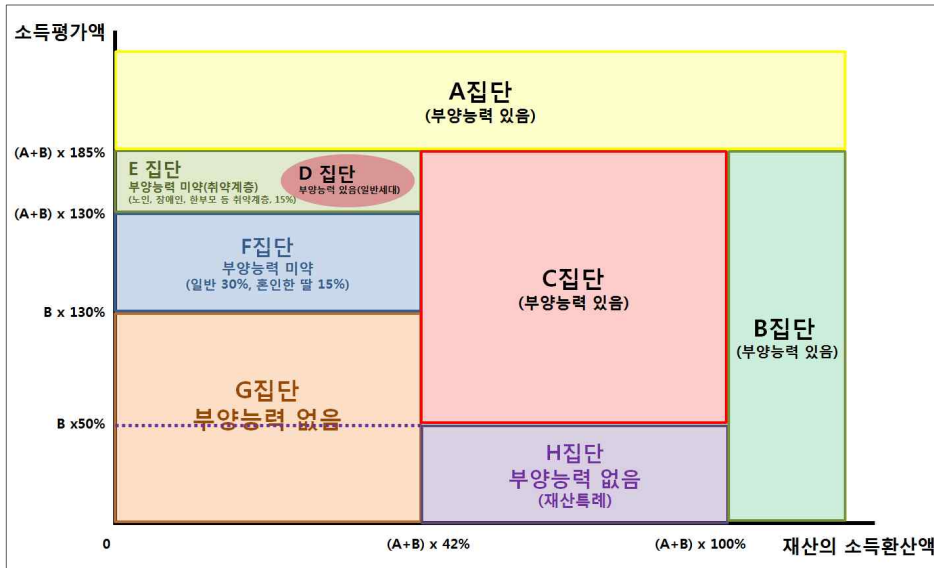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012)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 그리고 사업 지침에서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 실제로 부양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급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 부양능력이라는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도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VII-2-1] 부양능력 기본 도해

\*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는 기본 도해를 토대로 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인적특성 및 재산 기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를 집단별로 세분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VII-2-2] 부양능력에 따른 집단별 구분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집단의 구분은 '부양능력이 있는 집단'과 '부양능력이 미약한 집단', '부양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부양능력이 있는 집단'은 [그림 VII-2-2]에서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이 해당된다. 각 집단에 해당되는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A집단: 재산과 상관없이 소득평가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피부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의 185%, 즉 소득평가액 최고 기준선 이상
- ② B집단: 소득평가액이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의 185%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이상
- ③ C집단: 소득평가액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50%이상이며, 양 가구의 합 의 185%미 만인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의 42%이상이며, 100% 미만
- ④ D집단: 소득평가액이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의 130%이상 ~ 185% 미만이면서 재산의 소 득환산액이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의 42% 미만인 가구 중에서 수급가구가 취약계층(노 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이 아닌 가구

다음으로 ‘부양능력이 미약한 가구’는 부양여력에 있어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그림 VII-1-2]에서는 E집단과 F집단이 이에 속한다. 각 집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E집단: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피부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의 130%이상, 180%미만인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의 42% 미만인 가구 중에서 수급가구가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
- ② F집단: 소득평가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이상이고,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의 130% 미만인 동시에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의 42%미만인 가구

마지막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집단’은 G집단과 H집단이 해당된다. 자세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G집단: 소득평가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피부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의 42% 미만인 가구
- ② H집단: 소득평가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의 42%이상이며, 100% 미만인 가구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심사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각 집단을 모두 나열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가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의 집단 E, F, G, H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없다. 즉, 신청탈락가구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만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이 되므로, 집단 A~D에 속하는 사례들이 분석대상이 된다<sup>20)</sup>.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별로 구분한 집단별 빈도수는 <표 VII-1-1>과 같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를 살펴보면 소득기준 최고선을 초과하는

20)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부양능력 미약’과 ‘부양능력 없음’이 각각 1.67%와 4.15%가 발견되었다. 원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소득과 재산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특례나 출가한 딸 등에 해당되는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들이었다. 이하의 분석내용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고 소득과 재산만의 기준으로 집단 A~D에 속하는 대상에 한정해서 분석을 한다. 연구자가 활용한 데이터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집단과 재산기준 최고선을 초과하는 B집단의 비중이 각각 44.94%, 4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저 기준선과 최고 기준선 사이에 있는 가구, 즉, C집단과 D집단은 약 10%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I-2-1> 피부양자 수급유무별 부양의무자 가구의 집단별 빈도 수

(단위: 가구, %)

집단구분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빈도수	백분율
부양능력 있음	A집단	2,038	44.94%
	B집단	1,928	42.51%
	C집단	251	5.53%
	D집단	318	7.01%
합계		4,535	100.00%

###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도해 집단별 소득·재산 특성

<표 VII-3-1>에 따르면 각 도해의 정의에 따른 집단별 구분에서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평균 2,78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B집단은 소득평가액 평균이 1,013천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소득평가액은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초과하여, 피부양가구인 해당 수급 신청가구가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 소득보다는 재산만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재산을 처분해서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연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근로소득이나 이전소득이 없어도 재산 수준이 기준선을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부양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많다면 피부양자가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 공제액을 인상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는 방안, 현실적으로 재산과 소득으로 쉽게 전환되는 재산항목들만을 대상으로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표 VII-3-1>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 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천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0%	25%	중위값	75%	90%	최대값
A집단	2,038	4,648	2,731	2,049	2,410	3,092	4,099	5,337	7,224	55,451
B집단	1,928	1,013	1,063	0	0	117	683	1,655	2,604	5,024
C집단	251	1,914	1,041	301	794	1,048	1,796	2,600	3,400	5,639
D집단	318	2,234	660	1,439	1,523	1,700	2,033	2,632	3,134	5,495
계	4,535	2,782	2,623	0	88	911	2,400	3,980	5,591	55,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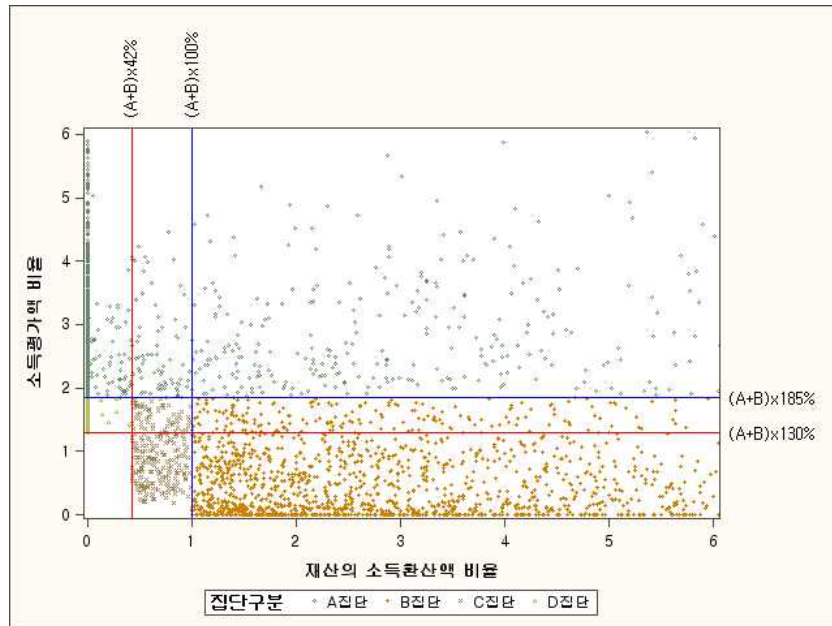
한편, A집단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분포가 중위값까지 '0원'으로 나타났고, D집단의 경우는 하위 90%까지 '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소득평가액 수준이 B집단과 C집단보다 높다. B집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금액 역시 높았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0%	25%	중위값	75%	90%	최대값
A집단	2,038	3,662	12,211	0	0	0	0	1,311	10,848	200,813
B집단	1,928	10,034	13,578	1,128	2,294	3,364	5,920	11,096	20,524	188,630
C집단	251	1,351	447	468	812	1,040	1,290	1,626	1,913	3,304
D집단	226	12	86	0	0	0	0	0	0	834
계	4,535	5,987	12,588	0	0	0	2,138	6,778	15,038	200,813

<표 VII-3-2>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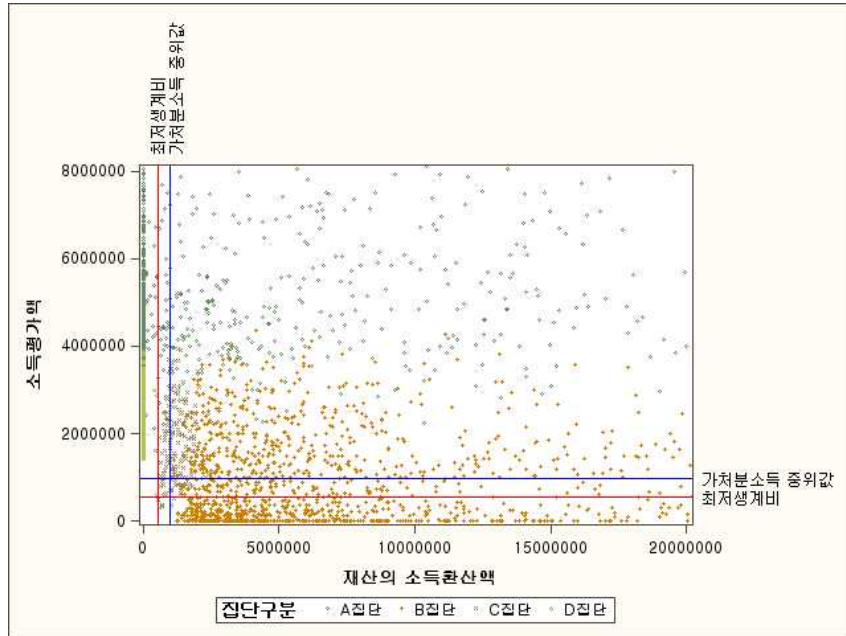
(단위: 천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재산기준으로 인하여 탈락한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평가액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II-3-1]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로 나눈 것으로,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선으로부터 분포하고 있는 산점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집단별로 보면, 소득기준 초과인 A집단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선을 초과하고는 있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준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는 군집이 있으며, 재산기준 초과인 B집단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의 수준이 최저생계비 기준(피부양가구와 부양의무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130%)에 못미치는 가구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동시에 초과하는 가구들보다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피부양자가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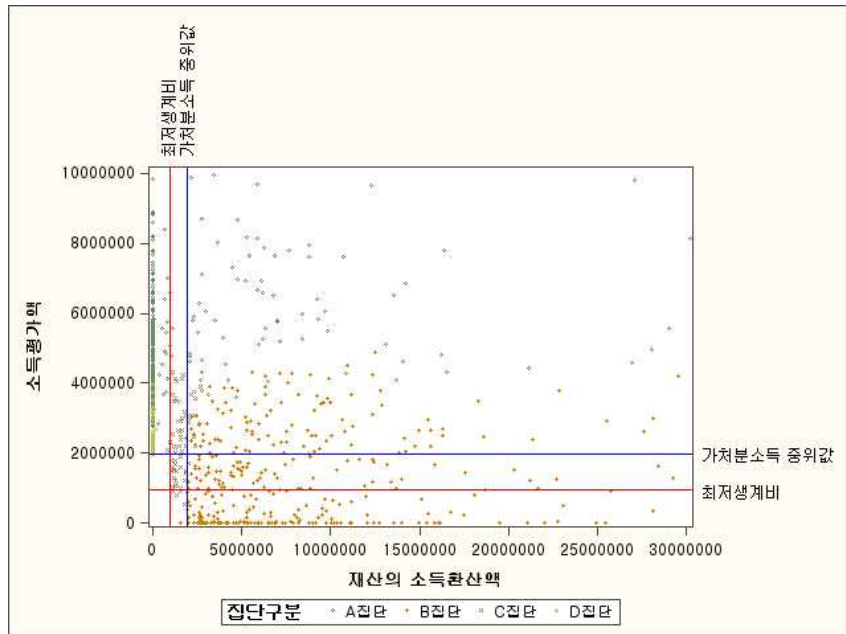


[그림 VII-3-1]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산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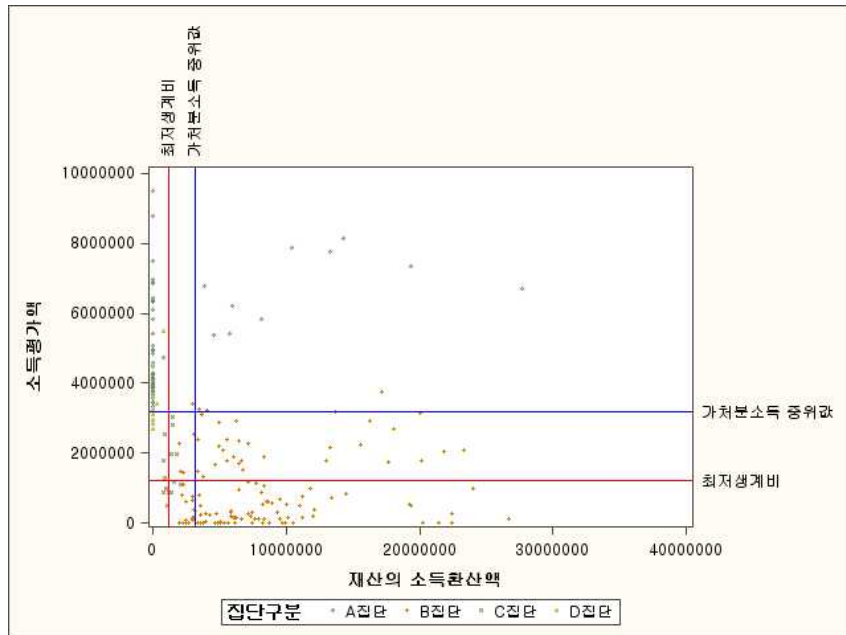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분포를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는 소득평가액 수준만 높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만 높은 경우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집단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산 기준을 초과한 집단에서는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 수준이 '0'원에 가까운 가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부양의무자 기준 중 재산 기준으로 인하여 피부양 가구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이다. 한편, 소득평가액 수준을 피부양가구의 탈락 여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는 재산기준으로 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소득평가액이 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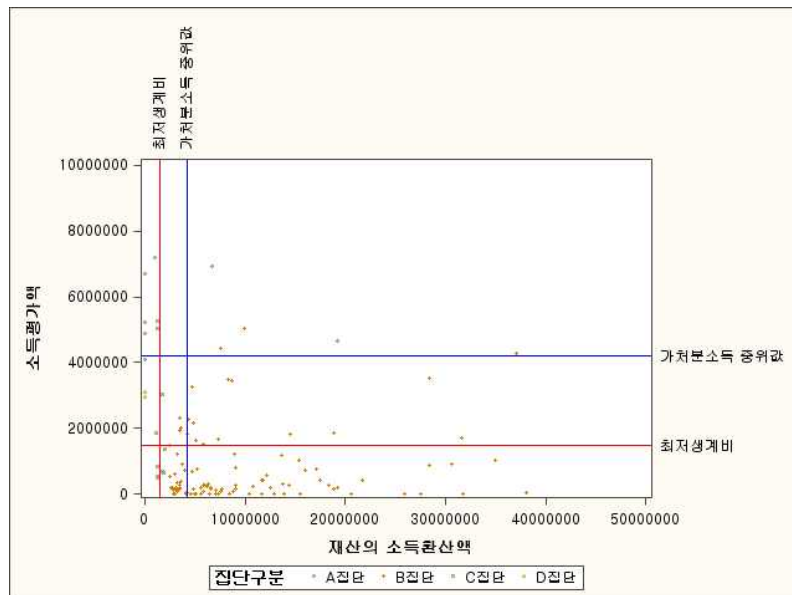
[그림 VII-3-2]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소득평균액·재산의 소득환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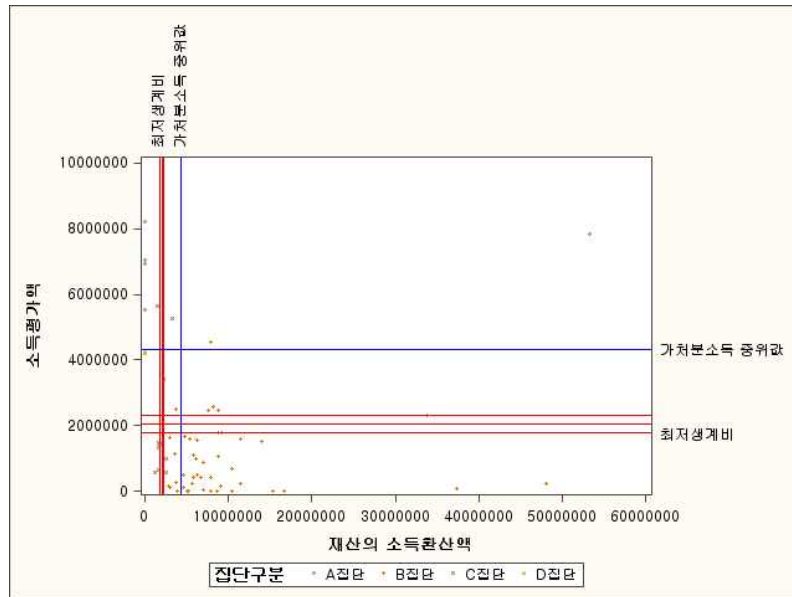
[그림 VII-3-3] 부양의무자 2인가구의 소득평균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림 VII-3-4] 부양의무자 3인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림 VII-3-5] 부양의무자 4인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림 VII-3-6] 부양의무자 5인이상 가구의 소득평균액·재산의 소득환산액<sup>21)</sup>

한편, 여유진(2011)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Cut-off 방식이 아닌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현 제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크게 환산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재산항목 중 현금으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용이하거나 해당 재산으로 인하여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지적된 문제점은 본 연구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총액, 전월세보증금 총액, 상가보증금 총액은 현금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건축물 총액, 금융재산 총액 등은 전자보다 전환이 현실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다. 여유진(2011)의 제안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항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VII-3-3>과 같다.

21) 최저생계비 기준선이 여러개 제시된 것은 5인·7인 가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며, 가처분소득 중위값 기준은 5인이상 가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1개만 제시되었다.

&lt;표 VII-3-3&gt;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항목별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0%	25%	중위값	75%	90%	최대값
소득유발항목	상가보증금	4,535	89	1,452	0	0	0	0	0	40,000
	금융재산	4,535	45,764	84,189	0	0	803	15,811	55,616	123,275
	자동차	4,535	5,012	9,702	0	0	0	511	6,240	16,275
	토지	4,535	26,467	116,768	0	0	0	0	4,575	65,350
	건축물	4,535	6,796	50,790	0	0	0	0	0	1,770,468
재산고정항목	주택	4,535	69,036	127,781	0	0	0	0	96,500	209,000
	전월세보증금	4,535	3,077	16,632	0	0	0	0	0	220,000

소득유발항목에서는 금융재산이 평균 약 45,764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토지가 26,467천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상가보증금은 89천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재산고정항목에서는 재산이 평균 약 69,036천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중위값, 또는 75p까지 0원으로 나타나는 항목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여유진(2011)이 지적한 재산항목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소득유발 항목과 재산고정 항목에 대한 분류 및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4인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5인 이상 가구는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평균 가구원수는 약 2.5명이었다. 집단별로 구분하여 보면 C집단의 평균 가구원수가 높게 나타났다.

&lt;표 VIII-3-4&gt;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가구 가구규모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계
1인가구	746	375	30	199	1,350
	16.45	8.27	0.66	4.39	29.77
	55.26	27.78	2.22	14.74	
	36.6	19.45	11.95	62.58	
2인가구	304	693	55	53	1,105
	6.70	15.28	1.21	1.17	24.37
	27.51	62.71	4.98	4.80	
	14.92	35.94	21.91	16.67	
3인가구	358	313	52	35	758
	7.89	6.90	1.15	0.77	16.71
	47.23	41.29	6.86	4.62	
	17.57	16.23	20.72	11.01	
4인가구	541	455	97	24	1,117
	11.93	10.03	2.14	0.53	24.63
	48.43	40.73	8.68	2.15	
	26.55	23.60	38.65	7.55	
5인가구	89	92	17	7	205
	1.97	2.03	0.38	0.15	4.52
	82.36	191.88	21.94	3.83	0
	4.36	4.77	6.78	2.20	0
합계	2038	1928	251	318	4535
	44.94	42.51	5.53	7.01	100
평균 가구원수	2.48	2.59	3.08	1.70	2.50

부양의무자 가구의 대표 가구원<sup>22)</sup>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고, 20대와 40대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재산 수준이 높은 B집단의 경우,

22) 한 피부양 가구에게 부양의무를 지는 가구는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으며, 이번 분석에는 그중 소득 재산 수준이 가장 높은 부양의무자 가구를 대표 가구로 정의하고 해당 가구의 가구원의 연령을 분석하였다.

30대보다는 40대와 6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산보다는 소득수준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보다는 재산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VII-3-5>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 가구의 대표 가구원 연령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A집단	134	567	819	427	65	21	5	2,038
	2.95	12.50	18.06	9.42	1.43	0.46	0.11	44.94
	6.58	27.82	40.19	20.95	3.19	1.03	0.25	
	58.77	66.86	60.18	43.75	13.03	4.36	3.55	
B집단	5	90	402	476	388	432	135	1,928
	0.11	1.98	8.86	10.50	8.56	9.53	2.98	42.51
	0.26	4.67	20.85	24.69	20.12	22.41	7.00	
	2.19	10.61	29.54	48.77	77.76	89.63	95.74	
C집단	1	29	97	63	34	26	1	251
	0.02	0.64	2.14	1.39	0.75	0.57	0.02	5.53
	0.40	11.55	38.65	25.10	13.55	10.36	0.40	
	0.44	3.42	7.13	6.45	6.81	5.39	0.71	
D집단	88	162	43	10	12	3	0	318
	1.94	3.57	0.95	0.22	0.26	0.07	0.00	7.01
	27.67	50.94	13.52	3.14	3.77	0.94	0.00	
	38.60	19.10	3.16	1.02	2.40	0.62	0.00	
합계	228	848	1,361	976	499	482	141	4,535
	5.03	18.70	30.01	21.52	11.00	10.63	3.11	100

한편,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는 60대 이상 연령도 약 14%를 보이고 있었는데 623가구 중 대다수인 603가구가 자녀를 부양하였고, 60대 이상의 노인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20가구에 그쳤다. 다시 말해, 약 13.5%가 노인세대가 청장년세대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6> 60대 이상 신청탈락-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관계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모	부	자	계
A집단	3	20	3	26
	0.48	3.21	0.48	4.17
	11.54	76.92	11.54	
	1.70	4.68	15.00	
B집단	165	387	15	567
	26.48	62.12	2.41	91.01
	29.10	68.25	2.65	
	93.75	90.63	75.00	
C집단	7	18	2	27
	1.12	2.89	0.32	4.33
	25.93	66.67	7.41	
	3.98	4.22	10.00	
D집단	1	2	0	3
	0.16	0.32	0	0.48
	33.33	66.67	0	
	0.57	0.47	0	
합계	176	427	20	623
	28.25	68.54	3.21	10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책정 산식에 따라 부양비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수준이 얼마인가를 추정해보았다. 부양비 산정에 필요한 부과율은 가구의 인적 특성 및 특례에 따라 15% 또는 30%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부과율과 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하는 가구의 평균 부양비율인 23.1%로 나누어 살펴보았다.<sup>23)</sup> 소득수준이 높은 A집단의 추정 부양비가 가장 높게 나

23) 한 수급대상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여러명 존재할 때, 각 부양의무자들의 부양기준에 따라 산정된 부양비의 합산을 통해 부양비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추정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관점에 분석된 것이지 수급대상가구의 관점에서 분석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추정부양비가 100 천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수급대상가구가 받을 것이라 추정하는 부양비가 반드시 100 천원임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해당 금액은 부양의무자 1개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된 것이고, 수급대상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1개 가구가 아닌 여러 가구로부터의 부양비를 합산하기 때문이다.

타났고, 재산수준이 높은 B집단은 추정 부양비가 음수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B집단에서는 재산수준이 높지만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가 다소 분포하고 있는데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값에 부과율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표 VII-3-7> 신청탈락가구-부양의무자 가구 추정 부양비

(단위: 가구, 천원)

구분	부양비 부가율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10%	25%	중위수	75%	90%	최대값
A집단	15%	2,038	496	380	199	248	304	396	559	831	8,026
	23.1%	2,038	764	584	307	382	468	610	861	1,280	12,360
	30%	2,038	1,091	835	439	546	669	871	1,231	1,829	17,657
B집단	15%	1,928	-59	146	-400	-230	-161	-98	32	158	462
	23.1%	1,928	-91	226	-615	-354	-248	-151	50	243	711
	30%	1,928	-131	322	-879	-506	-354	-216	71	347	1,016
C집단	15%	251	48	139	-211	-118	-55	26	146	229	554
	23.1%	251	74	214	-324	-182	-85	41	224	352	853
	30%	251	106	306	-463	-260	-122	58	321	503	1,219
D집단	15%	318	181	64	108	117	136	165	210	252	530
	23.1%	318	279	99	166	180	209	254	323	389	816
	30%	318	398	141	237	258	299	363	462	555	1,165
합계	15%	4,535	213	380	-400	-164	-75	202	374	595	8,026
	23.1%	4,535	328	585	-615	-253	-116	311	577	916	12,360
	30%	4,535	468	836	-879	-361	-166	445	824	1,308	17,657

추정부양비를 집단별-구간별로 살펴보면, B집단뿐만 아니라 C집단의 추정부양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집단의 하위 25%까지는 추정부양비가 음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B집단과 마찬가지로 재산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지만 소득은 최저생계 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있기 때문이다.

## 제4절 소 결

본 절에서는 부양의무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토대로 소득·재산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초과하고 있는 집단이 어느 한쪽만을 초과하고 있는 집단보다 그 분포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소득·재산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소득측면에 있어서는 소득평가액의 수준은 높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음으로써, 부양비 지급이 재산축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대다수가 타 연령대보다 지출이 많은 20~40대임을 감안하면, 부양비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높으나 소득평가액이 낮음으로써, 부양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재산 처분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수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평가액 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높지만 우리나라 가처분소득의 중위값보다 낮다는 점은 피부양자의 빈곤이 부양의무 가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고정재산 항목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도가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소득과 재산의 기준선만의 조정이 제도 운영에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제 8 장

## 결론

제1절 분석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함의

제3절 연구의 한계



# 제8장 결론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이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종합 검토를 통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를 중심으로 피부양가구와 부양의무자,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특성을 주요 내용에 따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 자료(2012)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 그리고 피부양자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신청탈락가구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신청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구가 83.57%로 나타나는 등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다. 가구의 특성별로 보면 신청탈락가구에 속하는 노인가구주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인 경우가 0.74%에 불과했으며, 최저생계비의 25% 이하인 가구는 34.47%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중에서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아, 근로능력이 있으나 곧 노령기에 접어드는 인구집단에 다수 몰려있었다.

신청탈락가구에 대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는 현실적으로 부양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이 일부 발견되었다.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평균이 2,705,689원이었으나 일반가구는 월 평균 3,835,000원으로, 양자간에 113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구의 소득평가

액이 50만원 미만인 22.29%로, 적지않은 비중이 저소득 상태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는 비중은 38.09%였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 중 노인 단독가구는 31.56%나 차지하였고,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 하위 25% 이하는 소득평가액이 0원이었다.

피부양가구와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를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산이 없는 신청탈락가구의 18.36%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0~25% 구간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극빈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을 분석한 결과, 신청탈락가구는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최하위 구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가구의 70.70%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부양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 빈곤계층이 일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소득분위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부양의무자 대부분이 소득여건이 좋지 않아 신청탈락가구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토대로 부양의무자를 소득·재산 기준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초과하고 있는 집단이 어느 한쪽만을 초과하고 있는 집단보다 그 분포가 매우 적었다.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높으나 소득평가액이 낮아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급하기 위해 재산 처분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 제2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함의에 대해서는 크게 학문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로 나누어서 기술한다. 우선 학문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족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론적 차원에서 해석하였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부양의무자 규정과 관련된 연구는 이론적 논의가 대부분 결여되었으며 주로 정책적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용적 차원의 논의가 다수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부양의무자 규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에 기초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에 관한 연구는 데이터의 제한으로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부양의무자 규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로 제도적 차원의 쟁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가구 및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 혹은 개인의 경제적 부양여력을 중심으로 한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에 관한 연구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무자 규정 자체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정책 가정과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간에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정책에 내재된 가정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보다 뒤처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은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도 변화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예산의 제약과 같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한꺼번에 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이 단계적으로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당장의 큰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점차 완화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한, 보다 온건한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대안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사항은 규정의 변화 정도와 그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부양의무자 폐지의 전제는 빈곤 집단에 대하여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일차적으로 진다는 것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사회에서 동떨어진 조직이 홀로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안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청탈락가구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거나,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므로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자리잡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통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성실하게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을 한다.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신청탈락가구는 빈곤한 상태일지라도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 사각지대에 속하는 다수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통

과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에서 탈락한 집단이라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부양능력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부양의무자를 통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제도 때문에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통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적 상황에서 볼 때, 부양의무자 일부 집단의 부양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였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일반가구보다 평균적으로 열악하게 나타난 결과는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이 그만큼 엄격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바꾸어 표현하면, 부양의무자 가구 중 일부는 신청탈락가구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현실적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부양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여건에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부양의무자 가구 역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 중 소득과 재산 기준 중에서 소득만 충족하거나 재산만 충족하는 부양의무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소득기준만 충족한 경우에는 가구의 재산 축적에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재산기준만 충족한 경우에는 재산을 팔아서 피부양가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양 경우 모두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에 따라서 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의 일부만을 활용하여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제시해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주로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가구의 일반적인 기본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양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소득과 재산에만 한정되어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특성을 제시였으므로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제도적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양의무자의 특성을 분석한 본 연구는 거의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이슈와 쟁점에 관하여 자세한 논의를 이끌어어나가기 보다는, 탐색적 수준에서의 기술통계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한계에 대한 보완은 추후 연구에 맡긴다.

## 참고문헌

- 구인회·손병돈 (2005).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 추이와 변화요인”. 한국노년학 25(4): 35-52.
- 기획재정부 (2009). 민생안정 긴급대책 지원 3월 12일 보도자료.
- 김남근 (201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요건의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1(1): 155-195.
- 김상균·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5:1-33.
- 김수정 (2003). “한국의 빈곤정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와 쟁점 : 가족부양 '범위' 및 '부양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9: 193-223.
- 박정선 (2010).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 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5: 55-81.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석재은·유은주 (2007).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가족법연구 21(1): 31-56.
- 성재민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노동리뷰 2006년 3월호(통권 제15호), 2006.3, 75-83.
- 손병돈·이소정·이소정·변금선·전영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 손윤석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미약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28(2): 1-21.
- 송다영 (2005). “가족부양쟁점에 관한 일고찰-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143-164.
- 여유진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빈곤사각지대: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여유진 · 김미곤 · 김상균 · 구인회 · 오지현 · 송치호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 김미곤 · 김수봉 · 손병돈 · 김수정 · 송연경(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 왕혜숙 (2013). “가족 인정 투쟁과 복지정치: 한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4): 67-106.
- 윤홍식 (2012). “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64(4): 261-284.
- 이만우 (201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13호
- 이승호 · 구인회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보건사회연구 30(1): 29-61.
- 이정식 (20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부양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16(3): 381~420.
- 이찬진 (2009). “경제위기 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부양실태에 맞지 않은 부양의무자 제도와 간주부양비를 중심으로”. 복지동향 127: 36-39.
- 통계청. 『2009-2012 사회조사보고서』.
- 통계청. 『2011년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 정민호 (2012). “가족법상 부양의무와 사회보장법상 부양의무 준별론”. 법학논총

- 29(1): 131-147.
- 허 선 (2013). “가족과 부양의무”. 복지동향 175:9-12.
- 허 선 · 유현상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자 비율 추정에 관한 연구”. 2009년 제2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논문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Alber, J. (1996). Selectivity, Universalism, and the Politics of Welfare Retrenchment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9 August). San Francisco, CA.
- Anttonen, A. & J. Sipilä. (2008). Universalism and Idea and Principle in Social Policy. [http://www.nova.no/asset/3723/1/3723\\_1.pdf](http://www.nova.no/asset/3723/1/3723_1.pdf)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New York: Oxford.
- Gilbert, N. & P. Terrell(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Allyn & Bacon
- Hernandez, Diego. (2005). Universalism versus Selectivism in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A Case Study Addressing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in Social Policy in Colombia. Friday forum, April 22nd, 2005. Sponsored by Urban Planning and Policy Program of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S; [http://www.docentes.unal.edu.co/dfhernandezl/docs/UniversalismVsSelectivism\\_DFHL.pdf](http://www.docentes.unal.edu.co/dfhernandezl/docs/UniversalismVsSelectivism_DFHL.pdf)
- Leitner, Sigrid. (2003). Varie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5: 353-75.
- Millar, F. & A. Warman(1996). Family Obligation in Europe. London: Family

Policy Studies Centre.

- Mkandawire, T. (2005). "Targeting and Universalism in Poverty Reduction"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Program paper No. 23 December 2005. UNRISD.
- Raitano, M. (2008). Welfare State and Redistribution : The Role of Universalism and Targeting. Specific Targeted Research Project. Six Framework Programme-Priority 7. Citizens and Governance in a Knowledge-Based Society. Deliverable D13. Report on WP6-Task6.5.
- Sen, Amartya.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Targeting", in van de Walle, D. and Nead, K. Public Spending and the Poor,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kocpol, T. (1991). "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 Politically viable policies to comba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in Christopher Jencks and Paul E. Peterson(eds.), The Urban Underclas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411-36.
- Titmuss, R. (2006). "Universalism Versus Selection" eds., C. Pierson and F. Castles. in The Welfare State Reader. London: Polity.
- van Kersbergen, K.(1995). A Study of Christian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New York: Routledg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분석 연구

발행일 : 2013. 12

저자 : 김은하, 박경하, 김성훈, 서소혜

발행인 : 원희목

발행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우 100-705)

전화 : 02) 6360-6114

홈페이지 : <http://www.khwis.or.kr>

인쇄 :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  
02) 2268-5070

